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159-000095-10

정확한
내일만큼 여는
정부 3.0
[개방·공유·소통·협력]

Vaccination for tomorrow
건강한 내일을 여는 예방접종

2016 보건소용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KMA

대한의사협회
KOREAN MEDICAL
ASSOCIATION

머리말



B형간염 주산기감염의 위험에 노출된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02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은 장래 동량이 될 새 생명에게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장차 우리나라의 건강한 미래를 여는데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B형간염은 전세계 인구 중, 현재 약 2억 4천만 명의 환자가 만성 B형간염을 앓고 있으며, 매년 65만명이 간암이나 간경화로 사망하고 있어 인류의 건강에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는 질병입니다.

우리나라는 1985년부터 B형간염 예방접종을 도입하였고 1995년부터는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지정하여 예방접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 20세 이상 인구의 약 3%가 B형간염 표면항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B형간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간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1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B형간염 바이러스(hepatitis B virus; HBV)는 산모에서 신생아로의 주산기 감염, 수혈, 성 접촉, 오염된 주사바늘 등으로 전파됩니다. 이 중 우리나라에서 주된 감염 경로는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인 산모에서 분만된 신생아로의 주산기 감염으로, 적기에 적절한 조치만 이루어지면 예방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만성 간질환과 간암의 발생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산전 진찰을 보험화하여 B형간염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에 대한 예방조치를 조기에 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2002년부터 국내에서 B형간염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에게 예방치치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소득, 국적에 관계없이 B형간염에 노출된 신생아의 의료 이용 접근성을 높여, 어머니로부터 주산기에 감염 되는 사례를 약 97% 이상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정책은 앞으로 B형간염의 퇴치 기반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B형간염 산모를 발견하고 이를 교육하는 산전진찰기관, 분만기관, 예방접종기관 그리고 관련 의료인의 적극적인 동참 없이는 불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또한 사업 수행 과정 속에서 의료계와 정부의 협력하는 모습은 공중보건 사업에서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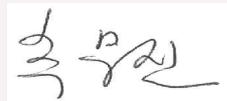
정부와 의료계는 본 예방사업이 성공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와 참여를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안내 책자의 머리말을 빌어 약속드립니다. 또한 본 예방사업이 국민의 질병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B형간염을 퇴치하여 ‘질병퇴치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2016. 1. 1.

질병관리본부장



대한의사협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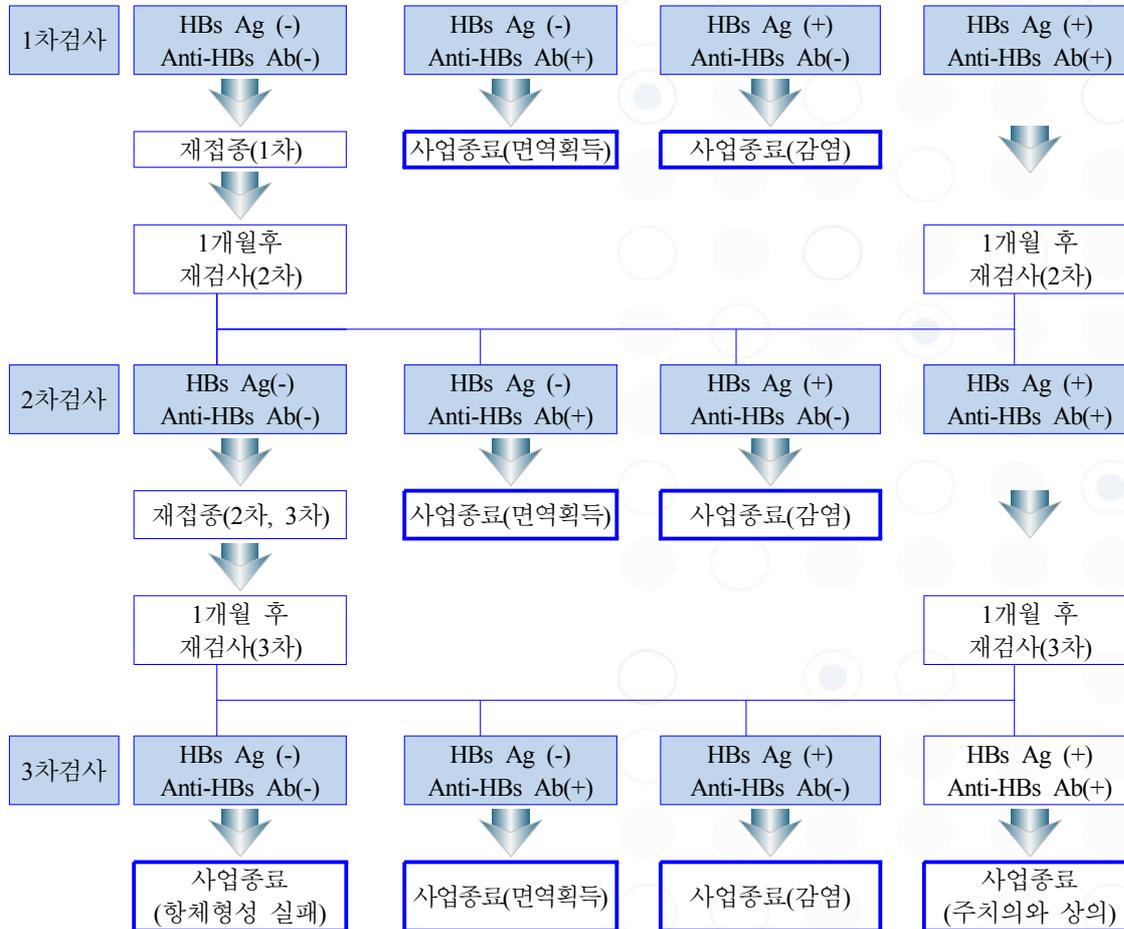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처치 실시기준

1. 예방접종 및 1차 항원·항체검사 실시 일정

접종 및 검사		접종 및 검사 시기	접종부위	최소연령	최소간격
기초접종	1차 접종 (백신, 면역글로불린)	출생 직후(12시간 이내)	대퇴 전·외측		
	2차 접종(백신)	생후 1개월	대퇴 전·외측	생후 4주	1차 접종 후 4주
	3차 접종(백신)	생후 6개월	대퇴 전·외측	생후 24주	2차 접종 후 8주 1차 접종 후 16주
1차 항원·항체검사		생후 9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대퇴 전·외측	생후 9개월	3차 접종 후 4주

2. 기초접종 완료 후 1차 항원·항체 검사결과에 따른 추적관리 흐름도



2016년도 사업관리체계 변경사항(4-3 사업참여 절차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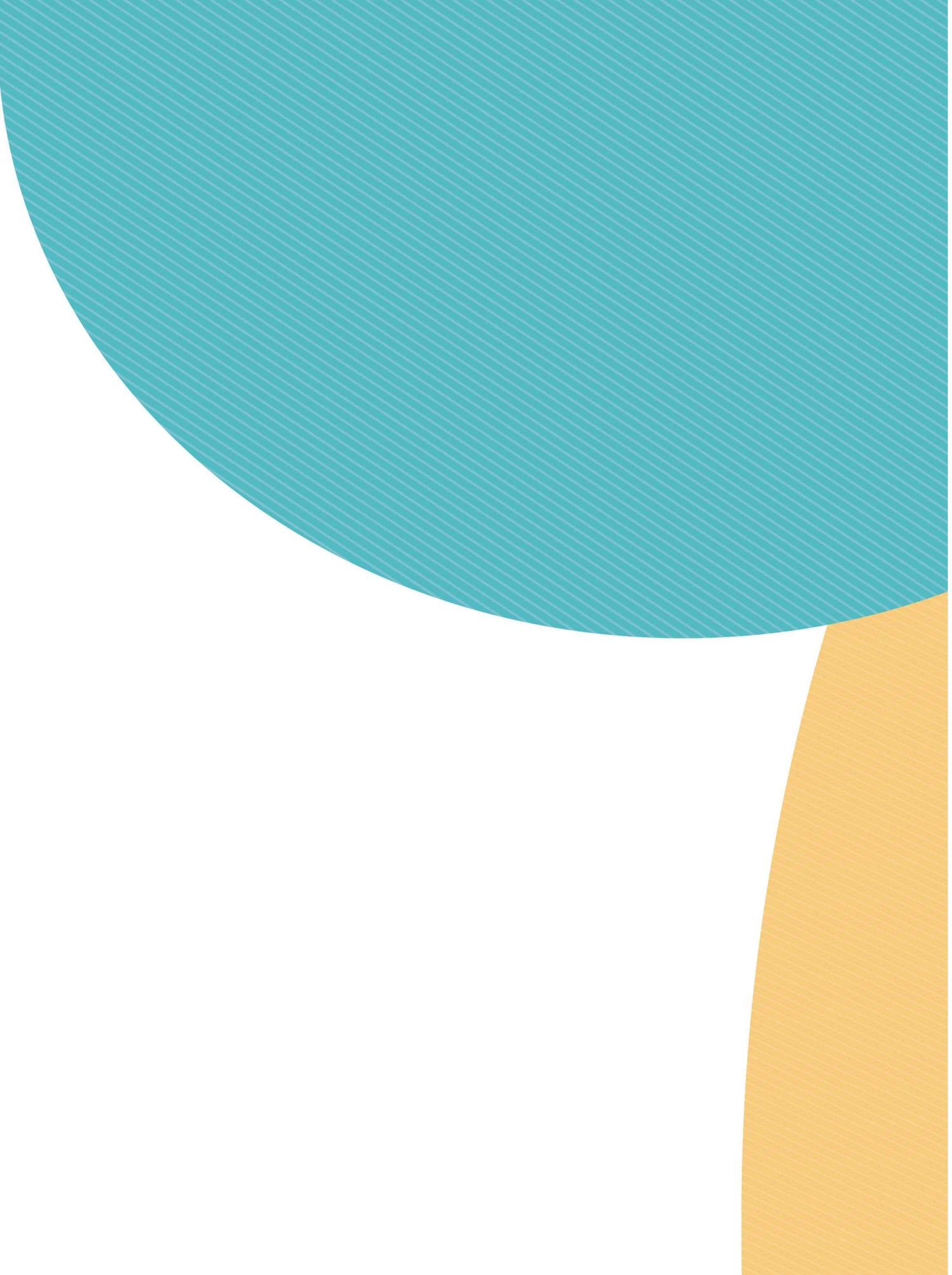
단계	대상	기존	변경사항('16년~)
사업 참여 의료기관 관리	보건소	- 기본교육과정 이수 확인	<변경> - 사업참여 의료기관 관리 : 사업참여 확인증, 교육수료증, 비용상환용 통장사본, 사전자율점검표 확인, 년1회 의료기관 방문점검 실시
산전 진찰	의료기관	- 산모 B형간염 검사 실시,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안내 및 검사결과지 발급	- <좌동>
	대상자	- 산모 B형간염 검사결과 확인 및 결과지 수령	- <좌동>
분만 기관	의료기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구득 - 면역글로불린+B형간염 1차접종 - 접종내역 전산등록 (비용청구 자동신청) - 산모 B형간염 검사결과지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로 제출	- <좌동> - <좌동> - <좌동> <변경> - 사업참여시 사업참여 확인증, 기본교육 수료증 통장사본, 사전 자율점검표 제출
	대상자	- 산모 B형간염 검사결과 제출 - 전산등록·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작성	- <좌동> - <좌동>
2,3차 예방 접종	의료기관	- B형간염 2·3차 접종내역 전산등록(비용청구 자동신청)	- <좌동> <변경> - 사업참여시 사업참여확인증, 기본교육 수료증, 통장사본, 사전 자율점검표 제출
항원·항체 검사	의료기관	- 검사결과 전산등록(비용청구 자동신청) 및 검사결과지를 '피접종자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제출	- <좌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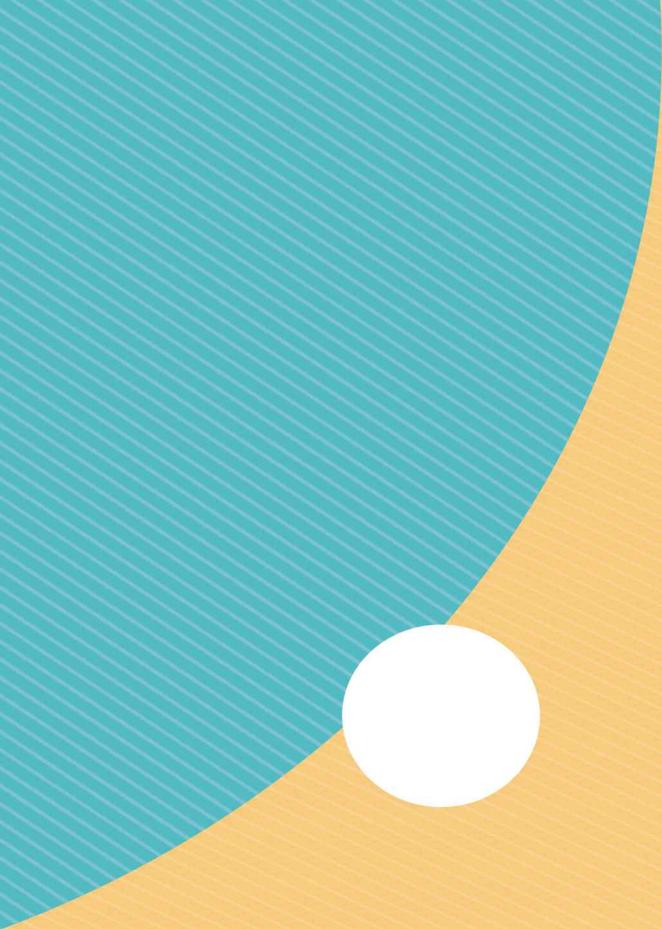


C O N T E N T S

제1장 B형간염 개요	1
1. B형간염	2
2. 국내 B형간염 현황	3
제2장 B형간염 관리정책	7
1. 목적	8
2. 전략	8
3. 향후 정책 방향	9
제3장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11
1. 배경	12
2. 목적	12
3. 목표	12
4. 예방사업 처치일정 및 비용지원 범위	13
5. 추진 방향	14
6. 경과	14
7. 추진 실적	15
제4장 2016년도 사업계획	17
1. 사업계획 개요	18
2. 사업 추진 체계	18
3. 사업 참여 절차	19
4. 비용청구 체계	20
5. 사업대상자 개인정보 관리	21
6. 법적 근거	22
제5장 의료기관의 업무	23
1. 예방접종 교육 이수	24
2. 예방사업 참여	25
3. 예방사업 수행	27
4. 비용청구 및 결과확인	31

제6장 시·도의 업무	35
1. 사업 홍보 계획 수립 및 시행	36
2. 시·군·구(보건소) 담당자 교육 및 관리	36
3. 시·군·구(보건소) 사업 시행 현황 모니터링 및 관리	36
제7장 시·군·구(보건소)의 업무	37
1. 사업 홍보 계획 수립 및 시행	38
2. 기본 교육이수	38
3. 관내 의료기관 관리	39
4. 사업대상자 승인 및 관리	41
5. 비용청구 관리	43
6. 사업 시행 현황 모니터링	46
제8장 예방접종 및 항원·항체 검사 실시기준	47
1. 예방처치 실시기준	48
2. 항원·항체검사 실시기준	49
별첨서식	51
1. 개인정보제공동의서	52
2. 사업참여 확인증	53
3. 의료기관 교육 수료증	54
4. 의료기관 사전 자율점검표(의료기관용)	55
5. 의료기관 방문 점검표(보건소용)	57
6. 감염관리안내문(보호자 배포용)	59
부 록	61
1. 자주 묻는 질문	62
2. 등록 및 시스템 사용안내	70
3. 시·군·구 담당자 연락처	97





01

PART

B형간염 개요

01 PART

B형간염 개요



1. B형간염

- B형간염 바이러스(hepatitis B virus; HBV)에 의한 감염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 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간경변이나 간세포암과 같은 만성 간질환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요한 공중보건 문제임
- 전 세계 인구 중 2억 4천만 명이 만성 감염자이며[그림 1]¹⁾, 매년 65만 명이 급성 B형간염, 간암, 간경화 등 B형간염에 이환되고, 이 중 20~30%에서 간암, 간경화로 진행하며 매년 65만명이 급성 B형간염, 간암, 간경화 등이 B형간염과 관련된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음



[그림 1] 성인(만 19-49세)의 만성 HBV감염 유병률

- 대부분, B형간염 환자들은 HBV감염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음
- 어린이 B형간염예방접종 사업은 많은 나라에서 B형간염 유병률을 극적으로 낮추었음
- 하지만, B형간염 관련 사망으로 인한 질병부담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임

1) Ott JJ, Stevens GA, Groeger J, Wiersma ST. Global epidemiology of hepatitis B virus infection: new estimates of age-specific seroprevalence and endemicity. Vaccine. 2012.30(12):2212-9.

2. 국내 B형간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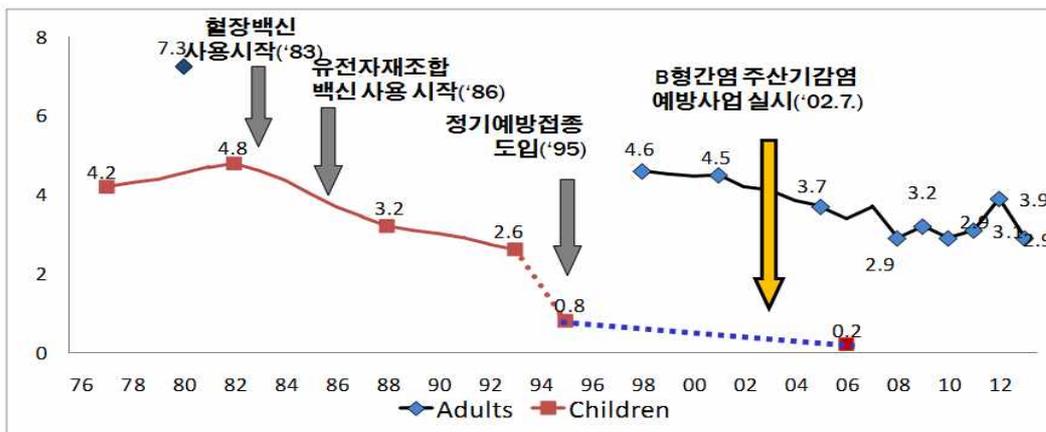
: 국내 간암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 당 22.3명(남자 36.0명, 여자 10.2명)이며, 간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당 15.4명(남자 25.8명, 여자 6.6명)임²⁾

2.1 B형간염 예방접종 정책

- 1983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B형간염 백신이 처음 도입되었고, 1995년 국가예방접종사업(영유아 대상 정기예방접종)과 2002년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이 실시됨
- 소아에서 B형간염 3차 예방접종률은 '08년 92.9%³⁾, '09년 98.1%⁴⁾, '11년 98.7%⁵⁾, '12년 99.0%⁶⁾, '13년 99.4%⁷⁾로 조사됨

2.2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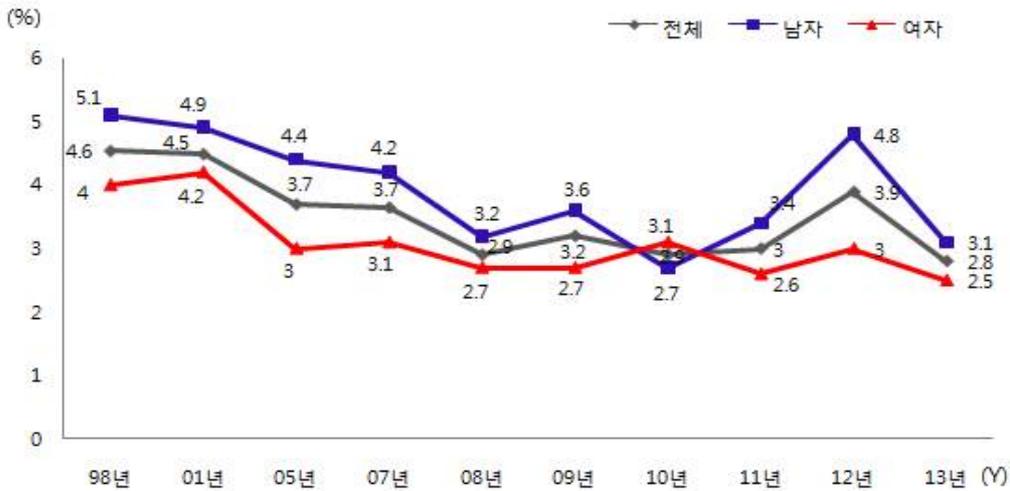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률은 최근 성인(만 10세 이상)에서 약 3.1%⁸⁾, 만 4~6세 영유아에서 0.2%로 나타났고, 이는 과거에 비해 현저히 감소한 결과임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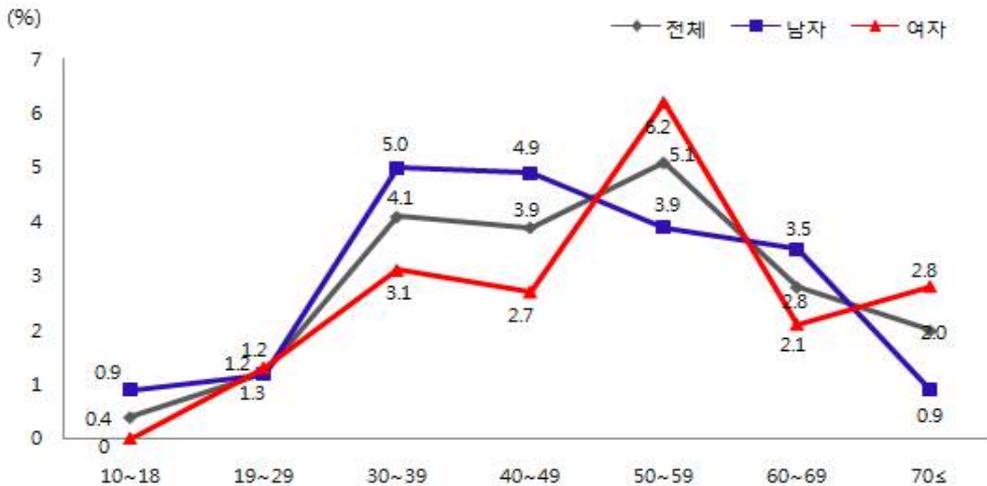
2) Jung KW, Won YJ, Kong HJ, Oh CM, Seo HG, Lee JS. Cancer Statistics in Korea: Incidence, Mortality, Survival and Prevalence in 2010. Cancer Res Treat. 2013;45(1):1-14.
 3) 박수경 등. 전국 예방접종률 조사 및 체계 개발. 서울대학교, 질병관리본부. 2009
 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5) 이석구 등. 전국 예방접종률 조사. 충남대학교, 질병관리본부. 2011
 6) 이석구 등. 전국 예방접종률 조사. 충남대학교, 질병관리본부. 2012
 7) 이석구 등. 전국 예방접종률 조사. 충남대학교, 질병관리본부. 2013
 8) 질병관리본부. 2013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1차년도
 9) 질병관리본부. 2006 홍역·유행성이하선염·B형간염 면역도조사 결과 보고서. 2006:8

[그림 2] 우리나라 B형간염 관리 주요사업 및 표면항원 양성률(%) 현황

- 2013년에 시행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의하면 만 10세 이상 인구의 B형간염 항원 양성률은 1998년 4.5%에서 2013년 3.1%로 감소되었고, 성별로는 남자 3.3%, 여자 2.8%로 남자가 0.5% 정도 더 높았고, 연령별로는 남자는 30대에서 5.0%, 여자는 50대에서 6.2%로 가장 높았음[그림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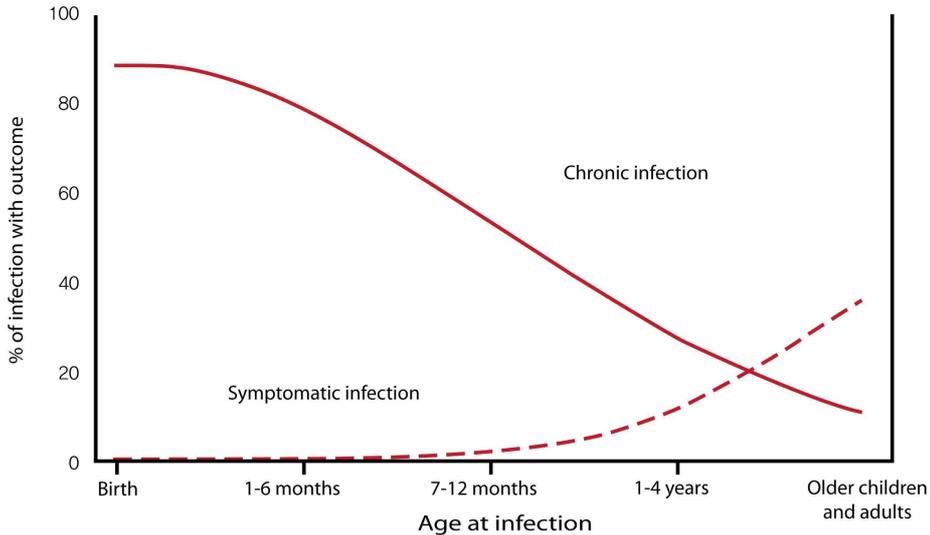
[그림 3] 우리나라 연도별·성별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률(%)



[그림 4] 우리나라 연령별·성별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률(%)

2.3 B형간염 주산기 감염

- 국내 연구결과에 따르면 0~9세 B형간염 표면항원 보유자의 38.0%, 10~19세 B형간염 표면항원 보유자의 59.4%가 주산기 감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¹⁰⁾
- 전체 만성 감염자의 40~50%가 주산기 감염에서 비롯되며, 성인이 B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약 90%는 합병증 없이 완전 회복되나, 주산기에 감염된 경우 90% 이상에서 만성 보유자가 되고, 전격성 간염 및 간경변과 간암 등도 유발할 수 있음¹¹⁾¹²⁾¹³⁾[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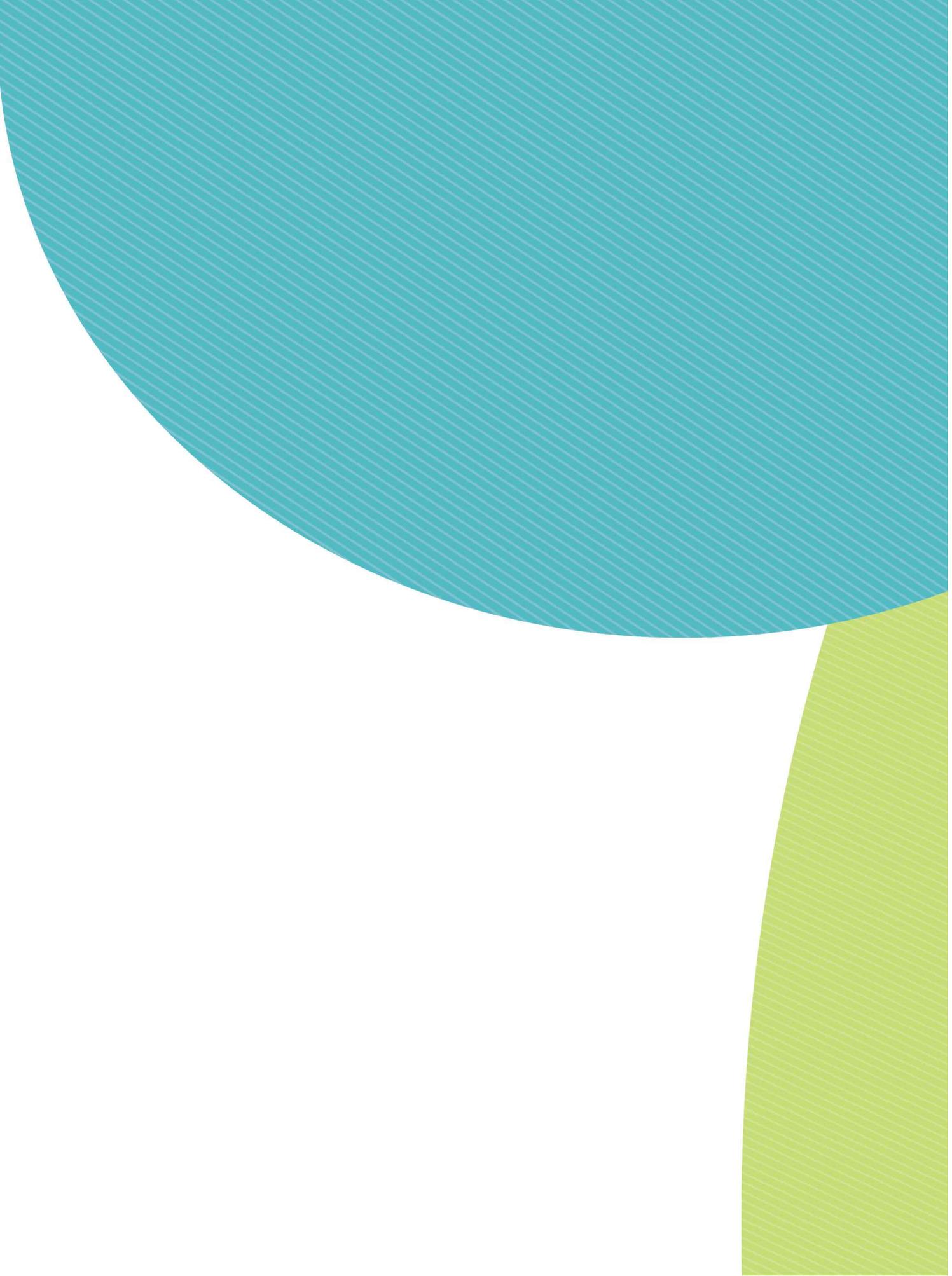
[그림 5] 감염시기에 따른 HBV감염의 만성화율(%)

10) 공휘, 김지훈, 조남영, 김윤홍, 정길만, 연종은, 김재선, 박영태, 조경환, 박용규, 변관수, 이창홍. B형 만성 간질환 환자 자녀들의 B형간염 바이러스 감염률 - 특히 0~19세 자녀들의 감염률. 대한간학회지 2001;7(4):387~391

11) Stevens CE, Beasley RP, Tsui J, Lee WC. Vertical transmission of hepatitis B antigen in Taiwan. N Eng J Med 1975;292:771-774

12) McMahon BJ, Alward WL, Hall DB, Heyward WL, Bender TR, Francis DP, et al. Acute hepatitis B virus infection: Relation of age to the clinical expression of disease and subsequent development of carrier state. J Infect Dis 1985;151:599-603

13) Moradpour D, Wands JR, Understanding hepatitis B infection. N Engl J Med 1995;332:1092-3





02
P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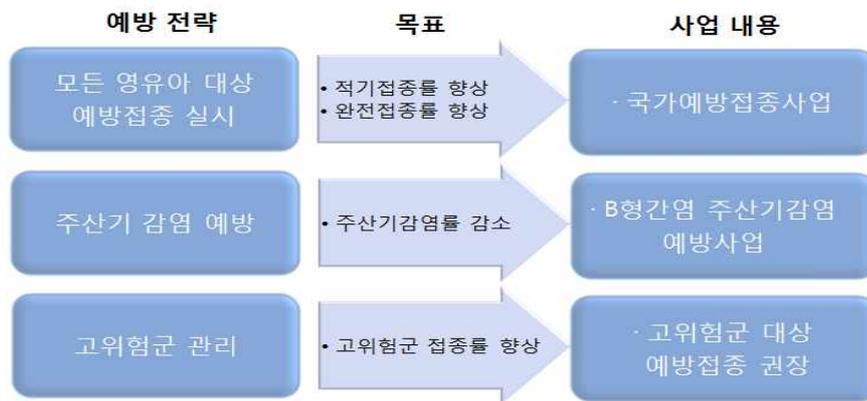
B형간염
관리정책



1. 목적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으로 인한 신생아 B형간염 환자발생 감소
- 만성 B형간염 환자 감소
- B형간염 퇴치

2. 전략



[그림 6] B형간염 예방 추진전략

2.1 모든 영유아 대상 예방접종 실시

-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통해 전체 영유아 접종률 95% 이상유지
- 취학 전 접종력 확인사업 및 등록사업을 통해 완전접종률 및 적기접종률 관리

2.2 주산기감염의 예방

- 산전진찰기관을 통해 B형간염 산모 조기발견
- B형간염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B형간염 예방접종 및 검사 실시
- 적기 예방처치로 주산기감염으로 인한 B형간염 예방

2.3 고위험군 관리

- 고위험군에 대한 B형간염 예방접종 권장

〈B형간염 노출 고위험군〉

- ➔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가족
- ➔ 혈액제제를 자주 수혈 받아야 되는 환자
- ➔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
- ➔ 주사용 약물 중독자
- ➔ 의료기관 종사자
- ➔ 수용시설의 수용자 및 근무자
- ➔ 성매개 질환에 노출위험이 높은 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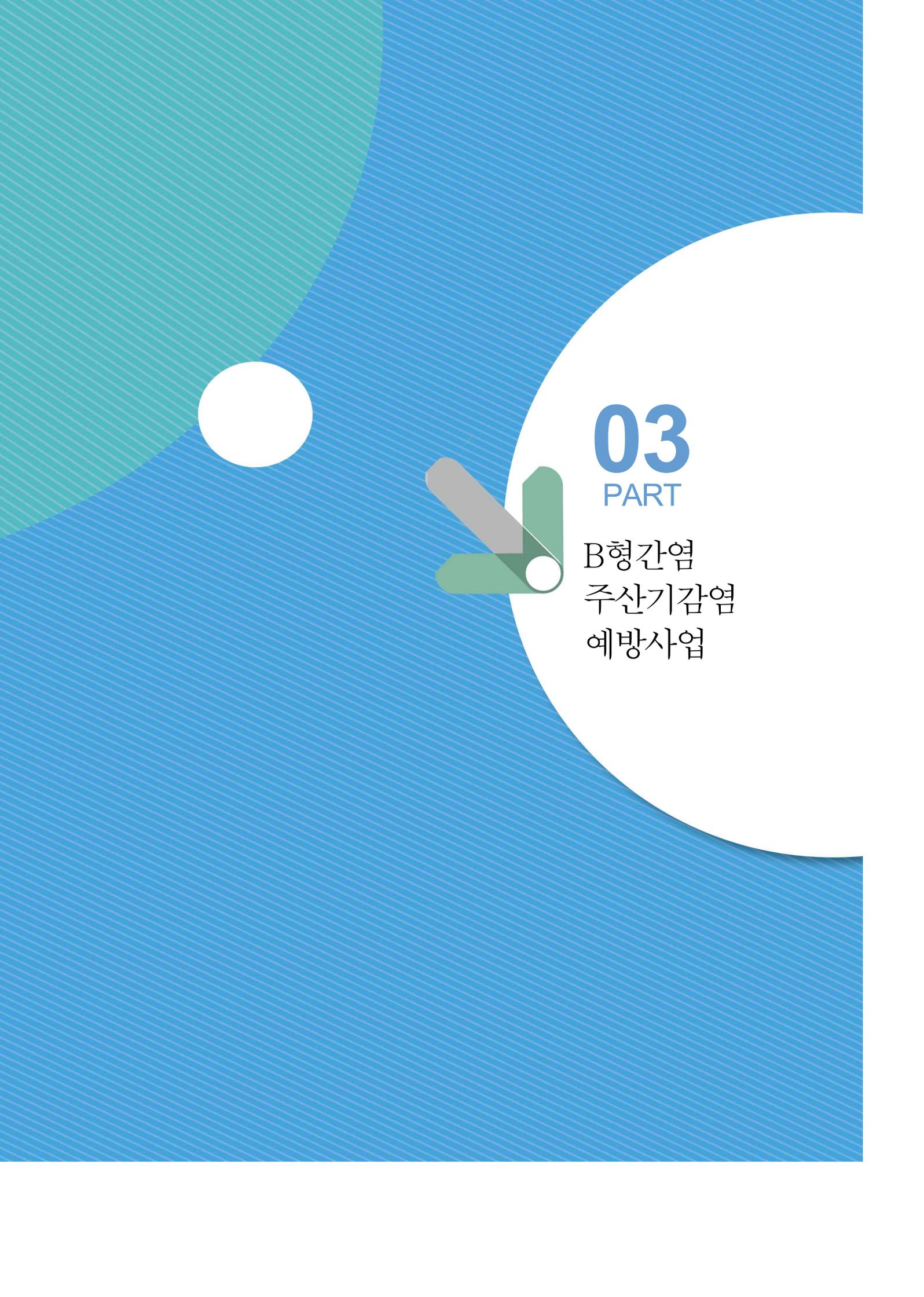
2.4 사업대상자 세부관리

- 주기적인 문자 발송을 통하여 검사 시기 안내(3, 6, 9, 12월)
- 접종 미완료자, 검사 미등록자 및 미완료자 추적관리(상·하반기)
- 중복접종, 중복등록건 확인하여 처리 후 인적통합
- 출생신고가 지연되어(7자리 신생아인적) 3개월 이상 비용지급 보류 건 확인 및 비용지급

3. 향후 정책 방향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사업대상자 3회 예방접종률 95% 이상 유지, 항원·항체 1차 검사율 90% 이상 유지
 - 미접종자 및 미검사자 관리 강화
- 신규 감염 발생 억제
 - 출생 후 12시간 이내 1차 접종(면역글로블린, 백신) 완료를 위한 홍보, 등록시 스템 개편 및 안정화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지속
 - 고위험군 계층 대상 예방접종 권장

- 사업홍보를 통한 인지도 향상
 - 홍보물(안내문, 리플렛) 개발 및 배포(의료기관, 보호자용)
 - 예방사업의 중요성 및 대상자 국가지원 내역 안내를 위한 콘텐츠(공익광고 등) 개발, 언론홍보, 온-오프라인 캠페인 전개
- B형간염 퇴치를 위한 장기적 국가 전략 개발
- B형간염 퇴치의 성과 결과 확인(정책용역사업 지속관리)



03

PART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1. 배경

- 국내 B형간염 바이러스 감염의 주된 경로는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인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의 주산기 감염이며,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신생아 감염 가능성은 산모의 B형간염 e항원(HBeAg)이 양성인 경우 65~93%, HBeAg이 음성인 경우는 19~25%임¹⁴⁾
- 주산기에 감염된 신생아는 대부분 증상이 없는 감염을 앓은 후 90% 이상에서 B형간염 바이러스 만성 보유자가 되며 40~50대에 만성간염이나 간경변증으로 이행됨
- 주산기감염 위험이 높은 HBsAg 양성 산모로부터 태어나 신생아에게 B형간염 백신을 단독 사용하는 경우 75~80%가 예방되고 B형간염 면역글로블린과 예방접종을 동시 시행하는 경우 97%까지 예방이 가능함¹⁵⁾

2. 목적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또는 e항원(HBeAg)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의 B형간염 주산기감염을 예방

3. 목표

- 10세 미만 소아의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률 0.1% 미만으로 유지
- 10년 이내에 전체 인구의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률 2% 미만으로 감소

※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행동계획(2015) : 2025년까지 5세 미만 영유아 표면 항원 양성률 1%미만, B형간염의 주산기 전파율 2%미만 달성

14) Kwon SY, Lee CH. Epidemiology and prevention of hepatitis B virus infection. Korean J Hepatol. 2011 Jun;17(2):87-95. J Hepatol. 2011 Dec;55(6):1215-21

15) Y. Ghendon. WHO strategy for the global elimination of new cases of hepatitis B. Vaccine 8(supl);129-133

4. 예방사업 처치일정 및 비용지원 범위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의 예방처치 일정

접종 및 검사		접종 및 검사 시기	최소연령	최소간격
기초 접종	1차 접종 (백신,면역글로불린)	출생 직후(12시간 이내)		
	2차 접종(백신)	생후 1개월	생후 4주	1차 접종 후 4주
	3차 접종(백신)	생후 6개월	생후 24주	2차 접종 후 8주 1차 접종 후 16주
1차 항원·항체검사		생후 9개월 이상 ~ 15개월 미만	생후 9개월	3차 접종 후 4주

※ 1차 항원·항체 검사결과에 따라 추가 접종 및 검사 진행여부 결정[그림 7 참조]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의 접종 및 검사비용 지원 범위

- 기초접종 3회(1차~3차)
- 항원·항체 검사 3회(1차~3차) - 항원·항체 검사결과에 따라 추가 검사필요 시 순차진행에 의한 3차 검사까지 비용지원 가능
- 추가접종 3회(1차 재접종~3차 재접종) - 항원·항체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접종 필요시 순차진행에 의한 재접종 3차까지 비용지원 가능

※ 접종 및 검사의 순차진행 : 8장 예방접종 및 항원·항체 검사 실시기준 참조

5. 추진 방향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또는 표면e항원(HBeAg)양성 산모 및 출생아 관리 강화
 - 주산기감염 신생아 등록 관리를 통한 B형간염 백신 및 면역글로블린 접종률 향상
 - 예방조치 실패자에 대한 관리 강화
- 효율적인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의료단체와 사업공동추진

6. 경과

- 공동합의문 발표 : 정부·의료계가 공동으로 B형간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결의 (2002.6.26)
- B형간염 산모로부터 출생하는 신생아에게 면역글로블린, 예방접종 및 항원·항체검사 비용을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는 사업 시작(2002.7.1)
-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WHO WPRO)에서 한국 B형간염 관리 성과 인증 (2008.9.22)
-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B형간염 관리 성과인증' 선정(2011.6.15)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수행 방식 변경(2014.1.1)
 - 'B형간염 예방수첩(쿠폰 포함)' 발급·확인 절차를 전산화하여 시스템을 통해 접종내역을 등록하고 비용청구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교육관리 시스템 운영(2014.6.5)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개요 및 시스템 사용방법(보건소용, 의료기관용)

7. 추진 실적(2002. 7. ~ 2014. 12.)

1.1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신규 등록 현황

구 분	계	2002.7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대상자 추계 (명)	188,224	7,857	16,678	16,074	14,791	15,237	15,783	14,909	14,235	15,045	15,080	15,506	13,966	13,063
신규 등록자 수(명)	180,690	5,474	14,586	15,410	14,411	15,002	16,483	15,266	14,636	14,870	15,022	14,607	12,776	12,147
등록률 (%)	96.0	69.7	87.5	95.9	97.4	98.5	104.4	102.4	102.8	98.8	99.6	94.2	91.5	93.0

※ 등록자 수 기준 : 사업 대상자 수첩 발행년도 기준

※ 대상자 추계 = 년도 별 출생아 수 * 산모 표면항원 양성률

· 산모 표면항원 양성률 2002~2006 : 3.4%, 2007~2010 : 3.2%, 2011~ : 3.0%

1.2 접종 차수별 및 검사 등록 현황

구 분	1차접종	2차접종 ¹⁾	3차접종 ¹⁾	항원항체1차검사 ²⁾
계(%)	180,607	170,601 (88.5)	161,595 (77.0)	103,781 (50.4)
2002.7	5,474	4,887 (89.3)	4,455 (81.4)	3,049 (55.7)
2003	14,586	13,386 (91.8)	12,277 (84.2)	8,898 (61.0)
2004	15,410	14,004 (90.9)	12,745 (82.7)	9,148 (59.4)
2005	14,411	12,923 (89.7)	11,702 (81.2)	8,150 (56.6)
2006	15,002	13,421 (89.5)	12,100 (80.7)	8,429 (56.2)
2007	16,483	14,898 (90.4)	13,839 (84.0)	9,325 (56.6)
2008	15,266	13,833 (90.6)	12,945 (84.8)	8,792 (57.6)
2009	14,632	14,650 (89.3)	14,149 (96.7)	8,397 (57.4)
2010	14,870	14,781 (99.4)	14,442 (97.1)	8,050 (55.7)
2011	15,022	14,880 (99.1)	14,534 (96.8)	7,940 (54.6)
2012	14,607	14,346 (98.2)	14,082 (96.4)	9,009 (64.0)
2013	12,775	12,629 (98.9)	12,517 (98.7)	9,423 (75.3)
2014	12,069	11,963 (99.1)	11,808 (97.8)	5,171 (43.8) ³⁾

※ 기준 : 수첩(쿠폰) 발행년도 기준, 보건소 B형간염 예방사업 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의 접종 및 검사

1) 2010년 이후 통계는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과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통해 접종력이 등록된 자

2) 권장 검사 시기 경과자 중 검사결과 등록자

3) 항원항체 1차 검사는 생후 9개월이상~15개월미만에 시행이 권장되며, 2014년 수치는 2014년 12월까지 검사를 시행한 건수, ※ 각 괄호안의 숫자는 사업대상자 중 접종 또는 검사를 시행한 비율

2.3 항원·항체 검사결과 (2002. 7. ~ 2014. 12.)

구 분	검사결과	명	비율(%)
성공 (97.1%)	HBsAg (-) /anti-HBs Ab (+)	84,201	85.7
	HBsAg (-) /anti-HBs Ab (-)	11,214	11.4
실패 (2.9%)	HBsAg (+) /anti-HBs Ab (-)	2,674	2.7
	HBsAg (+) /anti-HBs Ab (+)	141	0.1
계		98,293	100.0

2.4 보건의료기관 참여현황(2002. 7. ~ 2014. 12.)

구 분	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계	43,482	2,219	2,218	32,722	6,323
2002.7	1,203	89	46	817	251
2003	2,700	141	88	2,070	401
2004	3,034	144	108	2,374	408
2005	3,050	149	112	2,374	415
2006	3,078	157	125	2,384	412
2007	3,098	149	129	2,391	429
2008	3,175	162	151	2,417	445
2009	3,118	158	166	2,348	446
2010	3,241	181	192	2,445	423
2011	3,473	189	219	2,549	516
2012	3,654	175	245	2,509	725
2013	3,675	233	270	2,446	726
2014	6,983	292	367	5,598	726

※ 수첩(쿠폰) 발행년도 기준,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에 참여하여 접종력을 등록한 보건의료기관 현황



04
PART

2016년도
사업계획



1. 사업계획 개요

1.1 사업대상 및 예상 사업량

- 사업대상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양성 또는 e항원(HBeAg)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
- 예상 사업량
 - 신규등록 : 13,063명 \approx 435,435명(2014년 출생아수) \times 3.0%(산모 HBsAg 양성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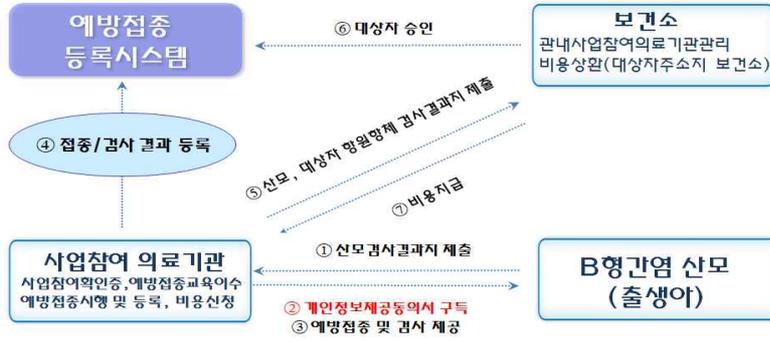
1.2 참여기관 및 사업내용

- 분만기관 : 사업 설명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구득, B형간염 1차 예방처치(백신, 면역글로블린) 시행 후 대상자 정보 및 처치내역 전산 등록
- 접종기관 : B형간염 예방접종, 항원·항체 검사 등 예방처치(예방접종+검사) 시행 후 결과전산 등록

1.3 소요예산 : 1,822백만원(국비 837백만원, 지방비 985백만원)

1.4 사업기간 : 2016.1.1~2016.12.31

2. 사업 추진 체계



3. 사업 참여 절차

1.1 예방접종 교육이수(사업 참여 의료기관)

- 사업 참여 전 :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http://edu.cdc.go.kr>)을 통해 의료기관 교육과정 이수(사업실시 이전에 위탁 의료기관 의료인 1인 이상은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교육과정 이수)

1.2 보건소 제출서류(사업 참여 의료기관)

- 2016년 신규 사업 참여시 제출 서류 : 사업참여 확인증<별첨서식2>, 비용상환용 통장사본, 의료기관 교육 수료증<별첨서식3>, 사전 자율점검표<별첨서식4>
- 의료기관명, 기관코드, 대표자 등 의료기관 정보가 변경되거나 의료기관 주소이전으로 관할 보건소가 변경된 경우 사업참여 확인증, 비용상환용 통장사본을 해당 관할 보건소에 제출
- 기존사업 참여 의료기관(2016년 1월 1일 전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중 지속 참여를 원할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의료기관 교육 수료증(해당 사이트에서 이수 후 출력), 사전자율 점검표를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제출
 - ※ 비용상환용 통장사본은 국가예방접종 사업(NIP)과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에 참여하는 위탁의료기관의 경우 동일 통장 사용가능(사전자율 점검표에 'NIP참여 일괄 체크'를 선택하여 제출)

1.3 사업 참여 의료기관 게재(시·군·구)

- 시·군·구는 보건소 및 시·군·구 홈페이지에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게재하고, 변동 사항은 예방접종 도우미사이트 '국가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 찾기'를 통하여 확인 가능함을 공지
- 의료기관의 위탁 사업 참여 신청 후 보건소 승인으로 전산시스템에 위탁사업 참여 의료기관으로 등록이 되면 예방접종 도우미사이트 (<http://nip.cdc.go.kr>)에서 의료기관 찾기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지정 의료기관 검색 가능

4. 비용청구 체계

1.1 비용청구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 후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에 접종내역 등록 시 자동으로 비용청구 가능

(당일 청구가 원칙이며 부득이 지연 시에는 접종 후 30일 이내 청구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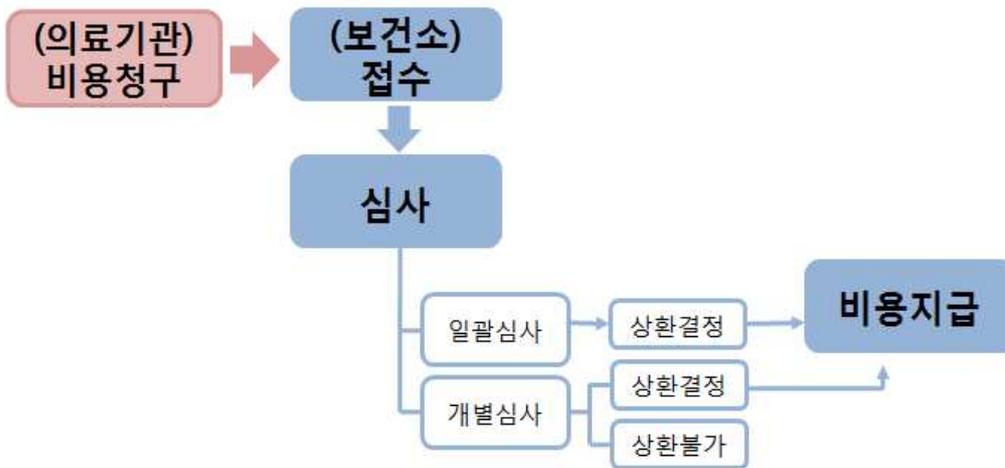
※ 법적출생신고기한(생후 1개월) 전 신생아는 반드시 산모의 인적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접종내역 등록(주민등록 번호 및 관리번호 발급 전 비용지급 보류)

※ 출생신고가 늦을 경우 대상자 주소지관할 보건소에서 관리번호 부여하여 비용청구

1.2 비용지급

- (보건소) 비용청구 접수된 예방접종 및 검사내역에 대해 심사(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후 심사 결과에 따라 비용지급(비용청구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가 심사 및 비용지급 실시

※ 출생신고가 지연된 신생아는 비용지급을 위해 출생신고 독려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지연 건은 대상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관리번호 발급 후 비용지급



<의료기관 비용청구시 보건소의 비용지급 과정>

5. 사업대상자 개인정보 관리

1.1 기본 원칙

- 사업 안내 후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첨서식1>을 작성하고 사업 대상자로 전산 등록하여 관리
- 미동의자는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통해 B형간염 3회 예방접종 비용지원
- ※ 미동의자의 경우 면역글로불린 투여, 항원·항체 검사, 추가 접종 및 검사비용 자비부담

1.2 용어의 정의

- 사업대상자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양성 또는 e항원(HBeAg)양성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
- 신규 사업대상자 : B형간염 예방수첩을 발급 받지 않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 후 전산 등록된 사업대상자
- 기존 사업대상자 : B형간염 예방 수첩을 발급 받아 쿠폰 제출을 통해 예방처치 및 검사를 받고 있는 대상자

1.3 신규 사업대상자 개인정보 관리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구독 후 사업 대상자로 전산 등록하여 관리
- 의료기관에서 신규 대상자 전산등록 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항목에 체크하여 등록하고 동의서는 5년간 보관

1.4 기존 사업대상자 개인정보 관리

- (의료기관) 쿠폰 대상자의 경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구독하여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 팩스로 제출
- (보건소)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확인 후 수첩대상자승인 메뉴를 이용하여 신규 전산시스템으로 변경 등록한 뒤 신규 사업대상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전산관리(신규대상자 처리전환방법 <부록 2>)

6. 법적 근거

● 모자보건법 제10조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요원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조 <신설 2014.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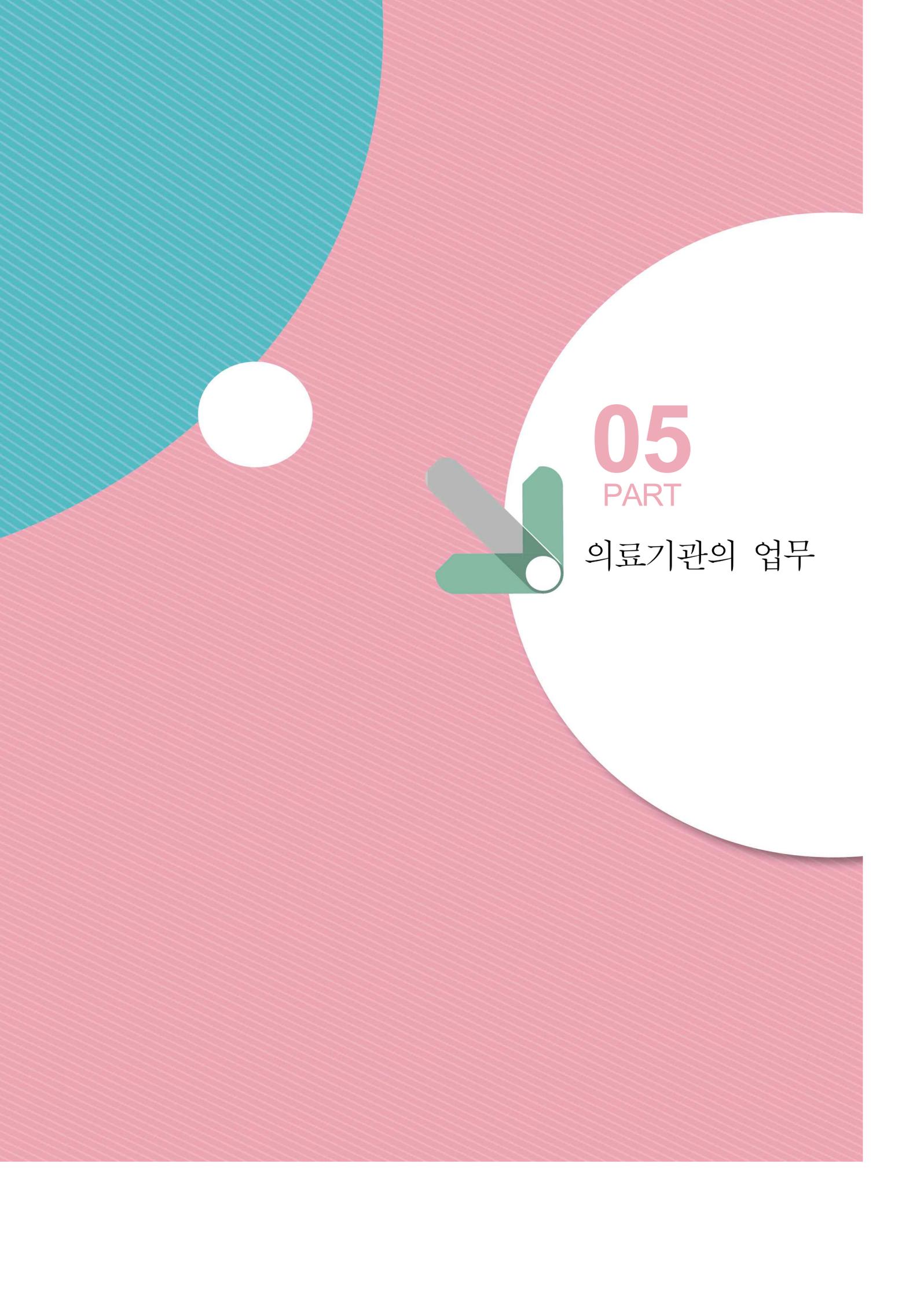
제23조의5(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질병관리본부장은 예방접종 대상자의 중복접종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의료인
2.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의료인

● 모자보건법 제19조

제19조(민감 정보 및 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 국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보건관리 및 의료 지원에 관한 사무



05
PART

의료기관의 업무



1. 예방접종 교육 이수

1.1 기본교육

(1)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http://edu.cdc.go.kr>)에서 온라인 교육 이수

- (교육방법) 관할 보건소에 사업 참여 신청 전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 (<http://edu.cdc.go.kr>)을 통한 온라인 교육 이수
- (교육대상)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는 계약 체결 전 B형간염 주산기감염예방사업(1차시) 교육을 이수, 기존 사업 참여 의료기관 중 교육 미완료자는 2016년도 교육과정 이수 후 수료증 출력하여 해당관할 보건소에 제출

● (교육차시)

1차시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개요 및 시스템 사용방법(의료기관용)

차 시	(1기)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교육(2016)
1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개요 및 시스템 사용방법(의료기관용)

※ 운영기간 : 2015.12.15~2016.2.29

차 시	(2기)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교육(2016)
1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개요 및 시스템 사용방법(의료기관용)

※ 운영기간 : 2016.3.2~2017.2.28

※ 수료증 출력 :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에서 교육이수 후 '수강 과정'(또는 '수료증 출력') ⇨ 수강종료과정 메뉴에서 기본교육(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교육) 수료증 출력

1.2 사업 변경 및 추가사항 숙지

- 사업참여 의료기관은 매년 사업 변경 및 추가사항 숙지
- 년 초 사업변경 및 추가사항 안내(관할보건소) 후 년 2회 자율점검표로 확인하여 관할보건소에 제출

2. 예방사업 참여

2.1 사업참여 시 제출서류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 확인증<별첨서식2>
- 의료기관 교육 수료증 : 온라인 교육 수강 후 의료기관 교육 이수증 제출
- 비용상환용 통장사본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접종 및 검사비용을 지급받기위한 통장사본으로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비용상환용 별도 계정의 통장개설 권고
- 사전 자율점검표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사전자율점검표<별첨서식 4>
 - ※ 비용상환용 통장사본은 국가예방접종 사업(NIP)과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에 참여하는 위탁의료기관의 경우 동일 통장 사용가능(사전자율 점검표에 'NIP참여 일괄 체크'를 선택하여 제출)

2.2 참여의료기관의 등록 및 접속방법

- 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접속 하여 사용자 가입
- ② 예방접종 등록시스템 권한 신청 (->관할보건소가 승인)
- ③ 사용자 가입 완료 후 인증서를 등록하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인증서로 로그인
- ④ 권한 및 부가정보관리 화면에서 '예방접종관리(B형 병원)' 항목의 '승인기관'버튼을 클릭하여 관할보건소 선택 후 저장('신청중'으로 변경되며 관할보건소에서 승인)
- ⑤ 관할보건소에서 승인시 권한상태가 '승인'으로 변경되며 예방접종관리업무 메뉴 사용 가능
- ⑥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의 '메뉴보기' 선택 → 예방접종관리 → 예방접종등록 → 인터넷 예방접종등록 선택하여 사용

2.3 사업 참여

- 2016년 신규사업 참여시 해당 서류제출(2.1 사업참여 시 제출서류 참고)
- 기존사업 참여 의료기관(2016년 1월 1일 전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중 지속 참여를 원할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의료기관 교육이수증(해당 사이트에서 이수 후 출력), 사전자율 점검표를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제출
- 의료기관명, 기관코드, 대표자 등 의료기관 정보가 변경되거나 의료기관 주소이전으로 관할 보건소가 변경된 경우 사업참여 확인증, 비용상환용 통장사본, 온라인 교육 수료증을 출력하여 해당 관할 보건소에 제출
- 사업참여 기간 중 갱신을 위한 추가서류제출 및 보수교육 과정은 따로 두지 않으나, 매년 사업 변경 및 추가사항을 숙지하여 사전자율점검표로 확인 후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년 2회 제출
 - ※ 비용상환용 통장사본은 국가예방접종 사업(NIP)과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에 참여하는 위탁의료기관의 경우 동일 통장 사용가능(사전자율 점검표에 NIP참여 체크하여 제출)

2.4 의료기관 자율점검

- (점검주기) 연 2회 상·하반기 사전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관할보건소에 제출
- (점검 내용)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안내, 사업 변경사항,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구득, 산모 검사 결과지 확인, 대상자 항원·항체 검사 결과지 확인, 대상자 및 예방접종 내역 전산등록 등 <별첨서식4>

2.5 예방접종기록의 개인정보 관리

- 예방접종 기록은 피접종자의 중복접종 및 접종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종기관간 공유하며, 예방접종 목적 이외의 용도로 개인정보가 공유되지 않도록 주의
 -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위탁계약조건 제6항에 따라 목적이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한 경우 사업참여 해지

2.6 기관방문 협조

- 보건소 및 시·군·구 홈페이지에 사업참여 의료기관 현황 게재
- 관할 시·군·구(보건소)는 주소지 관할 의료기관 방문점검(연 1회 이상)
 - NIP참여의료기관 : 보건소는 NIP참여의료기관 방문점검 일에 함께 실시
 - NIP미참여의료기관 : 년 1회 사전 통보 후 방문점검

3. 예방사업 수행

3.1 산전 진찰기관

(1) 산전 B형간염 검사 안내 및 실시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또는 e항원(HBeAg) 검사결과 확인
 - 의료기관은 진료하는 모든 임신부에게 임신 초기에 B형간염 검사를 권고 하며, 고위험군 또는 간염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 말기에 재검사 권장
- 산모가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에서는 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검사를 받도록 권장
- 검사결과 확인위해 방문 시 항원양성일 경우,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을 안내하고 참여를 원할 경우(필요시) 검사결과지를 발급

(2) 예방사업 설명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 또는 e항원(HBeAg) 양성 산모에게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설명(리플렛 배포, 참여방법 및 예방처치 효과 안내 및 교육)

3.2 분만기관

(1) 예방사업 설명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구득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 또는 e항원(HBeAg) 양성 산모에게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 **분만 전** 대상자 및 접촉내역 정보 공유에 대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구득<별첨서식1>**
 - 추적관리를 위해 예방접종, 검사를 시행한 의료기관 간 대상자 및 접촉내역 정보 공유
 - 단, B형간염에 대한 산전검사 결과가 없고, 분만 시 산모의 B형간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분만 후 즉시 사업 설명과 함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구득
 -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구득은 대상자 발견시 단 1회만 필요하며, **보존기간은 5년임**
 - ※ 산모가 B형간염 보유자라는 정보가 산모 외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2) 면역글로불린 투여 및 B형간염 1차 예방접종 실시

- **출생 후 12시간 이내** 면역글로불린 투여 및 1차 B형간염 예방접종 실시
 - ※ 면역글로불린 투여 및 B형간염 1차 예방접종 등록방법<부록2>

(3)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 등록

- 등록대상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양성 또는 e항원(HBeAg)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
- 등록방법 : 대상자 정보와 산모 정보(인적사항, B형간염 검사결과)를 질병보건 통합관리시스템 (<http://is.cdc.go.kr>)에 등록
- 등록 시 주의사항
 - 산모검사결과를 입력한 의료기관에서만 면역글로불린, B형간염 1차 예방접종 내역 등록 가능
 - 산모검사결과와 면역글로불린, B형간염 1차 예방접종 내역을 모두 등록하면 대상자 신청 완료
- ※ 대상자 등록방법<부록2>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 예방접종관리 → 인터넷예방접종등록 →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의 [예방접종등록]에서 피접종자 정보 입력하고,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대상자 체크박스에 체크 한 후 산모검사결과 입력하고 '저장'버튼 클릭하면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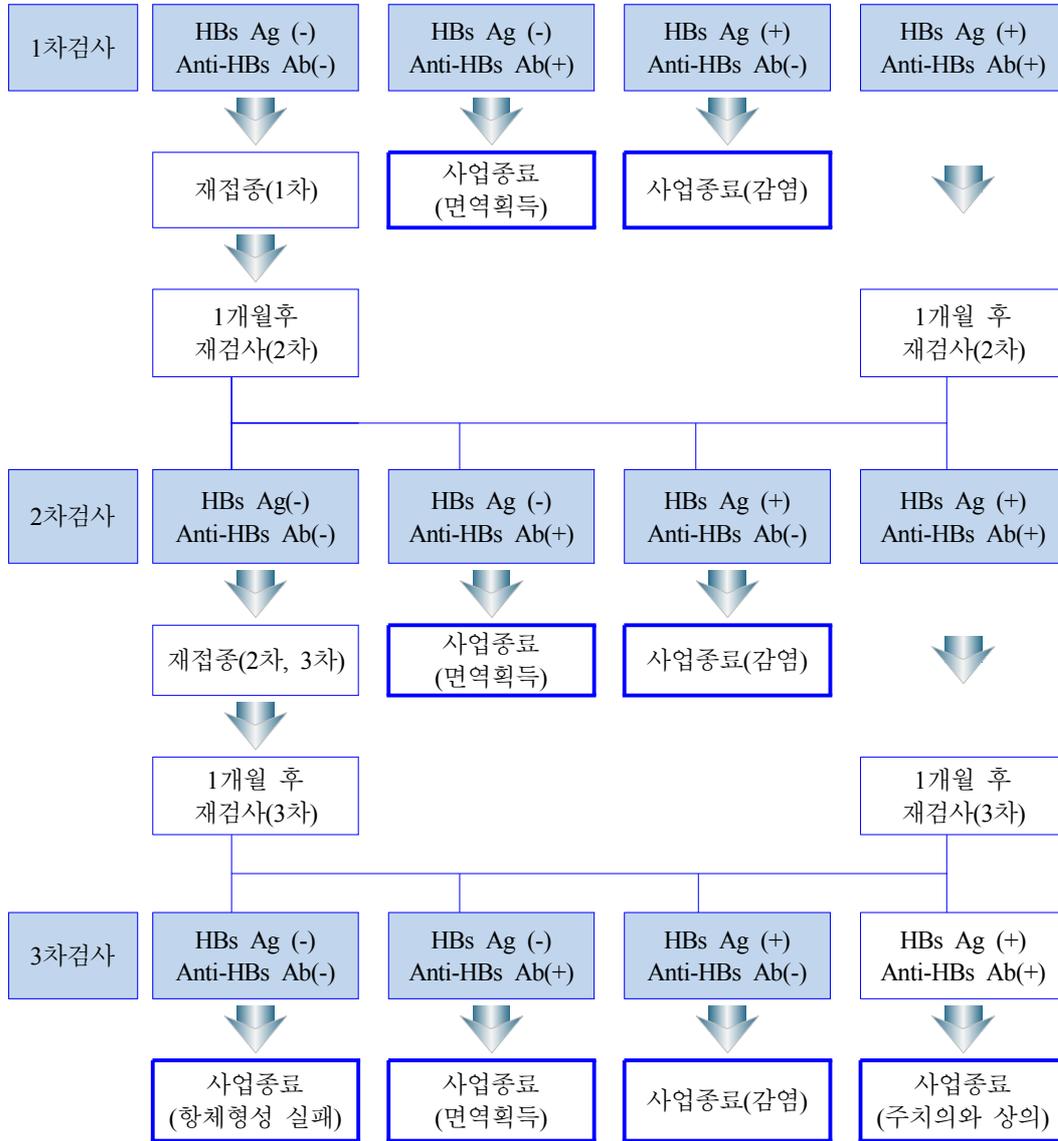
(4) 산모검사결과지 팩스로 제출

- 등록한 대상자의 산모 B형간염 검사결과지를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팩스로 제출
- ※ <부록3> 전국 시·군·구 보건소 담당자 연락처(팩스번호) 참조

3.3 접종기관

(1) B형간염 2·3차 예방접종 실시

- B형간염 2차 예방접종을 **출생 후 1개월**에 접종 (1차 접종 후 최소 4주 이상)
- B형간염 3차 예방접종을 **출생 후 6개월**에 접종 (2차 접종 후 최소 8주 이상, 1차 접종 후 최소 16주 이상)
 - ※ 미숙아 접종(출생 시 체중 2kg미만인 동시에 37주 미만 출생)
 - 전산등록 순서 : 1차접종 → 미숙아 → 2차접종 → 3차접종
 - 출생 직후 접종한 첫 번째 B형간염 예방접종을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출생 후 1, 2, 6개월에 3회 더 접종(총 4회, 0-1-2-6개월 접종일정)
 - ※ 상세 내용은 '제8장 예방접종 및 검사 실시기준'참조



제 5장 의료기관의 업무

[그림 7] 기초예방접종(1~3차) 완료 후 1차 항원·항체 검사결과에 따른 추적관리 흐름도

(2) 1차 항원·항체검사 결과에 따른 추적관리-(그림7)

- 1차 항원·항체검사 결과 값 판독
 - 항체 음성 : Anti-HBs Ab < 10mIU/mL
 - 항체 양성 : Anti-HBs Ab ≥ 10mIU/mL

- B형간염 1차 항원·항체검사
 - 대상자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 중 면역글로불린 투여와 B형간염 3회 예방접종을 완료한 대상자
 - 기초 예방접종 3회 완료 후 생후 9개월이상~15개월미만에 B형간염 항원·항체 혈청검사를 받드시 EIA, ECL, CIA 등의 정량검사법으로 실시
 - ※ 지연접종 시 3차 접종 후 최소 1개월 간격을 두고 항원·항체 검사를 실시하여 정성(+양성, -음성), 정량결과(항원·항체가/단위)를 함께 입력. 단, 최소접종간격으로 진행될지라도 최소 연령은 생후 9개월 유지

- B형간염 1차 재접종
 - 대상자 : B형간염 1차 항원·항체 검사결과 항체미형성자[HBsAg(-), anti-HBs Ab(-)]
 - 검사결과 확인 후, 1주일 이내 B형간염 1차 재접종 실시

- B형간염 2차 항원·항체검사
 - 1차 재접종 후 최소 1개월의 간격을 두고 2차 항원·항체 검사를 받드시 EIA, ECL, CIA 등의 정량검사법으로 실시
 - 1차 검사결과 [HBsAg(+), anti-HBs Ab(+)]인 경우도 1개월 후 2차 항원·항체 검사 실시
 - ※ 항원·항체 검사결과 모두 정성결과(양성, 음성)와 정량결과(항원·항체가/단위)를 함께 입력

- B형간염 2·3차 재접종
 - 대상자 : B형간염 2차 항원·항체 검사결과 항체미형성자[HBsAg(-), anti-HBs Ab(-)]

- B형간염 3차 항원·항체검사
 - 2·3차 재접종 후 최소 1개월의 간격을 두고 3차 항원·항체 검사 실시
 - 2차 검사결과 [HBsAg(+), anti-HBs Ab(+)]인 경우도 1개월 후 3차 항원·항체 검사를 받드시 정량검사법으로 실시
 - 3차 항원·항체 검사 후 항체 미형성자에 대한 추가 재접종 여부는 사례별로 의료인이 판단하며 동 접종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3) 예방접종 및 검사 결과 등록
 - B형간염 예방접종 및 항원·항체 검사 실시 후 시스템에 예방처치 결과 등록<부록2>

(4) 감염자 관리안내문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 중 예방조치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대상자(보호자)에게 감염자 관리안내문 배포<별첨6>

(5) 기존 사업대상자 쿠폰 접수 시 처리 방식

- 수첩(쿠폰) 접수 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별첨 1> 구득 후 예방처치
- 비용청구 방법
 - (개인정보제공 동의자) 쿠폰과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 제출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자) 쿠폰만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 제출
- 예방접종 등록화면으로 기존 대상자 확인 : 화면의 왼쪽하단의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문구 옆 란에 “ 대상자일 경우 체크”라는 문구가 생략되어 공란처리 된 대상자(Q&A 기타의 문항 1번 참조)

※ 단, 기존 수첩 사업대상자 중 이전에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보건소에 제출하여 승인된 경우는 시스템 방식으로 전환된 대상자이므로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예방처치 내역 등록 및 비용청구 가능

4. 비용청구 및 결과확인

4.1 비용청구 금액

- '16년도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지원비용 : 1인당 148,700원
 - (백신비용)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비용 백신단가 적용
 - (접종비, 검사비) '16년 건강보험수가 산정기준에 따라 적용
- 비용청구 내용
 - 면역글로불린 투여 및 B형간염 1차 예방접종 비용 : 50,000원
 - ※ 기존 쿠폰 발급비(1,000원)는 없어지고, 대상자 등록비(1,000원)가 포함됨
 - 2·3차 예방접종 비용 : 22,100원
 - 항원·항체 검사 비용 : 54,500원

구 분	2016년		2015년		비고
계	148,700원		133,700원		+15,000원
HBIG & 1차 접종	50,000원	27,900원1)	48,600원	26,900원1)	+1,400원
		22,100원2)		21,700원2)	
2차 접종	22,100원		21,700원		+400원
3차 접종	22,100원		21,700원		+400원
항원·항체 검사	54,500원3)		41,700원3)		+12,800원

- 1) HBIG 투여 지원비용 = 평균 납품가(25,000원) + 의약품 관리료(86원) + 주사료(2,787원) + 대상자등록비(1,000원)
- 2) B형간염 예방접종 지원비용 = 백신단가(2,270원) + 의약품 관리료(88) + 주사료(2,787원) + 예진 상담료(16,973원)
- 3) 검사 지원비용 = 항원항체 검사료(42,216원) + 검사 상담료(12,285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B형간염 표면항원 정량검사 상대가치 점수 변경(138.37->327.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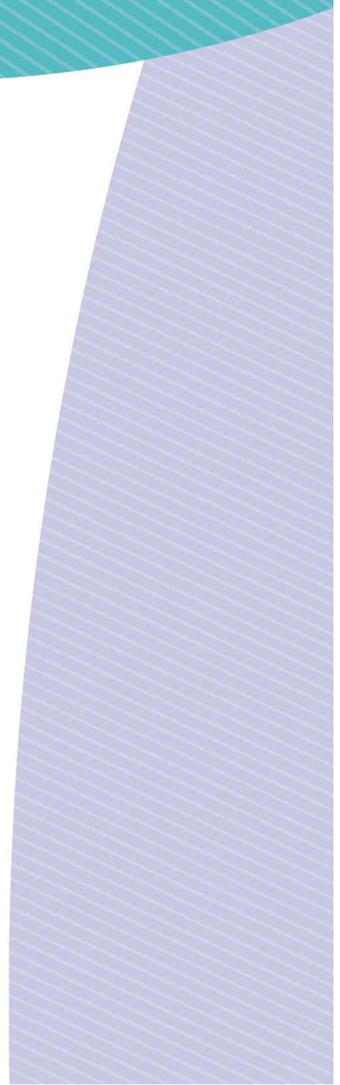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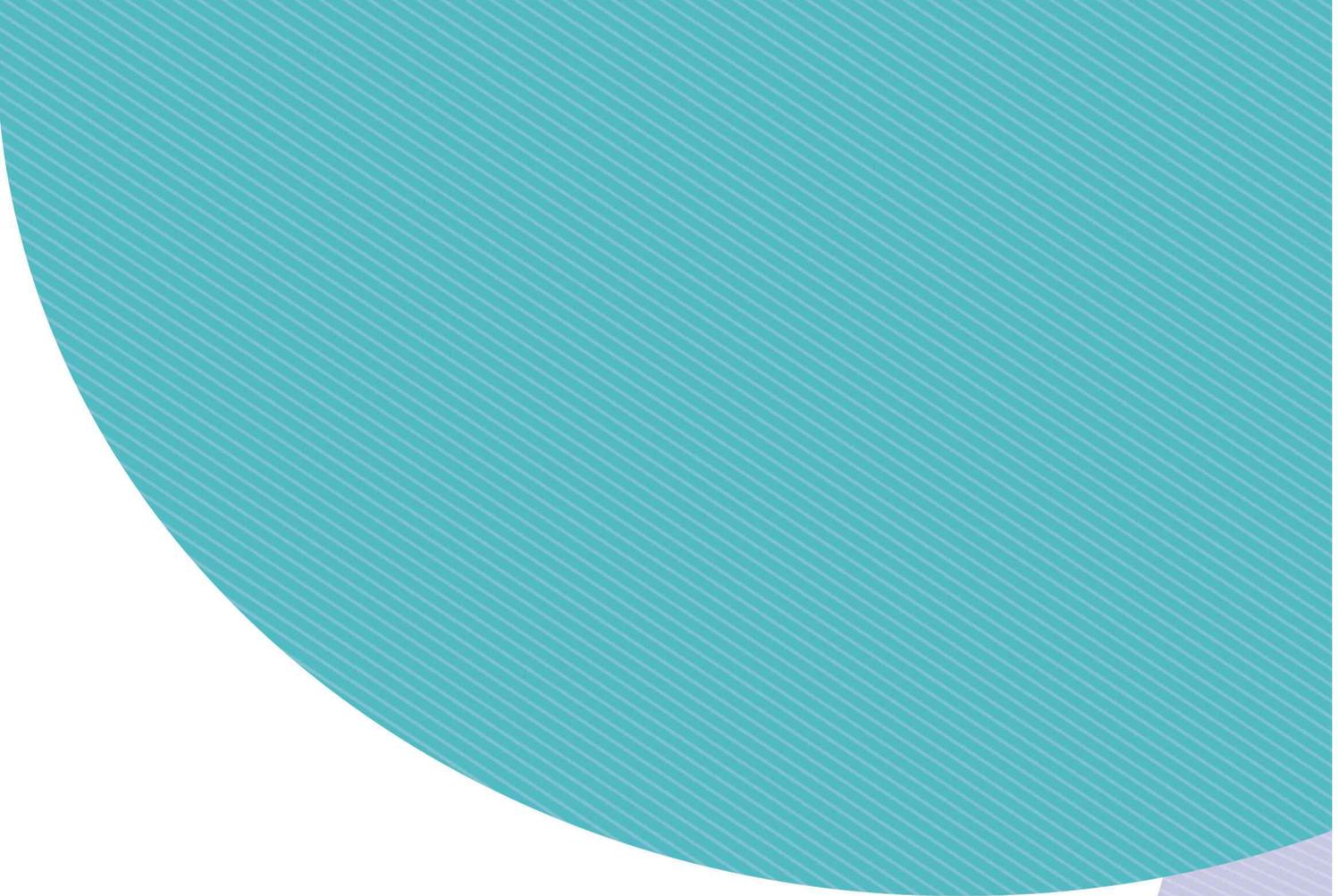
4.2 비용청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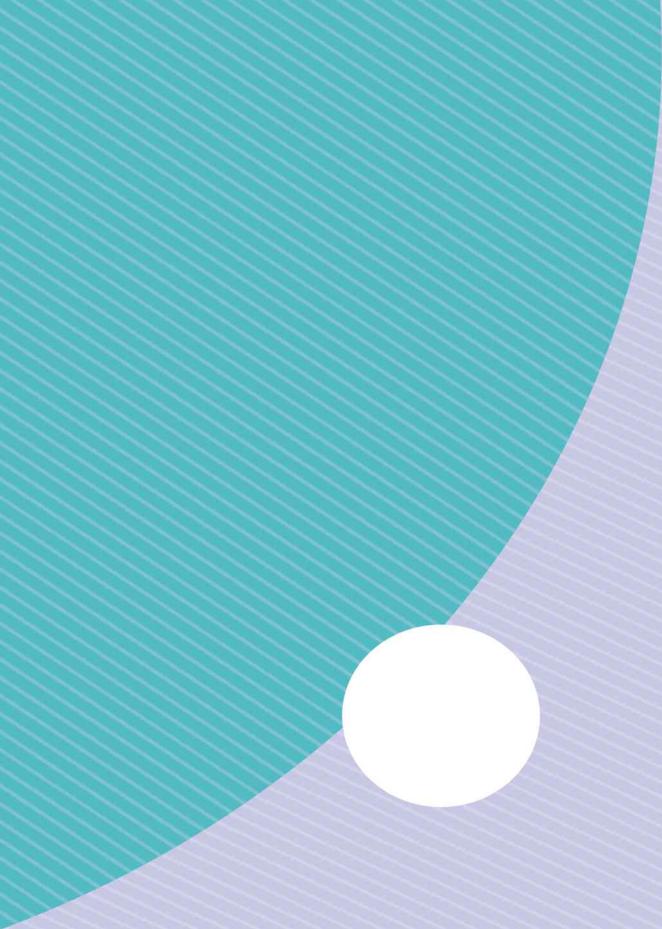
● 비용청구

-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종내역 등록 및 비용청구
 - 예방접종내역 등록 시 '예방접종 등록' 입력화면에서 'B형간염 비용청구 금액'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므로 비용 확인 후 등록
-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에 접종내역 등록 시 자동으로 피접종자 주민등록상 주소지보건소에 비용청구(당일청구가 원칙이나 부득이 지연 시에는 접종 후 30일 이내 청구 완료)
- 법적출생신고기한(출생 후 1개월 이내) 전 신생아는 예방접종 기록 등록 시 신생아 정보와 함께 산모의 인적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비용청구 가능
 - ※ (출생신고 완료) 신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서 접종내역 심사 및 비용지급
 - ※ (출생신고 미완료)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서 대상자 승인(심사 및 비용지급 보류) - 보건소에서 대상자 승인 전일 경우 다음 차수에 대한 비용신청 불가
 - ※ 주민등록번호 오류('인증오류'로 구분됨)인 경우 신청내역 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확인 필요
 - ※ 법적출생신고기간 지났는데도 7자리 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인적은 출생신고 독려,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생신고가 늦어질 경우 관리번호 부여하여 비용지급 및 다음차수 접종 등록 진행

4.3 비용청구 결과 확인

- 신청한 접종내역은 안전행정부의 ‘행정정보공유센터’를 거쳐 피접종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서 접수 후 비용청구 심사 및 지급
 - 등록된 피접종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오류가 발생하여 보건소에서 접수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등록
 - 비용청구 진행상황은 ‘접수완료’, ‘상환결정’, ‘상환불가’, ‘인증오류’로 구분되며 지급이 완료된 경우 ‘지급완료’로 구분
 - (상환불가) ‘상환불가 사유’에 대해 조회가 가능하며 관할보건소로 문의
 - (인증오류) 피접종자 주민등록번호가 오류인 경우로 의료기관에서 피접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정하기 전까지는 피접종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를 확인할 수 없어 비용청구 내역 접수 및 심사 불가
- ※ 비용청구 결과 조회방법<부록2>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 예방접종관리 → 인터넷예방접종등록 →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비용청구관리 → [비용청구내역] 또는 [비용청구 지급결과] 메뉴에서 조회기간 설정 후 신청 내역 조회





06

PART

시·도의 업무



1. 사업 홍보 계획 수립 및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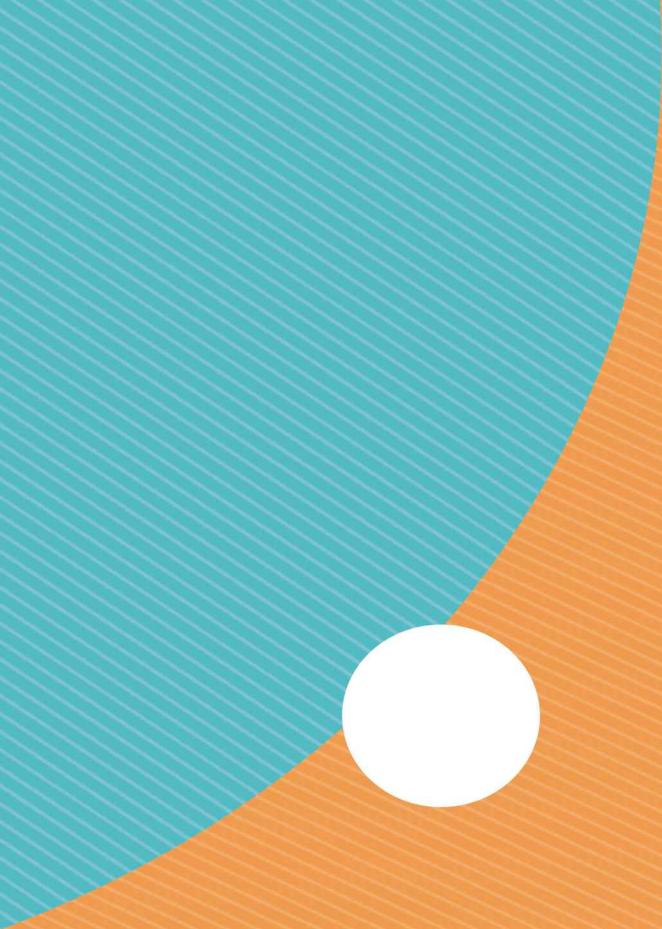
- 지역사회 홍보
 - 관용매체(시정소식지, 반상회보, 전광판, 홈페이지 등) 활용 홍보
 - 시·도청 홈페이지에 사업 공지(온라인 배너 달기)
- 관련 학·협회 등 유관기관 대상 홍보
 - 예방처치 후 항원·항체 검사의 중요성 강조
 - 예방사업의 변경 사항(비용수가, 사업지침 변경사항 등) 안내

2. 시·군·구(보건소) 담당자 교육 및 관리

- 보건소 담당자 교육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홍보

3. 시·군·구(보건소) 사업 시행 현황 모니터링 및 관리

- 보건소 비용청구 현황 모니터링 지속,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등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실적/통계’ 메뉴에서 현황 조회 가능
 - ※ 실적조회 방법<부록2>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 예방접종관리 →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
 - 실적/통계 → 실적관리(시·도) 메뉴에서 시·군·구별 현황 조회



07

PART

시·군·구
(보건소)의 업무



1. 사업 홍보 계획 수립 및 시행

- 지역사회 홍보
 - 관용매체(시정소식지, 반상회보, 홈페이지 등) 적극 활용
- 의료기관과 지속적인 정보 공유 및 정확한 정보 전달 체계 유지
 - 예방처치 후 항원·항체 검사의 중요성 강조
 - 예방사업의 변경 사항(비용수가, 사업지침 변경사항 등) 안내

2. 기본 교육이수

-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http://edu.cdc.go.kr>)에서 온라인 교육 이수
- (교육대상)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
 - ※ 수료자 명단은 매월 첫째 주 시·도로 통지하며 별도의 수료증은 발급하지 않음
- (교육차시)
 - 1차시 : B형간염의 특성 및 주산기 감염(I)
 - 2차시 : B형간염의 특성 및 주산기 감염(II)
 - 3차시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개요 및 시스템 사용방법(보건소용)

차 시	(1기)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교육(2016)
1	B형간염의 특성 및 주산기 감염(I)
2	B형간염의 특성 및 주산기 감염(II)
3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개요 및 시스템 사용방법(보건소용)

※ 신청기간 : 2016.4.1~2016.11.15

※ 운영기간 : 2016.4.1~2016.11.30

3. 관내 의료기관 관리

3.1 의료기관 교육 관리

- (1)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을 통해 수료현황 관리
 - (교육 대상) 기존 사업 참여의료기관 중 교육 미완료자 또는 사업 참여를 신청한 의료기관의 의료인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교육관리’ → ‘수료자관리’ 또는 ‘수료자관리(개인별)’에서 수료여부 확인 및 수료증 출력 가능
 - 보건소의 교육시스템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관리] → [행정지원] → [자료실] 하단의 [교육사이트 관리자 변경 요청관리]에서 관리자 변경 신청
- (2) 자체 교육 시행
 - 관내 의료기관에 대해 지자체 주관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 의료기관 자율점검 및 방문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해당 의료기관 대상 교육 실시, 재점검 등 관리 철저

[기관별 교육시 강조사항]

- ▶ 산전진찰기관
 - 산전 검사결과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또는 e항원(HBeAg) 양성 산모에게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에 대한 안내, 사업변경사항 숙지
- ▶ 분만기관
 - 분만 전 B형간염 산모에게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에 대해 설명 후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첨서식1> 구독 후 보관(5년간)
 - 분만 후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에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 1차 항원·항체검사의 필요성 안내, 대상자(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산모 검사결과지 제출, 사업변경사항 숙지
- ▶ 접종기관
 - 예방접종 및 항원·항체 검사가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
 - 1차 항원·항체검사의 필요성 안내, 사업변경사항 숙지
 - 산모가 B형간염 보유자라는 정보가 산모 외에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사항 안내 및 교육,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보건소에 검사결과지 제출
 - 감염자의 경우 B형간염관리에 대한 안내문 배포<별첨6>

3.2 사업참여 의료기관 관리

- 년 2회 자율점검표 확인하여 사업변경 및 추가사항 숙지여부 점검
- 보건소 및 시·군·구 홈페이지에 사업참여 의료기관 현황 게재
- 연 1회 이상 기관점검(의료기관 방문점검) 실시

3.3 의료기관 신규등록

- 의료기관이 사업 참여하기 전에 사업체계, 사업지침, 비용청구 체계 등 세부 사업내용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여 대상자 접종 및 검사 기준, 관련 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안내
- 관할 보건소는 안내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의료기관 관리’ 메뉴에서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에 체크하여 저장하면 사업참여 의료기관으로 등록 완료
- 의료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등 의료기관 기본 정보는 의료기관 관할보건소에서 수정가능
 ※ 의료기관 등록 및 수정방법<부록2>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 예방접종관리 → 인터넷예방접종등록 →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 → 행정업무 → [의료기관 관리] 메뉴에서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 체크박스에 체크하고 의료기관 정보 입력 후 저장하면 완료

3.4 의료기관 방문점검 실시

- 사업참여 의료기관의 예방접종업무, 지침 준수 여부 점검
 - 의료기관의 자율점검 실시 확인(연 2회-보건소제출)
- 참여 의료기관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방문점검 실시(연 1회 이상)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안내
 - 대상자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구득 및 보관(5년)여부 확인
 - 등록된 대상자의 산모 검사결과지, 항원·항체 검사결과지 확인
 - 대상자의 예방접종 및 검사 내역 전산등록
 - 전년대비 사업지침 변경사항 숙지여부

4. 사업대상자 승인 및 관리

4.1 사업대상자 승인

- 사업대상자 기준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양성 또는 e항원(HBeAg)양성 산모의 출생아
- 승인 대상 : 해당 관내보건소로 신청(접수)된 사업대상자
- 승인 절차
 - 등록한 의료기관에서 산모검사결과지 받아서 확인 후 대상자 승인
 - 보건소에서 미승인 상태인 대상자의 경우 다음 차수 접종내역 등록 및 비용청구 불가
 - ※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로 검사결과지 이관 필요
- 승인 방법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사이트(<http://is.cdc.go.kr>) → 예방접종관리 →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대상자관리 → 대상자승인]에서 해당 대상자 체크 후 승인<부록참조>
 - ※ 안전행정부에 주민등록번호 확인은 평균 1일 소요되며,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상자 승인이 불가하므로 주민등록번호 재확인 필요

4.2 수첩(쿠폰)대상자 등록

기존 사업대상자는 사업에 지속 참여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구득 후 시스템 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업에 참여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시, 예방처치가 종료될 때(12세 이하)까지 기존 방식대로 예방처치 내용을 보건소에서 등록하고 비용 지급처리

- ※ 수첩(쿠폰) 대상자 예방처치 등록 및 비용지급 방법
 - 등록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의 [예방접종관리] → [예방접종등록] → [예방접종 등록관리 정보시스템]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수첩(쿠폰)대상자 쿠폰등록]에서 수첩번호로 조회 후 반드시 해당 등록 차수 확인 후 등록
 - 비용지급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의 [예방접종관리] → [예방접종등록] → [예방접종 등록관리 정보시스템]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비용청구관리] → [비용청구 지급]에서 지급처리
 - 예방접종 등록화면으로 기존 대상자 확인 : 화면의 왼쪽하단의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문구 옆 란에 “ 대상자일 경우 체크”라는 문구가 생략되어 공란처리 된 대상자(Q&A 기타의 문항 1번 참조)

4.3 사업대상자 관리 및 홍보

(1) 예방접종 사전 안내

- 대상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로 등록된 영유아
- 방법 : 다음 예방접종예정일 전 휴대폰 문자전송, 전화, 우편 등
- 대상자에게 접종 전 연락하여 접종(검사) 지연 및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2) 예방접종 사후 안내

- 대상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로 등록된 영유아
- 방법

- ① 예방접종 및 항원·항체 검사 예정일을 초과한 자에 대하여 개별 추적관리(보건소)
 - 지자체별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담당자가 미완료 대상자에게 개별 연락 후 미접종, 검사 미실시, 미등록의 사유 파악
 - 예방접종 추적관리 대상 : 대상자 중 해당시기가 지났음에도 접종 및 검사가 등록되지 않은 대상자
 - 예방접종 실시 일정 : 연 2회(상·하반기) 관할 보건소별 지속적 검사독려 (개별연락 - 유선, 필요시 방문), 1개월 후 추적관리결과 확인
 - 예방접종 관리사항
 - (a) 접종, 검사여부 확인 (b) 미실시자 접종, 검사 권고
 - (c) 미실시자의 미실시 사유파악 (d) 시행했으나 미등록자 예방접종 전산등록
 - (e) 시행했으나 미등록된 사유 파악
- ② 1차 항원항체 검사 시기가 도래한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전송(질본)
 - 대상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 중 3차 접종 후 4개월이 지난시점까지 항원·항체 검사결과가 등록되지 않은 대상자
 - 방법 : 3, 6, 9, 12월 2째주 월요일(분기 1회) 문자발송
 - ※ 대상자 조회 방법<부록2>
 - 질병보건 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 예방접종관리 → 인터넷예방접종등록 →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의 [대상자관리] → [대상자 조회] 메뉴에서 검색 조건 설정 후 조회 가능

(3) 대상자 관리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생아 정보는 안전행정부 ‘행정정보공유센터’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발급 여부를 지속 확인

5. 비용청구 관리

5.1 비용청구 기준

- (1) 지급 내용 : 피접종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사업대상자의 예방처치 비용
 ※ 법적출생신고기한(출생 후 1개월 이내)까지는 7자리 신생아번호로 비용청구만 가능(비용지급 보류), 관리번호나 주민번호 발급 후 비용상환 가능
- (2) 2016년도 비용지급 금액
- 면역글로불린 투여 및 1차 B형간염 예방접종 : 50,000원
 - 2차 또는 3차 B형간염 예방접종 : 22,100원
 - 항원·항체 검사 비용 : 54,500원

5.2 비용청구 심사

- 절차
 - (접수) 비용청구 내역은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서 확인 및 접수
 - (심사) 접수된 내역에 대해 비용지급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상환결정을 결정하며, 개별심사가 필요한 경우 심사 후 상환불가 혹은 상환결정으로 판정(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 (지급) 비용청구 심사결과 '상환결정' 내역에 대해 참여 의료기관에 비용지급(월 2회 이상)



[그림 8]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비용청구 절차

5.3 비용청구 지급 기준

※ 법적출생신고기한(출생 후 1개월 이내)까지 7자리 신생아번호로는 1차접종에 대한 비용청구만 가능함. 법적 출생신고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7자리 신생아번호로 인적이 남아있을 경우 비용지급 보류 뿐 아니라 다음차수 접종등록도 불가하므로, 출생신고가 지연될 경우 관리번호 발급

- (1) 지급 기한 : 의료기관에서 접종 및 검사비를 비용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2) 지급 보건소 : 피접종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3) 접종비는 해당년도의 접종비 지급단가 적용 (접종일·검사일 기준)
- (4) 비용상환 불가의 예

◆ **중복접종**

-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에 전산 등록된 자료 기준으로 중복접종인 경우

◆ **최소 접종 연령을 미준수한 이른 접종**

- 최소 접종 연령보다 5일 이상 앞당겨 접종된 경우
 - ※ 향후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따른 접종 일정에 맞춰 재접종이 필요하며, 접종 일정에 맞춰 재 접종시 비용청구 가능

◆ **최소 접종 간격을 미준수한 이른 접종**

- 최소 접종 간격보다 5일 이상 앞당겨 접종

◆ **접종 및 검사절차에 적합하지 않은 순서로 진행했을 경우**

- 정해진 스케줄에 맞지 않는 검사나 접종을 했을 경우
 - ※ 비용신청하고 자 하는 차수를 기준으로, 이보다 바로 앞선 차수의 실시 여부에 따라 순차진행 판단

◆ **항원·항체 검사 시 비권장 검사법으로 검사를 진행했을 경우**

- 정량(titer)없이 정성검사만 진행했을 경우(권장검사법: 정량검사)
 - ※ 제8장 예방접종 및 항원·항체 검사 실시기준 참조

(5) 3개월 이상 7자리 인적으로 남아있는 건의 비용상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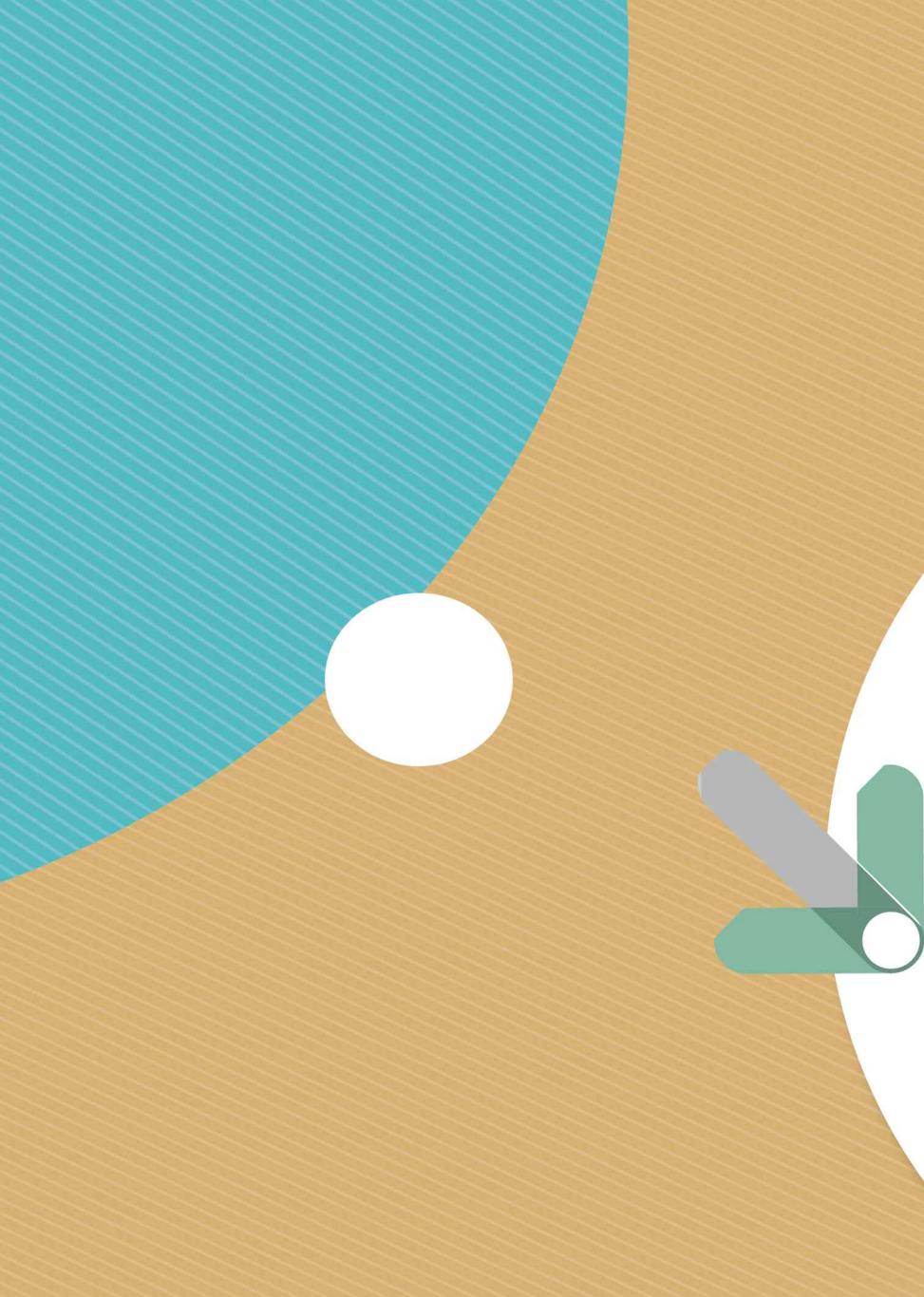
- ◆ 출생 후 1개월까지는 7자리 인적일 경우라도 접종 등록 가능
- ◆ 출생 후 1개월까지는 7자리 인적의 접종에 대한 비용신청가능(비용지급보류)
- ◆ 출생 1개월 후에는 7자리 인적인 경우 접종등록 및 비용신청 불가능
(주민번호나 관리번호로 전환 후 접종력 등록 및 비용신청 가능)
- ◆ 7자리 인적으로 등록된 접종력이 3개월이 지났는데도 비용이 지급되지 않고 보류된 건(관리번호나, 주민번호전환이 불가능한 경우)
 - ▶ 사망, 이민, 행방불명과 같이 더 이상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의 미지급 접종건(7자리 인적)에 대한 비용지급
 - : 년 2회 대상자 추적관리를 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자 확인 후 비용지급 가능하도록 조치(사망, 이민, 행방불명, 기타 더 이상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대상자 취합-대상자 주소지관할 보건소)
 - ※ 7자리 신생아 인적정보는 출생신고 기한인 한 달 동안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유센터'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발급 여부를 지속 확인

(6) 외국인 자녀, 미등록 외국인 및 시설 아동에 대한 비용상환

- ◆ (외국인 자녀) 의료기관에서 접종내역 등록 시 인적사항 등록 내역에 피접종자 구분은 '외국인'으로,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에 '외국인 등록번호' 등록하여 신청
- ◆ (미등록 외국인) 의료기관에서 접종내역 등록 시 인적사항 등록 내역에 보건소에서 '관리번호'를 부여 받아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에 등록번호를 등록하여 신청
- ◆ (시설 아동) 의료기관에서 접종내역 등록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에 '시설아동 관리번호' 등록하여 신청

6. 사업 시행 현황 모니터링

- 참여 의료기관 및 비용청구 현황 모니터링 지속,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등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실적/통계 메뉴에서 대상자 등록현황, 접종비 지급 현황, 검사 지급현황 확인
- 실적은 의료기관에서 비용청구한 날짜를 기준으로 집계됨
 - ※ 실적조회 방법(부록 참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 예방접종관리 →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 → 실적/통계 → 실적관리(보건소) 메뉴에서 현황 조회



08

PART

예방접종 및
항원·항체 검사
실시기준



1. 예방처치 실시기준

1.1 예방처치 일정

- (1) 접종 일정 : 생후 0, 1, 6개월, 첫 접종은 출생 후 12시간 이내
- (2) 최소 접종 간격
 - 2차접종 : 1차 예방접종 후 4주 이후
 - 3차접종 : 2차 예방접종 후 8주 이후, 1차 예방접종 최소 16주 이후
- (3) 접종 용량 : 0.5 mL(HBsAg 10ug)
- (4) 접종 부위 : 영아는 대퇴 전·외측부

접종 및 검사		접종 및 검사 시기	접종부위	최소연령	최소간격
기초 접종	1차 접종 (백신,면역글로불린)	출생 직후(12시간 이내)	대퇴 전·외측		
	2차 접종(백신)	생후 1개월	대퇴 전·외측	생후 4주	1차 접종 후 4주
	3차 접종(백신)	생후 6개월	대퇴 전·외측	생후 24주	2차 접종 후 8주 1차 접종 후 16주
1차 항원·항체검사		생후 9개월 이상 ~ 15개월 미만	대퇴 전·외측	생후 9개월	3차 접종 후 4주

※ 1차 항원·항체 검사결과에 따라 추가 접종 및 검사 진행여부 결정(그림 7 참조)

1.2 미숙아(출생시 체중 2kg 미만인 동시에 37주 미만)에 대한 출생 후 예방접종

- 체중 2kg 미만인 동시에 37주 미만으로 출생한 미숙아는 출생 직후 1차접종을 하고, 1차접종 1개월 이후에 미숙아 재접종, 미숙아접종 1개월 후에 2차접종, 2차접종 4개월 후에 3차접종으로 표준접종일정(생후 0-1-2-6개월)은 총 4회
- 예방접종 등록화면의 등록 순서: 1차 → 미숙아 → 2차 → 3차접종

1.3 재접종

: 1차 항원·항체 검사결과에 따라 추가 접종 및 검사 진행여부 결정(그림 7 참조)

(1) B형간염 1차 재접종

- 대상 : B형간염 1차 항원·항체 검사결과 항체미형성자[HBsAg(-), anti-HBs Ab(-)]
- 방법 : 1차 항원·항체 검사일로부터 7일 이내 1차 재접종

(2) B형간염 2·3차 재접종

- 대상 : B형간염 2차 항원·항체 검사결과 항체미형성자[HBsAg(-), anti-HBs Ab(-)]
- 방법 : 2차 항원·항체 검사일로부터 7일 이내(1차 재접종일로부터 1개월 후) 2차 재접종하고, 2차 재접종일로부터 5개월 이후 3차 재접종 실시

(3) 최소접종간격

- 2차 재접종 : 1차 예방접종 후 최소 4주 이후
- 3차 재접종 : 2차 예방접종 후 최소 8주 이후, 1차 예방접종 후 최소 16주 이후

2. 항원·항체검사 실시기준

(1) 검사 일정

- 적정검사 시기는 생후 9개월 이상~15개월 미만이며, 접종이 지연된 경우 3차 접종 (생후 6개월) 후 최소 4주 간격을 두고 검사
 - ※ 정성검사(titer)로 시행한 경우 비용지급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EIA, ECL, CIA 등의 정량검사법으로 실시

(2) 검사결과 표기 방법

- 항원·항체 검사결과 모두 정성결과(양, 음)와 정량결과(항원·항체가/단위)를 함께 입력

(3) 항체가의 정량 검사결과 판독 기준

- 예방 가능한 ‘항체가’는 10 mIU/mL 이상
- 항원 음성이고 항체가 음성(항체가가 10 mIU/mL 미만)일 경우 재접종 필요
 - ※ 주의 : 시험 기기별로 참조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참조 기준에 준하여 판독

(4) 권장검사의 종류(비용지원 검사법)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면항원 및 항체 검사방법 중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은 검사를 권장

권 장 검 사 방 법(항체가 확인 가능)	인정
효소면역검사법 (Enzyme immunoassay : EIA) 미세입자효소면역검사법(microparticle enzyme immunoassay : MEIA) 형광효소면역측정법 (fluorescent enzyme immunoassay : FEIA) 효소면역측정법(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 ELISA)	○
화학발광 미세입자 면역측정법 (Chemiluminescent Microparticle immunoassay : CIA,CLA,CLIA,)	○
전기화학발광 면역측정법 (Electrochemiluminescence immunoassay : ECL)	○
* 비권장검사(비용지원 불가): 항체가의 측정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검사 예	
방사면역측정법 (Radioimmunoassay : RIA)	X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 (Immunochromatography assay : ICA)	X
수동혈구응집법 (Passive hemagglutination : PHA)	X

※ 자문기관 :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별첨서식

PART



주요서식

【별첨 2】 사업참여 확인증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 확인증

(보건소 제출용)

기 관 정 보			
기관명		요양기관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소재지)			
요양기관종별		표시과목	
면허종별		면허번호	
<p>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p> <p>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의 예방접종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한다.</p> <p>③ 위탁 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은 사업 실시 이전에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p> <p>④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 예방접종력을 조회하고 접종기록을 등록하며 비용상환을 신청한다.</p> <p>※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에 따라 예방접종기록을 등록한다.</p> <p>⑤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안내’ 지침을 준수한다.</p> <p>⑥ 개인의 과거접종력 조회와 정보 활용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p>			
사업참여범위	B형간염 양성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및 항원항체 검사 실시		
첨 부 서 류	1. 비용상환용 통장사본1부, 교육이수증 1부, 사전 자율점검표 1부. ※ NIP참여의료기관이면서 통장을 공용할 경우 사전자율점검표에 체크하여 제출		
		사업참여일	20 . . .
		대표자	(서명)

별첨서식 주요서식

【별첨 3】 의료기관 교육 수료증

질병관리본부[on]-16-PHP-00000001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교육 수료증

소 속 :

직 군 : (면허번호:)

성 명 :

소재지 :

귀하는 질병관리본부 온라인 교육시스템에서 기본교육과정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2016)」을 수료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질병관리본부장 직인생략

【별첨 4】 (의료기관용) 의료기관 사전 자율점검표

사 전 자 율 점 검 표 (보건소 제출용)

※ 의료기관 대표자께서 점검하시고 점검결과 란에 직접 기재하여 주십시오.

등록사항			
기관명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종별		전문과목 (표시과목)	
주소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F A X 번호		이메일 주소	
예방접종업무 담당인력	총인원: 명	<input type="checkbox"/> 의사: 명 <input type="checkbox"/> 간호사: 명 <input type="checkbox"/> 행정요원: 명	<input type="checkbox"/> 간호조무사: 명 <input type="checkbox"/> 전산요원: 명
일반사항 및 접종관련 점검사항			점검결과
			예
			아니오
1. 일반사항			
1)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접종등록이 가능한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다.			
2) 사업대상자 확인 시 본 사업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하고 있다			
3)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리플렛((의료기관용, 보호자용)을 충분히 보유하고 필요시 배포하고 있다			
4) 2016년도 사업 변경사항 및 추가사항을 숙지하고 있다			
2.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에 대한 이해도			
1) HBsAg양성 산모에게서 출생한 신생아가 사업대상인 것을 알고 있다			
2) 산모의 피검사결과나 대상자의 항원·항체검사결과는 대상자의 주소지관할 보건소로 전송(팩스)해야 함을 알고 있다			
3) 사업 참여 전 보호자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구득이 있어야 함을 알고 있다			
4) 면역획득 여부 확인을 위한 항원·항체 검사는 꼭 진행되어야 할 단계임을 알고 있다			
3. 접종 전			
1) 대상자를 정확히 확인하고, 등록화면을 통해 다음 실시해야 할 차수를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함을 알고 있다(미숙아 차수, 2차 접종 차수 등)			
2) 보호자가 작성한 예진표를 확인하면서 접종대상자를 예진하고 진찰소견 등을 기록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3) 보호자에게 예방접종 전후의 주의사항 및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4. 접종실시 - NIP 참여 의료기관일 경우 일괄 체크 ()			
1) 준비된 백신의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2) 백신을 접종하기 전 손을 비누로 씻거나 소독제로 소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3) 정확한 접종부위, 접종용량, 접종방법에 따라 접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4) 주사 후 마른 솜이나 거즈로 접종부위를 가볍게 수 초간 눌러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			
5. 접종 후 - NIP 참여 의료기관일 경우 일괄 체크 ()			
1) 보호자에게 접종 후 20~30분 정도 접종의료기관에 머물도록 하여 이상반응을 관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2) 보호자에게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호자 신고제도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6. 기록보존			
1) 예진표 및 개인정보동의서를 정해진 기간(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2) 예방접종 후 접종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접종내역을 등록정보시스템의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에 입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7. 비용상환			
1) 주산기대상자의 예방조치 전산등록이 일반 NIP대상으로 입력 됐을 경우, 주산기 비용청구를 위해서는 삭제 후 주산기로 다시 입력해야 함을 알고 있다			
백신관련점검사항 - NIP 참여 의료기관일 경우 일괄 체크 ()		점검결과	
		예	아니오
8. 백신관리			
1) 백신관리 전담자 및 대체요원을 지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2) 백신 입고 시 생물학적제제 출하증명서를 수령하고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3) 성애가 끼지 않는 전용 냉장고에 백신만 보관(음식물과 함께 보관하면 안됨)하며, 「백신전용 냉장고」 및 「백신의 보관관리」 표시를 냉장고 외부의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4) 냉동고의 문이 따로 있는 냉장고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5) 백신은 동결되지 않도록 보관온도를 2~8℃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6) 냉장고 내부에 온도계를 부착하여 1일 2회 이상 온도를 점검, 기록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7)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은 관리방침에 따라 폐기처리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상기 자율점검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20 . . . 위 점검자(대표자) (서명)			

【별첨 5】 (보건소용) 의료기관 방문 점검표

방 문 점 검 표

등록사항						
기관명		기관전화번호				
요양기관번호		사업참여일				
전문과목 (원장)		전문과목 (기관표시)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매우 잘함	잘함	미비 함	매우 미비함	
1. 일반사항						
1)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다.						
2) 예방접종 예진표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3)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리플렛(의료기관용, 보호자용)을 충분히 보유하고, 사업 홍보를 위해 활용하고 있다						
4) 감염으로 인한사업종료 대상(보호자)자에게 감염관리 안내문을 배포하여 추가 감염을 예방하고,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안내해야 함을 알고 있다						
2.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이해도						
1) HBsAg양성 산모에게서 출생한 신생아가 사업대상임을 알고 보호자에게 충분한 사업설명 해야 함을 알고 있다						
2) 산모의 피검사결과나 대상자의 항원 항체검사결과는 주소지관할 보건소로 보내는 것을 알고 있다						
3) 기초접종 완료 후 항원항체 검사 실시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3. 예방접종실시 관련						
1) 대상자를 정확히 확인하고, 다음차수 접종을 위해 등록화면의 과거 접종력을 미리 확인한 후 접종해야 함을 알고 있다						
2) 보호자에게 충분한 사업설명 후 참여시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구득을 해야 함을 알고 있다						
3) 예방접종 전후의 주의사항 및 이상반응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4)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5) 보호자에게 기초접종 완료 후 1차 항원항체 검사의 중요성을 사전에 안내 강조하여 홍보부족으로 인한 검사미실시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알고 있다						

별첨서식 주요서식

4. 사업설명 및 개인정보동의서 구득						
1)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을 충분히 안내하고 개인정보동의서를 구득해야함을 알고 있다						
5. 기록보존						
1)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2) 예방접종의 기록을 '예방접종등록시스템'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에 입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백신관련점검사항 - NIP 참여의료기관일 경우 일괄체크		점검결과				비고
		매우 잘함	잘함	미비 함	매우 미비함	
1) 백신관리 전담자 및 대체요원이 지정 되어있다.						
2) 백신 입고 시 생물학적제제 출하증명서를 수령하고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3) 백신전용 냉장고는 냉동고의 문이 따로 있는 냉장고를 사용하고 있다.						
4) 성애가 끼지 않는 전용 냉장고에 백신만 보관하고 있다(음식물 보관여부 확인).						
5) 「백신전용 냉장고», 「백신의 보관관리」 표시를 냉장고 외부의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부착하고 있다.						
6) 백신 전용 냉장고는 백신보관 온도 2~8℃를 유지하고 있다						
7) 냉장고 내부 안쪽에 온도계가 부착되어 있다.						
8) 1일 2회 이상 백신전용 냉장고의 온도를 점검하고 기록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9) 유효기간이 가까운 백신을 냉장고 앞쪽에 배치하고 있다.						
10)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이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11)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은 관리방침에 따라 폐기 처리한다(폐기 대장 등).						
종합의견						
점검일 20 . . .						
점검자 (서명)						

[별첨 6] 감염자 관리안내문(보호자 배포용)

B형간염

- ✓ B형간염은 주로 혈액을 통해 전파됩니다.
- ✓ B형간염은 어린시기에 감염 될수록 만성화의 가능성이 높아 신생아기에 감염된 경우 90%가 만성간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 B형간염에 감염되었을 경우 다양한 경과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와 관리방법을 선택 하기위해 정기적으로 전문의와 상담하여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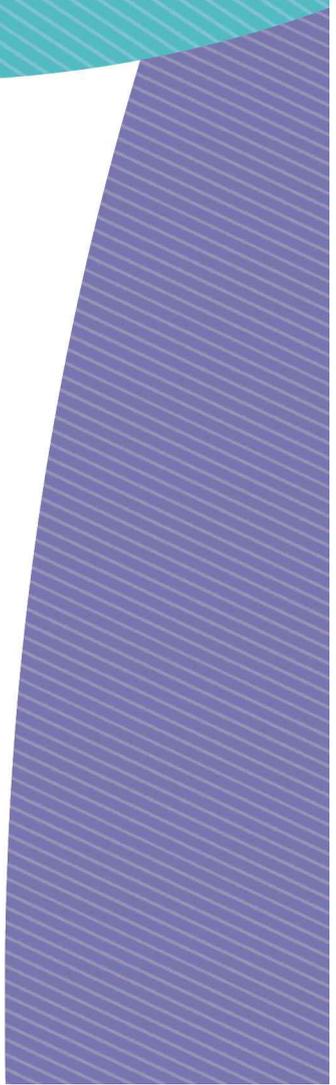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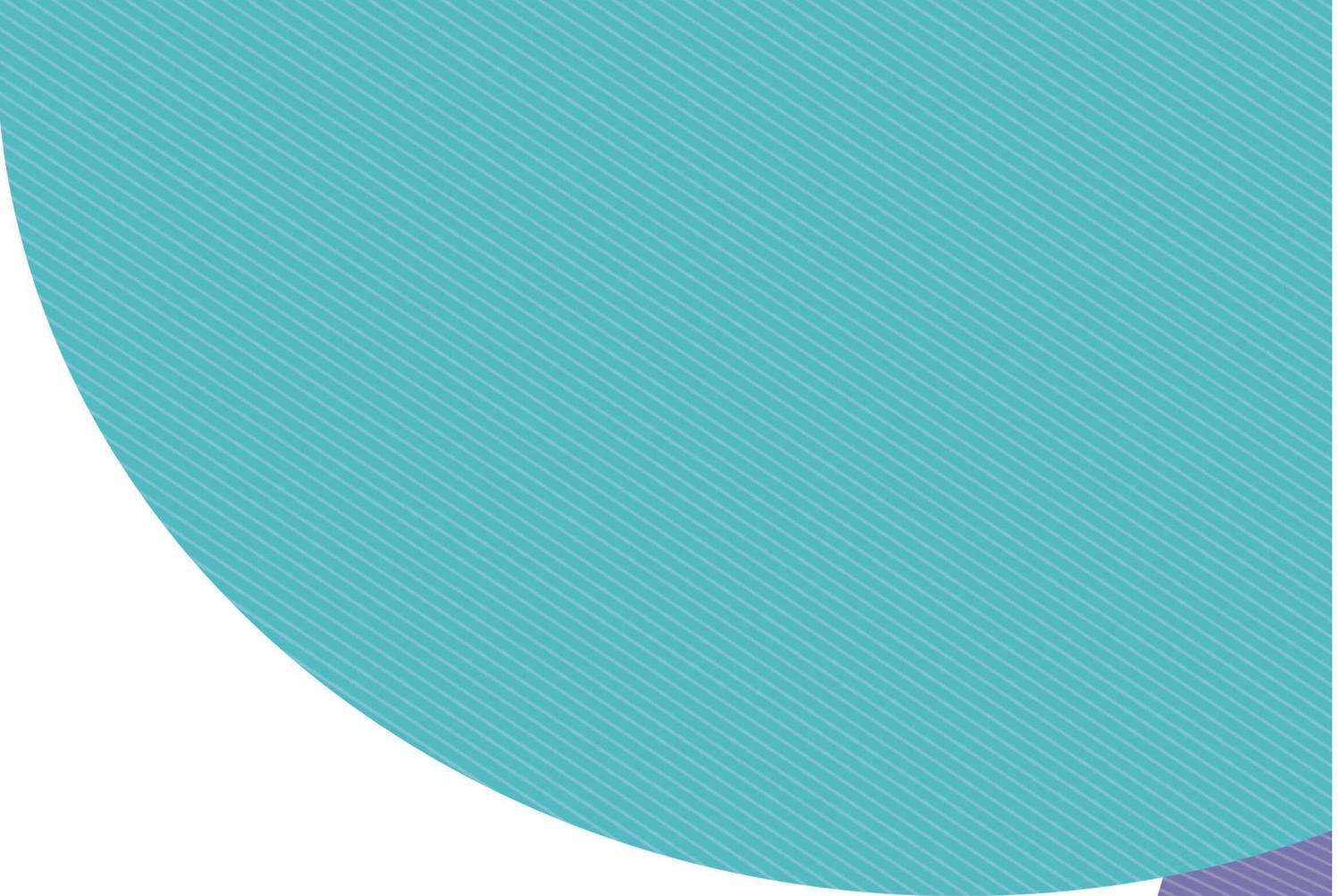
B형간염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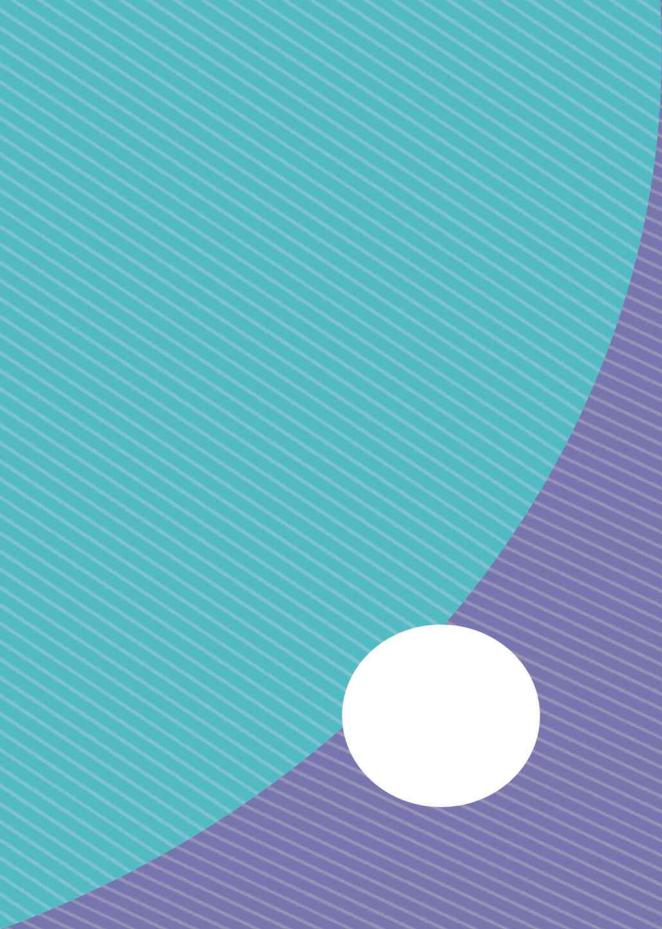
B형간염은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B형간염은 B형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성 간 질환으로, 출산할 때 만성B형간염 엄마에게서 아기로의 전염이 흔합니다. 대부분 출산 시 예방 처치로 면역력이 생기지만 적절한 처치를 받은 경우에도 100명 중 3명 정도는 출생 시 B형간염에 걸리게 됩니다. 만성 B형간염으로 진행이 될 경우 수십 년 후에 4명 중 1명은 간경변이나 간암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 **B형간염은 어떻게 전파되나요?**
B형간염은 주로 혈액이나 체액으로 전파됩니다. 대표적으로 출산 시에 엄마로부터 아기에게 전파되거나, 면역력이 없는 사람이 B형간염인 사람과 성 접촉을 하거나 면도기, 주사기 등을 함께 사용할 때 전파될 수 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거나 악수, 포옹, 가벼운 입맞춤, 기침, 대화, 수영과 같은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타인에게 전염되지 않습니다.
- ▶ **아이가 B형간염에 걸린 경우 어떻게 관리하면 되나요?**
B형간염 바이러스는 간 손상을 일으키고, 이것이 진행되면 간경변, 간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형간염으로 확인되면 전문의에게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적절한 관리를 받아 간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B형간염 아이와 매일 긴밀한 접촉을 하는 가족이 B형간염에 대한 면역력이 없다면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 ▶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수 있나요?**
B형간염은 함께 밥을 먹거나 손을 잡는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조절되지 않는 물어뜯는 버릇이 있거나 전신 가려움증으로 피가 자주 날 경우, 출혈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의사선생님과 상의 후 어린이집(유치원)에 가도록 합니다. 또, B형간염이 있음을 담당선생님에게도 미리 알려서 상처가 생긴 경우에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 **아이가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나요?**
병원에 갔을 때 의사선생님에게 아이의 B형간염을 미리 알림으로써, 주사를 맞거나 혈액을 채취할 때 아이의 혈액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게 적절한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약 처방을 받을 때도 약물의 오남용을 막도록 합니다.
- ▶ **다른 아이들과 공동생활을 할 때 지켜야 할 생활수칙이 있나요?**
일상적인 접촉을 하는 집단생활을 통해서 전염의 위험이 없지만, 축구, 복싱 등 상처가 생겨 피가 날 수 있는 운동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아이가 상처를 함부로 만지지 않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양치도구나, 귀걸이와 같은 도구도 다른 아이들과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부록

PART

1. 자주 묻는 질문
2. 등록 및 시스템
사용안내
3. 시·군·구 담당자
연락처



대상자 기준

Q 1.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적용대상은 누구인가요?

A 1. B형간염 표면항원(HBsAg)양성 및 e항원(HBeAg)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2003. 1. 1.이후 영유아의 경우 대상자가 되며, 면역글로불린 및 B형간염 기초3회 예방접종, 항원·항체 검사, 재접종 및 재검사에 대한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Q 2.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2. 산전진찰기관 또는 분만기관에서 B형간염 표면항원(HBsAg)양성 및 e항원(HBeAg)양성 산모에게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 후, 산모가 사업 참여를 거부하거나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예방접종사업(NIP)으로 비용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B형간염 기초 예방접종 비용지원은 가능하나, 면역글로불린 투여, 항원·항체 검사, 추가 접종 및 검사는 자비 부담하셔야 됩니다.

Q 3.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참여가 가능한가요?

A 3.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반드시 산모 및 대리인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명이 필요합니다.
 ※ 예방처치를 완료하지 않은 기존 사업대상자(쿠폰 사용자)의 경우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전산등록방식으로 전환, 관리합니다. 단, 특별한 개인사정으로 인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방식(쿠폰)대로 처리합니다.
 ※ 신규 사업대상자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분만기관에서 보관
 ※ 기존 사업대상자 : 전산방식으로 전환하여 등록된 의료기관에서 5년간 개인정보동의서 보관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로 제출

Q 4. 기존 사업대상자의 쿠폰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접수 시 어떻게 하나요?

A 4. (의료기관) 산모에게 변경된 사업 방식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 후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구득하여 쿠폰과 함께 피접종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 Fax로 제출합니다.
 (보건소) 쿠폰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접수 시 <예방접종 등록관리 정보시스템> 에서

기존 사업 대상자를 조회하여 승인한 후 예방접종 내역을 등록하면, 이후에는 '14년 신규 사업대상자와 동일하게 전산시스템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 기존 수첩(쿠폰) 사업대상자 승인방법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의 [예방접종관리] → [예방접종등록] → [예방접종 등록관리 정보시스템]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수첩(쿠폰) 대상자승인]에서 수첩번호, 산모 또는 아기 인적정보로 검색 후 승인할 대상자 체크한 후 '대상자 승인' 버튼 클릭하고, 접종 및 검사 쿠폰 내역은 예방접종등록표 또는 [수첩(쿠폰)대상자 쿠폰등록] 메뉴에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Q 5. 기존 사업대상자(쿠폰 사용자)가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쿠폰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5. 기존 사업대상자 중 개인정보제공 미동의자의 경우, 예방처치가 종료될 때까지 기존 수첩(쿠폰)사용이 가능하며 예방처치 내용은 기존 방식대로 보건소에서 등록하고 비용 지급처리 하게 됩니다.

※ 쿠폰 처리 방법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의 [예방접종관리] → [예방접종등록] → [예방접종 등록관리 정보시스템]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수첩(쿠폰) 대상자 쿠폰등록]에서 쿠폰 등록 후 [비용청구관리-비용청구 지급]에서 지급 처리하시면 됩니다.

Q 6. 대상자가 출생 후 뒤늦게 참여를 원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6. 대부분의 경우 1차 접종 분만기관에서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참여를 원하는 경우입니다. 1~3차 접종 내역이 국가예방접종사업(NIP)로 입력된 경우 보건소에서는 B형간염 사업 대상자 체크박스에 체크 후 산모 검사결과지 확인 후 등록하면 전산방식으로 전환됩니다.

※ NIP대상자를 주산기대상자로 전환 등록방법(보건소): <예방접종등록관리정보시스템>의 [예방접종등록]에서 인적정보 조회 후 대상자 체크박스에 체크 후 산모검사결과지 입력, 이후 등록차수부터는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으로 비용지원 가능

Q 7. B형 간염 항체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왔는데 항체가 낮아 재접종을 하려고 합니다. 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

A 7. B형간염 항체 검사결과 anti-HBs Ab \geq 10mIU/mL인 경우 양성으로 판단하며, 항원·항체 검사 결과 항원(-), 항체(+)로 나온 경우 재접종 및 재검사에 대한 예방접종 및 검사비용 지원이 불가합니다.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의 항원·항체 검사 결과에 따라 예방처치 등록 및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Q 8. 외국인 자녀도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A** 8. 외국인 자녀도 내국인 어린이와 동일하게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시 접종비용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접종내역에 대한 비용청구 신청 시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인적사항 등록 내역에 피접종자 구분은 '외국인'으로,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은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입력란은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Q 9.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 등) 자녀는 이번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A** 9. 미등록 외국인 자녀라도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접종(검사) 시 비용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인적사항 등록 시 보건소에서 해당 대상자에 대한 관리번호를 부여 받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Q 10. 시설아동도 예방접종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A** 10.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시 접종비용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접종내역 등록 시 피접종자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에 해당 시설아동 관리번호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Q 11. 출생신고 이전의(주민등록번호 발급 전)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지연되는 경우 비용지원이 가능한가요?

- A** 11. 법적출생신고기한(출생 후 1개월이내)이 지나도록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7자리 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경우 다음 접종을 등록 할 수 없고, 비용접수 및 지급이 불가합니다.
출생신고를 못한 경우 보건소로에서 관리번호를 발급받아야 비용지원이 가능합니다.

Q 12. 피접종자가 주민등록 말소된 경우에도 비용지원이 가능한가요?

- A** 12. 사업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관리번호 발급을 통해 비용지원이 가능합니다.
보건소에서 해당 대상자에 대한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접종내역 등록 및 비용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등록절차

Q 1. (의료기관)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 등록(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A** 1.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산모 B형간염 검사결과와 면역글로불린, B형간염 1차 예방접종 내역을 등록하면

대상자 신청이 완료됩니다.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의 [예방접종관리] → [예방접종등록] → <예방접종 등록관리 정보시스템> → [등록업무] → [예방접종등록]에서 피접종자 정보 입력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체크박스에 체크하고 산모 검사결과지 입력 후 면역글로블린, B형간염 1차 예방접종 내역 등록하면 완료

Q 2. [대상자승인]에서 체크박스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2. 행정안전부에서 인적정보(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또는 7자리 신생아번호일 경우 입니다. 전자의 경우 대략 등록일로부터 1~2일 정도 소요됩니다. 인적정보(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적용대상 의료기관

Q 1. 어느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접종비용 지원이 되나요?

A 1.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면 예방접종 비용 지원이 가능하며, 관할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를 통해 참여 의료기관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 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 > 의료기관 찾기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지정의료기관 검색가능

Q 2.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별도의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2. 2016년부터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참여 확인증, 의료기관 교육이수증, 비용상환용 통장사본, 사전점검표 제출하셔야 합니다.(NIP참여의료기관일 경우 통장공용 가능, 사전점검표의 NIP 일괄체크에 표시하여 제출)

참여 의료기관 관리

Q 1. (의료기관)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1.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에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 참여 의료기관으로 신청하고,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http://edu.cdc.go.kr>)에서 관련 교육이수 후 이수증과 사업참여 확인증, 비용상환용 통장사본, 사전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NIP참여 의료기관일 경우 동일통장 사용 가능하니 사전자율점검표에 체크하여

제출)

Q 2. (보건소)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에 참여하는 신규 의료기관의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2.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 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 예방접종관리 →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 → 행정업무 → 의료기관 관리] 메뉴에서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 체크박스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계좌는 국가예방접종사업과 다른 계좌개설이 권장하며 부득이 국가예방접종사업과 동일한 계좌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에 체크, 다른 계좌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장사본 확인 후 새로운 계좌로 등록하면 됩니다. 그 외에 사업참여 확인증, 의료기관 교육이수증, 사전 자율점검표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Q 3. (보건소) 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경우 교육여부를 확인해야 하나요?

A 3. 보호자에게 사업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제공 및 적절한 예방처치를 위해 반드시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의료기관 등록 전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건소 사업 설명회를 통한 교육 이수 시에는 보건소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는 교육이수 관리대장 등을 확인하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보건소 관리자 교육시스템 이용 메뉴얼 :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 공지사항 참조

※ 수료자 현황 확인 방법: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교육관리’ → ‘수료자관리’ 또는 ‘수료자관리(개인별)’에서 수료여부 확인 및 수료증 출력 가능

Q 4. (의료기관) 계약 체결 후 비용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4.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에 참여의료기관으로 신청 후 보건소에서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 여부 및 의료기관 정보를 입력하면 예방접종(또는 검사)건부터 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 법적출생신고기한(출생 후 1개월이내)이 지났는데도 7자리 인적정보로 남아있는 경우 비용신청은 가능하나 지급은 보류됩니다. 주민등록번호나 관리번호를 발급받은 후 대상자 주소지 관할보건소에서 비용지급이 가능합니다.

비용청구 기준

Q 1. 예방접종 및 검사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 A** 1. 2016년 지원 금액은 면역글로불린 투여 비용 27,900원, B형간염 예방접종 비용 22,100원, 항원·항체 검사 비용 54,500원으로 접종일·검사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Q** 2. (의료기관) 접종한 내용에 대한 비용지급은 어디에서 해주는 것인가요?
- A** 2. 비용 청구는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관할 보건소로 신청됩니다. 그러므로 <예방접종 등록관리 정보시스템>에 인적사항 등록 시 피접종자의 정확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Q** 3. 구체적인 비용청구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나요?(6장 비용청구의 비용지급기준참고)
- A** 3. 과거 접종력 확인이 가능한 상황에서 특별한 의학적 사유가 없이 중복접종을 한 경우와 최소 접종 연령 또는 최소 접종 간격보다 이른 접종을 한 경우, 순차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경우, 권장하는 검사법으로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비용지급이 불가합니다. 또, 최소 접종 연령 또는 최소 접종 간격보다 5일 이상 앞당겨 접종되었다면 무효로 간주하고 다시 접종해야 합니다.
- Q** 4. 과거 접종력을 확인할 수 없어서 예방접종을 하였습니다. 비용청구가 가능한가요?
- A** 4.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 및 예방접종 수첩 등을 통해 과거 접종력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용청구가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과거 접종력 확인이 가능한 상황에서 시행한 중복접종은 비용청구가 불가합니다.
- Q** 5. B형 간염 항체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왔는데 항체가 낮아 재접종을 하려고 합니다. 비용청구가 가능한가요?
- A** 5. B형간염 항체 검사결과 anti-HBs Ab \geq 10mIU/mL인 경우 양성으로 판단하며, 항원·항체 검사 결과 항원(-), 항체(+)로 나온 경우 재접종 및 재검사에 대한 예방접종 및 검사비용 지원이 불가합니다.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항원·항체 검사 결과에 따라 등록 및 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 Q** 6. 검사를 EIA, CIA, ECL의 정량검사방법으로 하지 않은 경우 지급이 가능한가요?
- A** 6. 사업에서 권장하는 항원·항체검사방법 이외에는 접종비 지급이 불가하므로 관할 의료기관에서 다른 검사방법으로 시행하지 않도록 교육 및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청구 접수 및 지급

- Q** 1. (의료기관, 보건소) 비용청구 접수 및 심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A** 1. 참여 의료기관이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종내역 등록 시 안전행정부를 통해 피접종자의 인적정보 확인 후 주민등록상 관할지역 보건소로 자동 비용청구가 됩니다. 해당 보건소에서는 비용청구건에 대하여 접수 → 비용청구 심사 → 비용 지급 됩니다.

※ 의료기관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의 [예방접종관리] → [인터넷 예방접종 등록]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비용청구관리] → [비용 청구 지급결과]에서 비용청구 접수, 심사, 지급된 내역을 확인

※ 보건소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의 [예방접종관리] → [인터넷 예방접종 등록]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비용청구관리] → [비용 청구 접수]에서 접수 후 → [비용청구심사]에서 심사 후 지급

단, 보건소에서 대상자 미승인 된 건은 비용청구 접수가 불가합니다.

Q 2. 예방접종 실시 후 비용청구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 A** 2.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시행 후 가급적 실시간으로 예방접종 기록을 등록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시간 조화를 통해 중복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사정상 당일 비용 청구를 하지 못했을 경우는, 접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청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Q 3. (의료기관) 비용청구 후 비용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A** 3. 보건소는 비용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비용지급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상환결정 건에 대하여 비용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월 2회 이상) 비용지급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의 [예방접종관리] → [인터넷 예방접종 등록]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비용청구관리] → [비용 청구 지급결과]에서 비용청구 접수, 심사, 지급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4. (보건소) 비용청구 심사는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 A** 4. 위탁 의료기관이 비용을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비용청구 심사를 완료 하여야 합니다.

Q 5. (보건소) 상환결정 건에 대한 비용은 언제까지 지급하나요?

- A** 5. 상환결정 건에 대하여 비용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월 2회 이상) 비용 지급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 [예방접종관리] → [인터넷 예방접종 등록]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비용청구관리] → [비용청구지급]에서 지급 내역을 확인한 후 '지급 완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기타

Q 1. [예방접종등록]화면에서 보라색 박스가 없는 기존사업대상자 구별방법

- A** 1. 보라색박스가 없으나 기존사업 대상자일 경우 예방접종 등록화면 왼쪽하단에 “B형 간염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문구” 옆 칸이 공란으로 표시됩니다.
(주산기 대상일 경우 해당문구 옆 칸에 “대상자일 경우 체크”라는 문구가 있고 체크박스 안에 체크표시가 들어있음, 체크박스 안에 체크표시가 없는 경우는 NIP대상임)

※ 기존 사업대상자 승인방법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의 [예방접종관리] → [예방접종 등록] → [예방접종 등록관리 정보시스템]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대상자 관리] → [수첩대상자승인]에서 ‘승인’하면 완료

Q 2. 접종일자, 검사일자, 접종자명, LOT번호 등 접종내역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 A** 2. [예방접종 등록관리 정보시스템]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B형간염 민원처리] 에서 접종내역 및 산모 검사결과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단,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만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또는 NIP사업 내역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등록팀으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항원항·체검사 결과를 입력하면 예방접종 등록화면에 보라색 박스가 없어지나요?

- A** 항원 양성자 입력시 사업에서 종료가 되며 예방접종 등록화면에 보라색 박스가 없어지고 기본 접종력(1차, 2차, 3차)만 확인이 되고 왼쪽하단부에 최종검사 일시가 표시됨
※ 사업종료 되는 경우 : 면역력 획득의 경우, 감염의 경우, 항원·항체 검사를 3회까지 실시하였으나 이중양성인 경우



1. 등록 및 시스템 운영(의료기관 이용안내)

1.1 대상자 등록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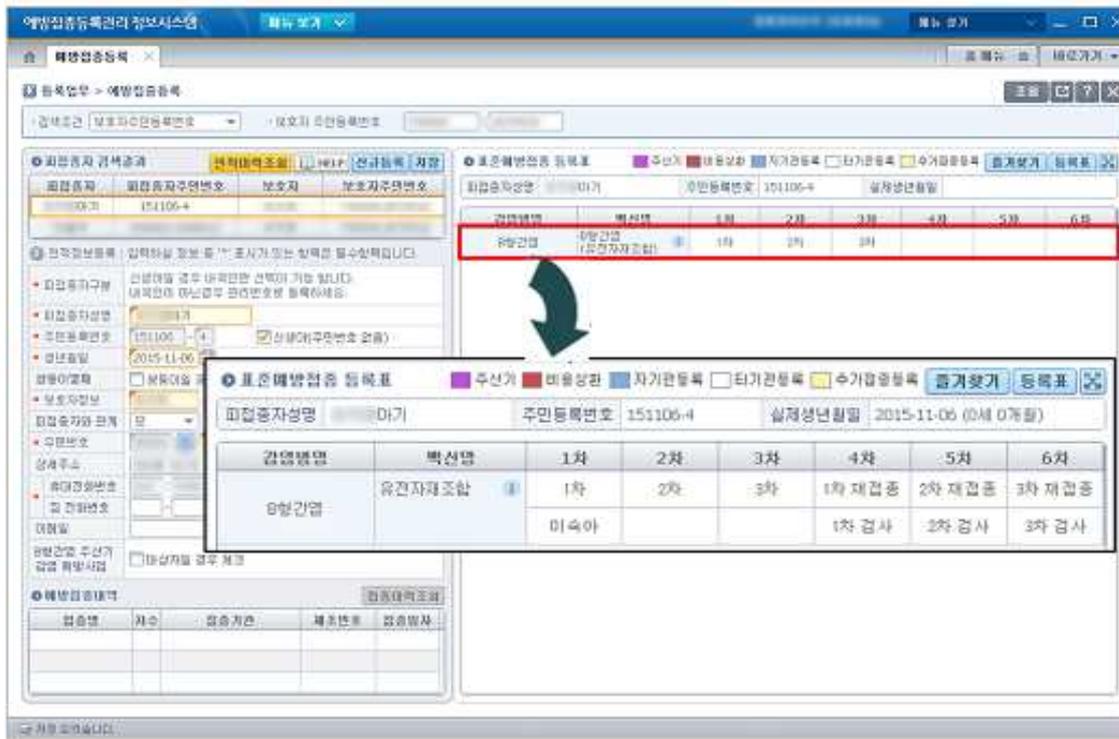
1. 산모 검사결과지 입력

- ① 로그인 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에서 [예방접종관리] → [예방접종 등록]을 클릭합니다.
- ② 기존의 피접종자 인적등록과 동일하게 입력하고,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일 경우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체크박스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 ③ 산모검사 결과지 입력 창이 나오면 검사기관명, 검사기관 전화번호, 진료과, 진료의사, 산모성명, 산모주민번호, 검사일자, 검사항목,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구독 여부 등을 모두 입력합니다.

* 검사항목에서 HBsAg 또는 HBeAg가 양성인 경우에만 대상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림 1. 대상자 등록신청(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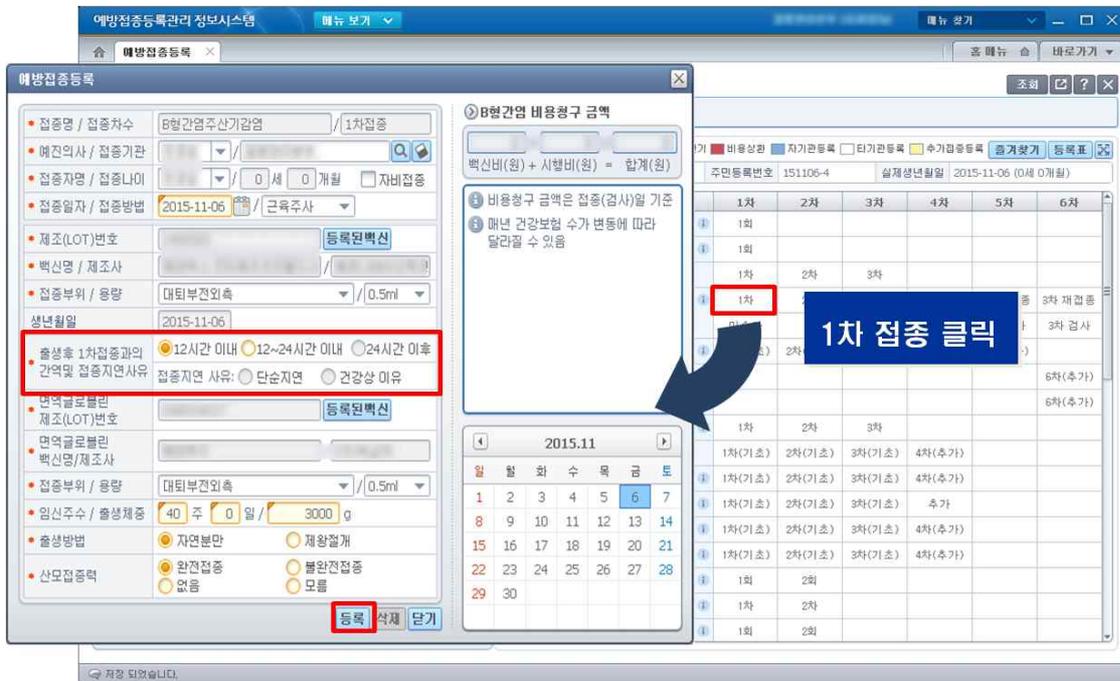
- ③ 산모검사 결과지를 입력하고 인적정보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우측 예방접종 등록표가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스케줄에 맞게 자동 변경됩니다.



<그림 2. 대상자 등록신청(2)>

2. 면역글로불린, B형간염 1차 예방접종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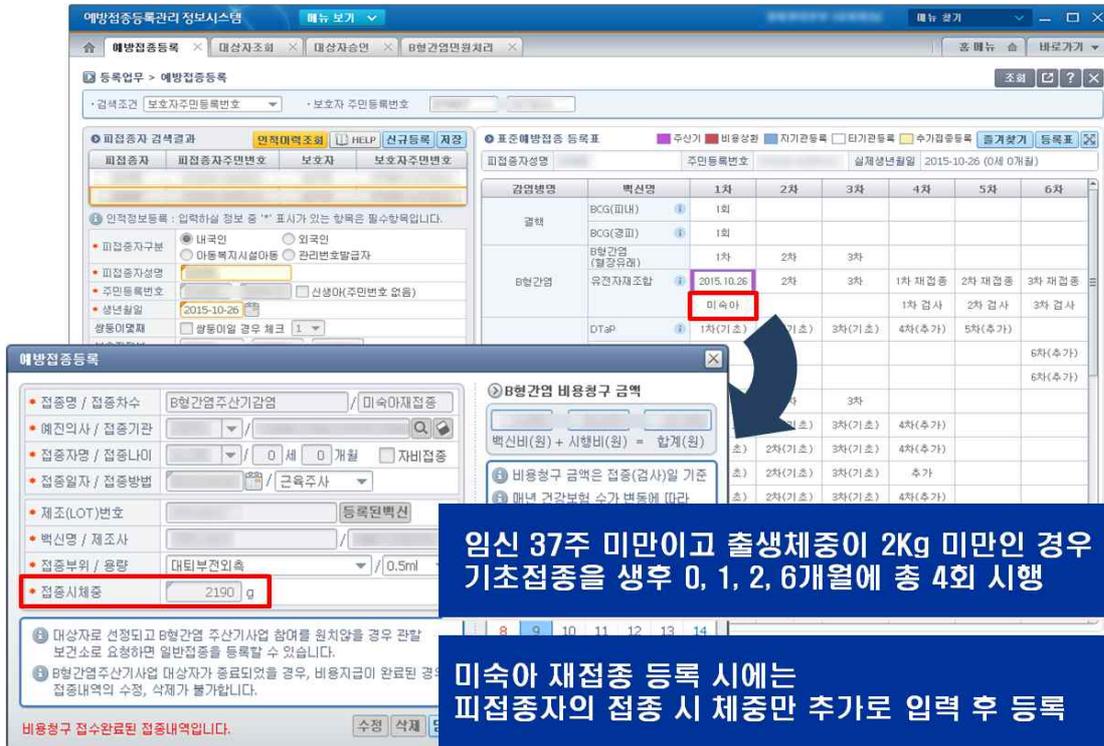
- ① 표준예방접종 등록표에서 B형간염 유전자재조합의 '1차 접종'을 클릭합니다.
- ②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 접종내역 항목을 모두 입력합니다.
 - 기본적인 예방접종 정보 외에 접종시간, 면역글로불린, 임신주수, 출생체중, 출생방법, 산모 예방접종력을 입력합니다.
- ③ 산모검사결과지와 면역글로불린, B형간염 1차 예방접종내역까지 모두 입력해야 대상자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림 3. 대상자 등록신청(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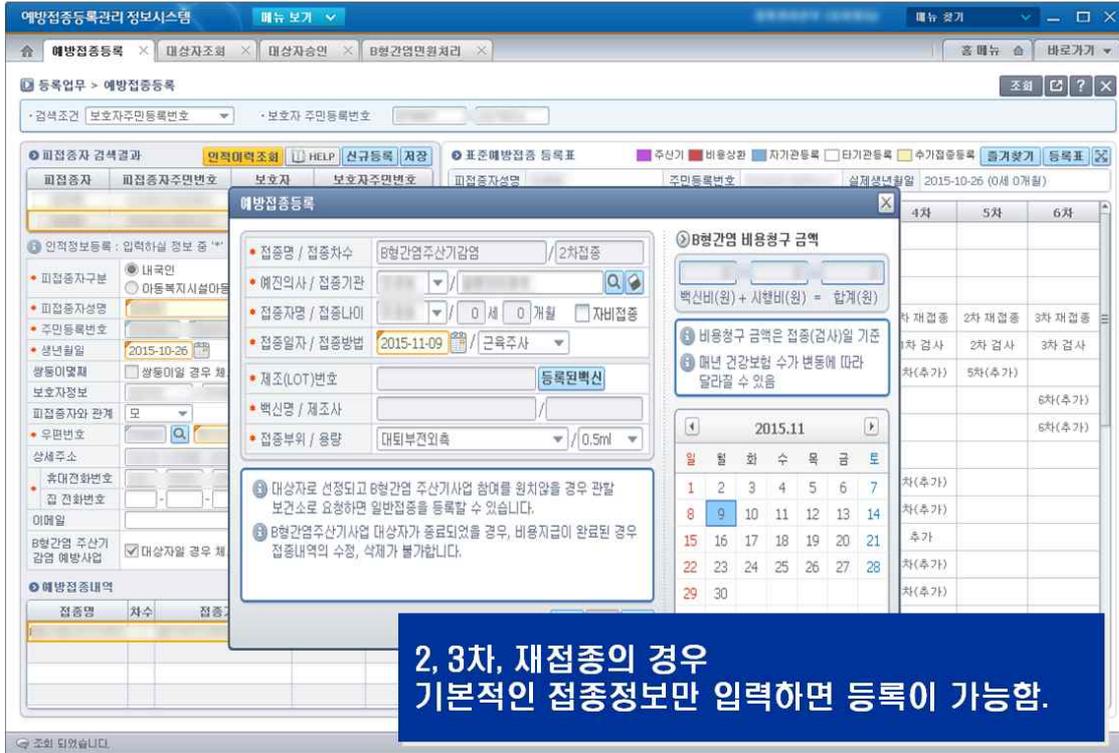
3. B형간염 미숙아 및 2·3차 접종 내역등록

- ① 표준예방접종 등록표에서 B형간염 유전자재조합의 ‘미숙아 또는 2·3차 재접종’을 클릭합니다.
- ②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 접종내역 항목을 모두 입력합니다.
 - 미숙아 재접종의 경우 피접종자의 ‘접종시 체중’ 항목을 추가로 입력합니다.



<그림 4. 미숙아 접종 내역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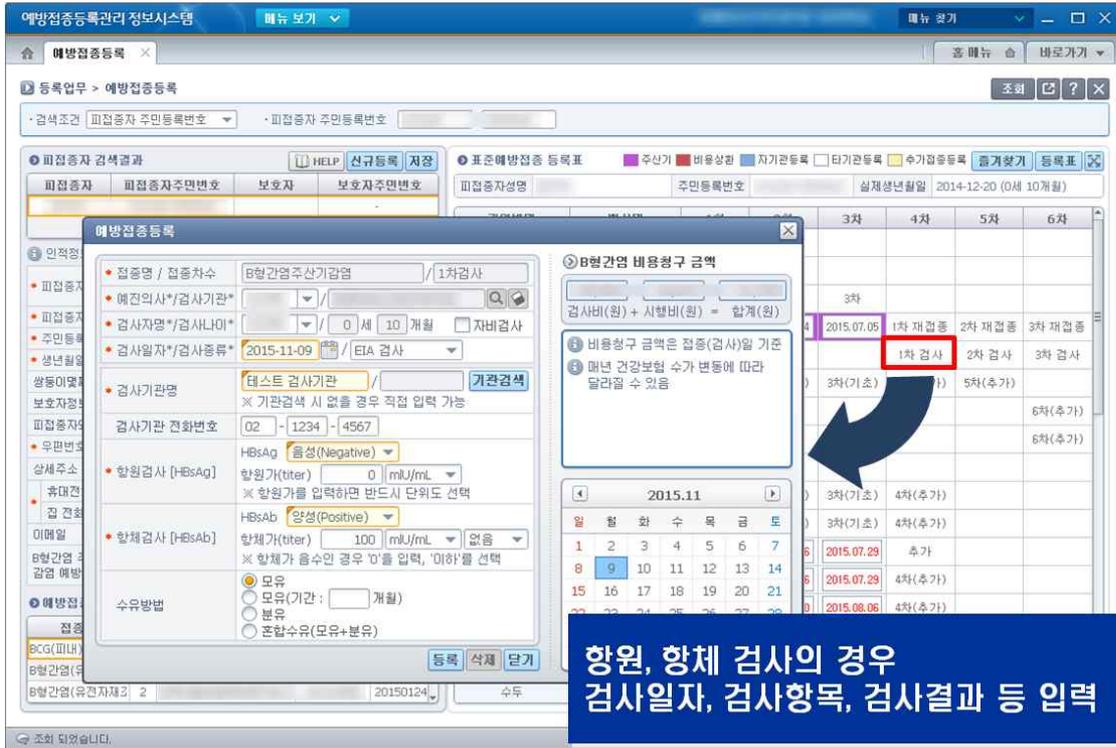
- ③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 접종내역 항목을 모두 입력합니다.
 - 2·3차 접종일 경우 기초 예방접종 입력 항목과 동일합니다.



<그림 5. 2·3차 접종내역 등록>

4. 항원·항체 검사 등록

- ① 표준예방접종 등록표에서 B형간염 유전자재조합의 차수별 검사를 클릭합니다.
- ②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 접종내역 항목을 모두 입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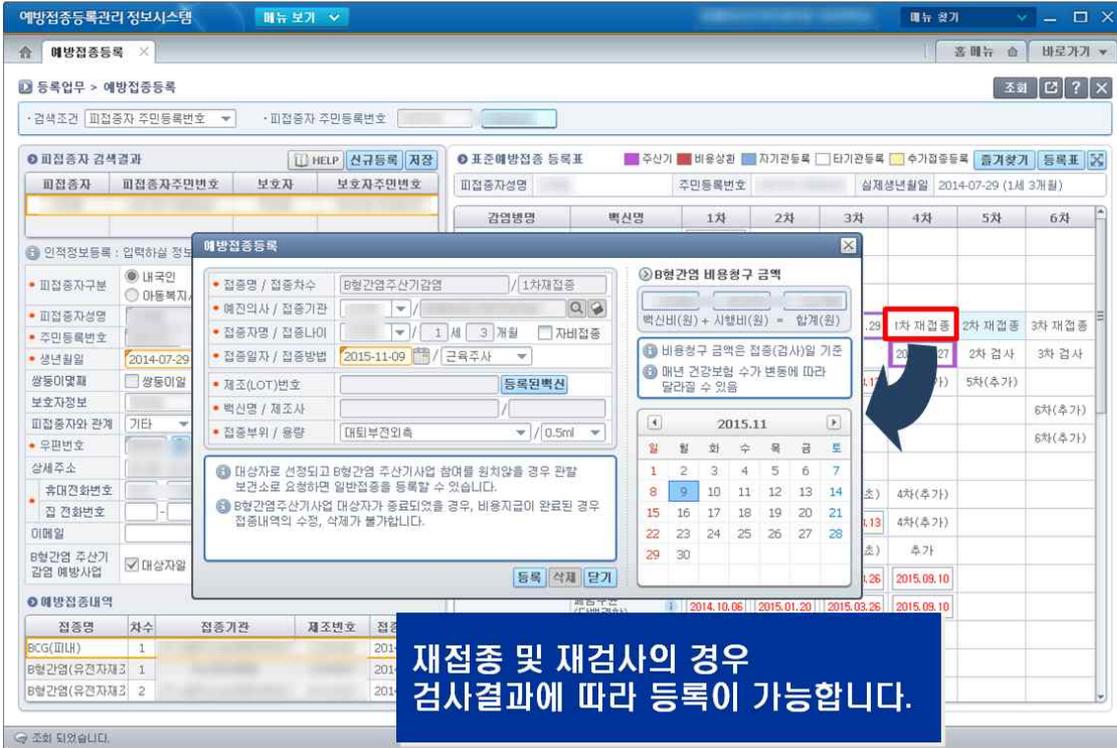


<그림 6. 항원·항체 검사 등록>

부 록

5. 재접종·재검사 등록

- ① 표준예방접종 등록표에서 B형간염 유전자재조합의 차수별 재접종을 클릭합니다.
- ②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 접종내역 항목을 모두 입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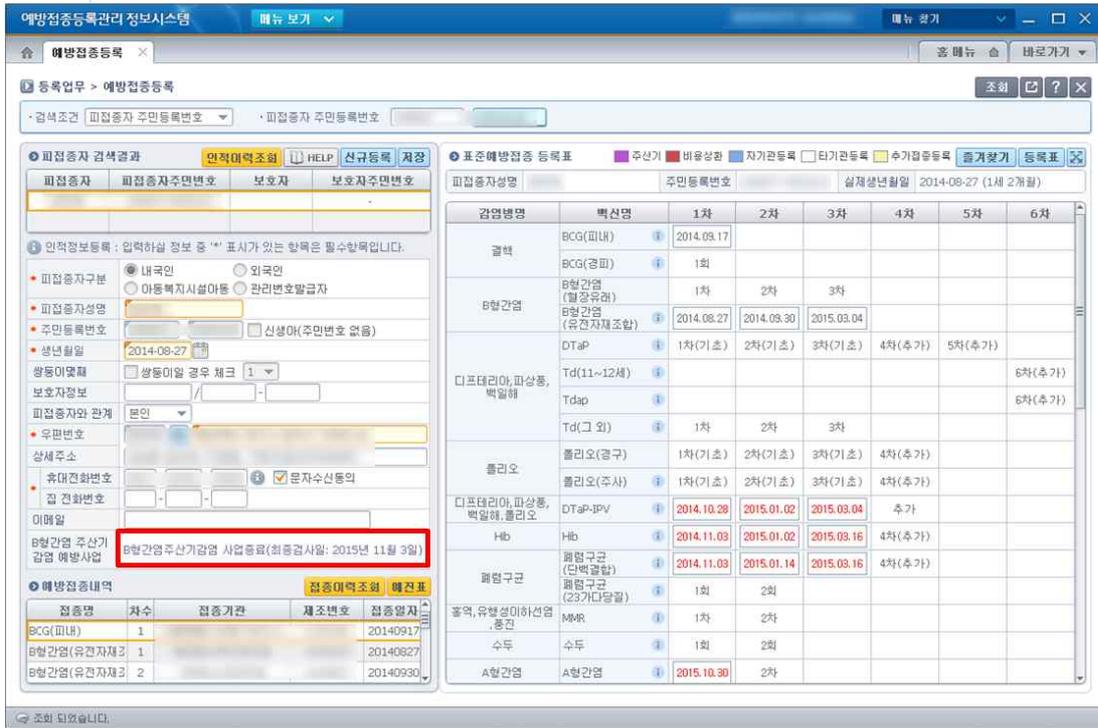


<그림 7. 재접종·재검사 등록>

6. 등록 시 기타화면

6.1. 대상자 사업 종료 시

- ① 예방접종 등록화면에 차수별로 표시 되어 있던 보라색 박스가 없어집니다.
- ② 예방접종 등록화면 왼쪽 하단에 최종검사일이 표시됩니다.



<그림 9. 기타 화면(2)>

부
록

6.2. 미승인된 대상자

① 보건소에서 대상자 미승인 상태인 경우 2차 예방접종 등록이 불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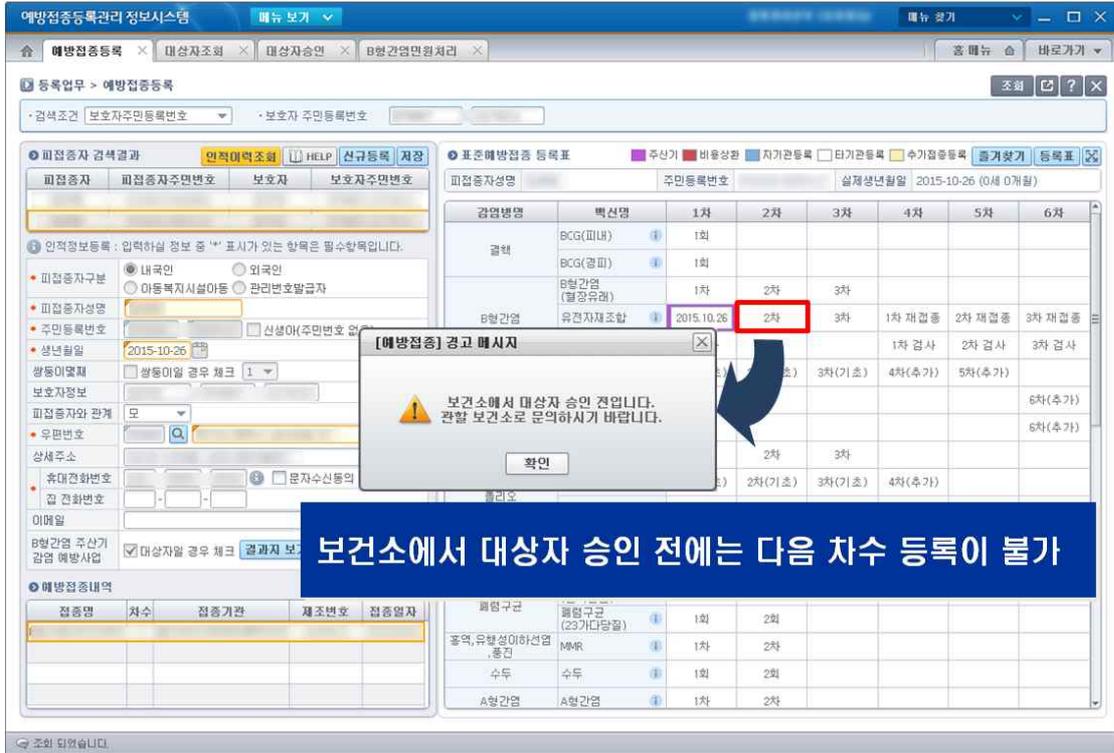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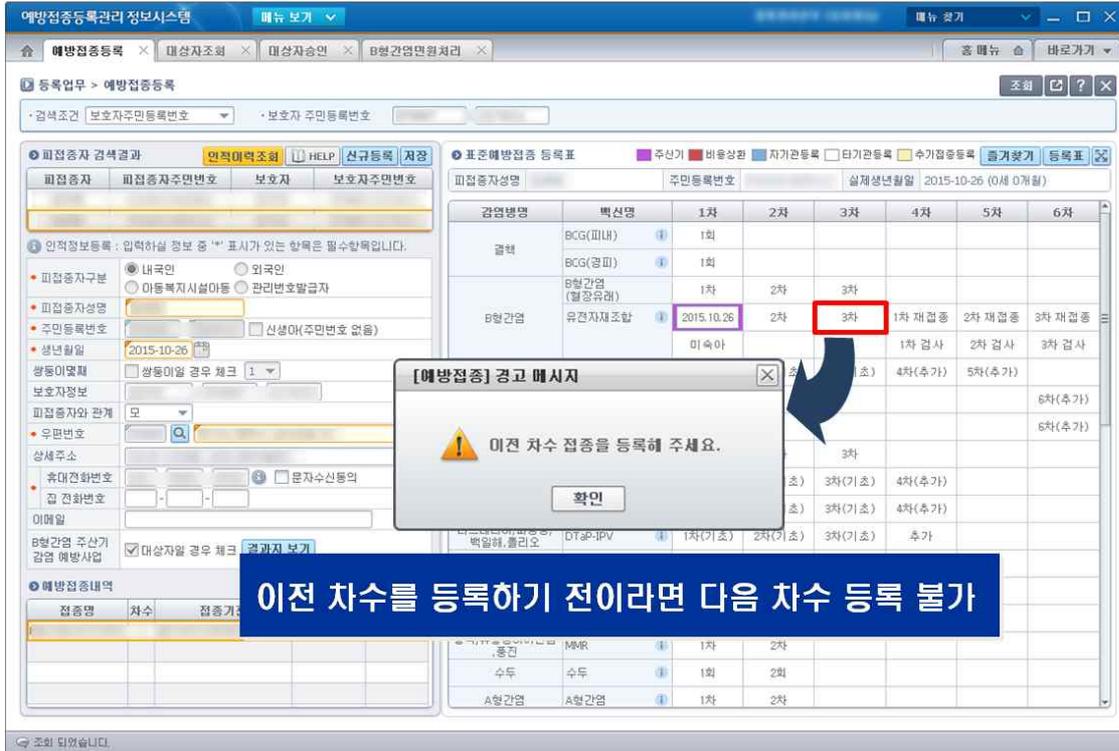


그림 10. 기타 화면(3)>

6.3. 이전 차수 등록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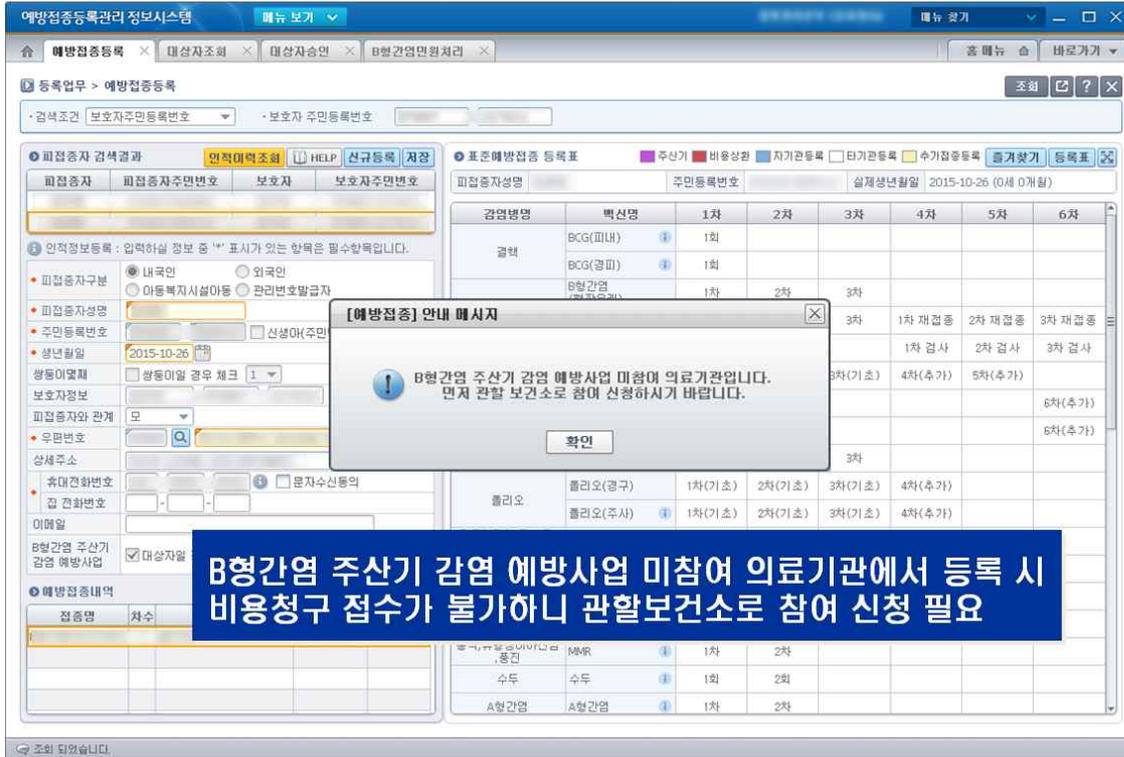
- ① 사업 스케줄대로 접종 및 검사 내역 등록이 가능하며, 이전 차수를 등록하기 전이라면 다음차수 등록이 불가합니다.



<그림 11. 기타 화면(4)>

6.4. 사업 미참여 의료기관

- ①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미참여 의료기관에서 접종내역을 등록하는 경우 비용청구 접수가 불가하니 관할보건소로 참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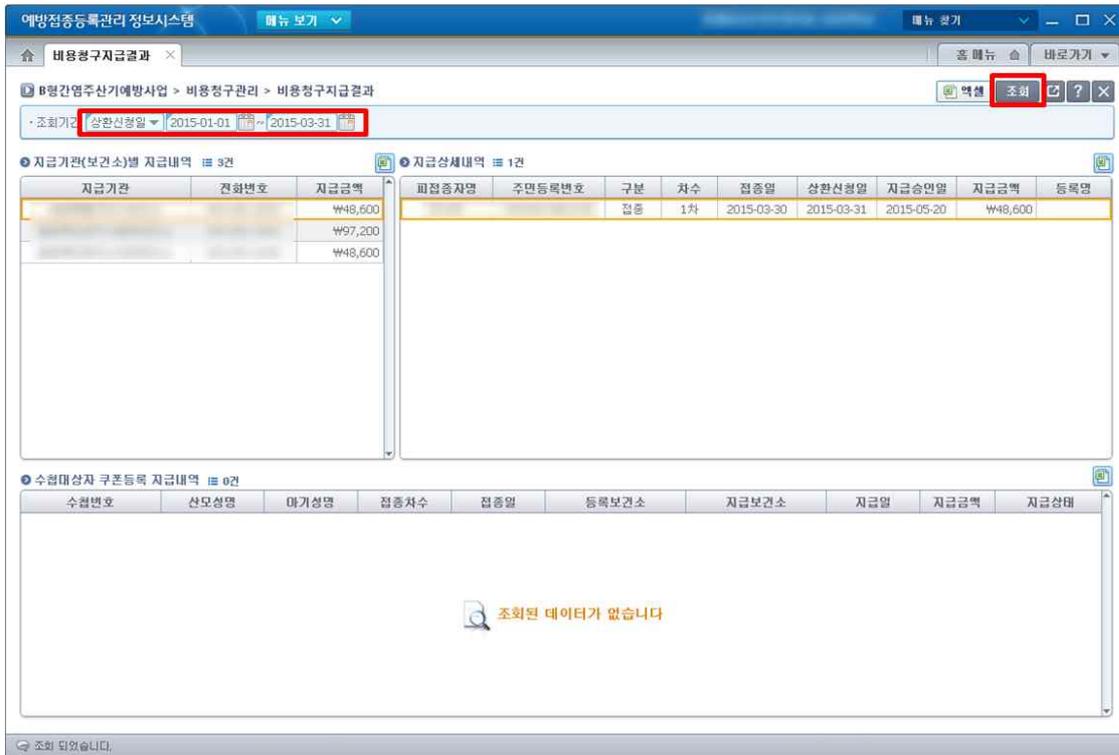


<그림 12. 기타 화면(5)>

7. 비용청구 지급결과 확인

①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으로 비용청구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기간을 설정한 후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 '엑셀' 버튼을 클릭하면 엑셀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림 13. 비용청구 지급결과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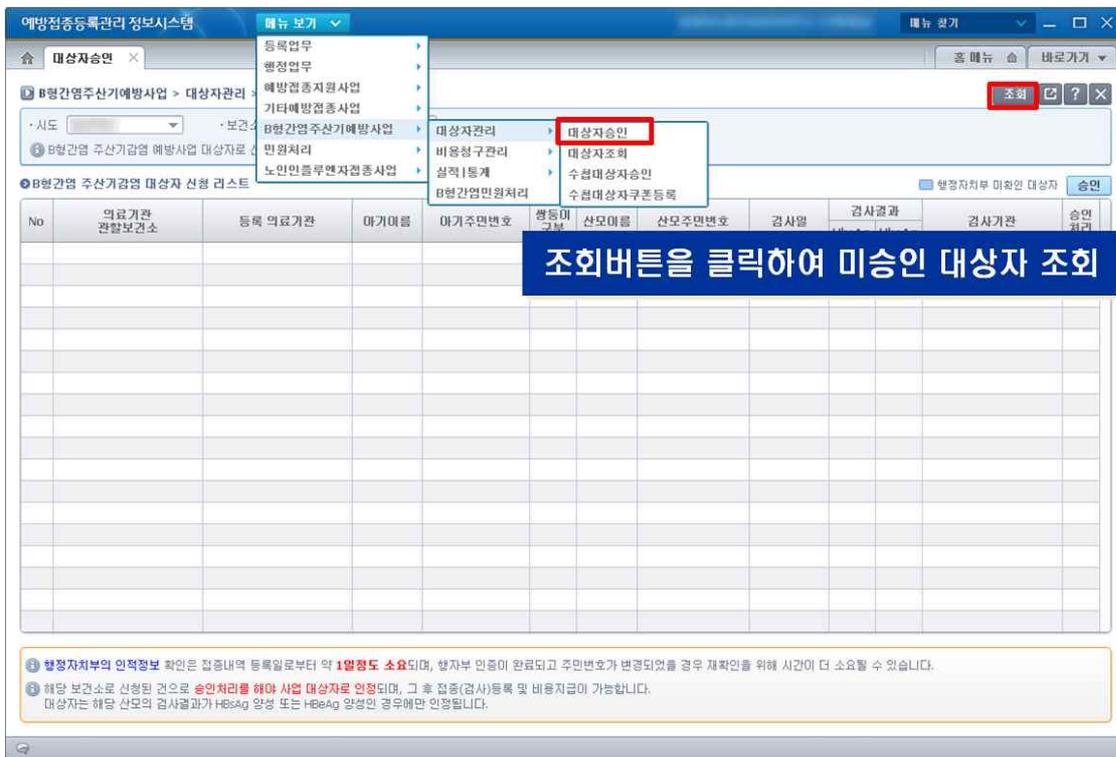
2. 등록 및 시스템 운영(보건소 이용안내)

2.1 대상자 관리

1. 대상자 승인

① 의료기관에서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로 등록한 내역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 등록관리 정보시스템] → [메뉴]→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관리]→ [대상자 승인] 메뉴를 클릭합니다.

② 검색조건을 설정한 후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림 14. 대상자 승인(1)>

※ 참고 : 보건소에서는 관내보건소 내역만 조회가 가능

③ 검색된 대상자 정보 및 산모의 검사결과 등을 확인한 후 대상자 ‘승인처리’ 부분을 체크한 후 [승인]버튼을 클릭합니다.

- 대상자 승인을 완료해야 비용청구 접수 및 비용지급이 가능합니다.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

대상자승인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대상자관리 > 대상자승인

· 시도: [] · 보건소: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로 신청된 내역을 나타냅니다.

B형간염 주산기감염 대상자 선정 리스트

행정자치부 미확인 대상자 **승인**

No	의료기관 관할보건소	등록 의료기관	여기이름	아기주민번호	생동대 구분	산모이름	산모주민번호	검사일	검사결과		검사기관	승인 처리
									HbsAg	HbeAg		
1					1			2015-09-03	양성	음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2					1			2015-10-07	양성	음성		<input type="checkbox"/>
3								2015-10-23	양성	양성		<input type="checkbox"/>
4								2015-09-11	양성	음성		<input type="checkbox"/>

[예방접종] 문의 메시지

? 승인처리 하시겠습니까?

확인 취소

1. 승인할 대상자를 체크한 후 승인 클릭

2. 확인버튼을 클릭

행정자치부의 인적정보 확인은 접종내역 등록일로부터 약 **1일정도 소요**되며, 행정부 인종이 완료되고 주민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재확인을 위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해당 보건소로 신청된 것으로 **승인처리를 해야 사업 대상자로 인정**되며, 그 후 접종(검사)등록 및 비용지급이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해당 산모의 검사결과가 HbsAg 양성 또는 HBeAg 양성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그림 15. 대상자 승인(2)>

2. 대상자 조회

- ① 검색 조건을 설정한 후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대상자 리스트 확인이 가능합니다.
- ② 대상자의 상태는 관리, 누락, 종료, 사망으로 구분됩니다.
 - 관리 : 접종 및 검사 미완료자로 보건소에서 관리할 대상자
 - 누락 : 이민, 사업 거부, 연락두절 등으로 사업 종료 처리된 대상자
 - 종료 : 면역 획득 또는 감염자로 사업 종료된 대상자
 - 사망 : 사망 처리된 대상자

대상자 조회 결과 20건

No	산모성명	산모 주민등록번호	아기성명	아기 주민등록번호	신형일	승인일	1차접종 등록 의료기관	대상자 승인보건소	마지막접종차수	상태
1					2014-03-31	2014-04-01		보건소	3차	관리
2					2014-03-31	2014-04-01		보건소	3차	관리
3					2014-03-21	2014-03-21		보건소	3차	관리
4					2014-03-18	2014-03-18		보건소	3차	관리
5					2014-03-08	2014-03-10		보건소	3차	관리
6					2014-03-03	2014-03-03		보건소	3차	관리
7					2014-03-03	2014-03-12		보건소	검사1차	종료
8					2014-03-03	2014-03-03		보건소	3차	관리
9					2014-03-03	2014-03-03		보건소	검사1차	종료
10					2014-03-03	2014-03-03		보건소	검사2차	종료
11					2014-02-25	2014-02-25		보건소	3차	관리
12					2014-02-25	2014-02-25		보건소	검사1차	종료
13					2014-02-21	2014-02-21		보건소	검사1차	종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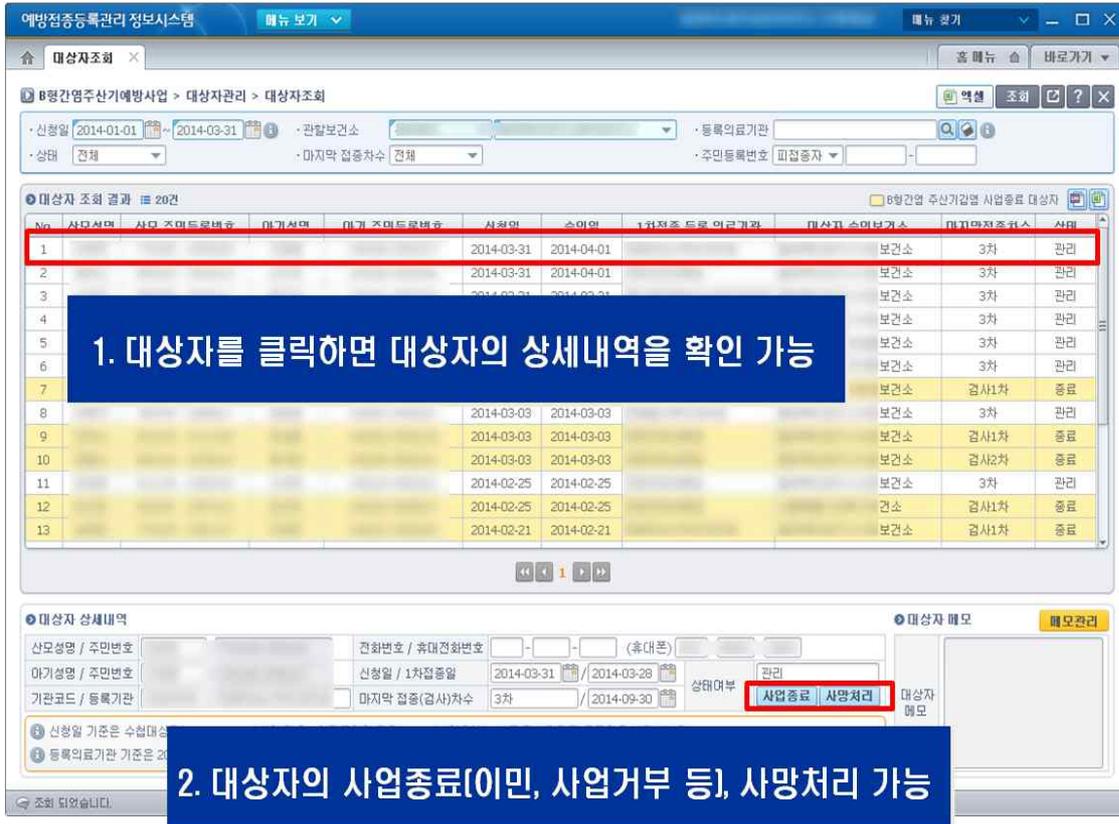
대상자 상세내역

검색 조건을 설정한 후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대상자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의 상태(관리, 종료, 누락, 사망)를 확인 할 수 있음

① 신형일 기준은 수혈대상자(2002 ~ 2013년)의 경우 1차접종일이 되며, 2014년 이후에는 산모 검사결과지 등록일을 나타냅니다.
 ② 등록의료기관 기준은 2002 ~ 2013년의 경우 쿠폰을 등록한 보건소가 되며, 2014년 이후에는 산모 검사결과지를 등록한 의료기관을 나타냅니다.

<그림 16. 대상자 조회(1)>

- ③ 검색된 리스트에서 대상자를 더블 클릭하면 상세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 상세 내역에서는 대상자의 이민, 사업 참여 거부 등으로 '사업종료(누락)' 또는 '사망처리'가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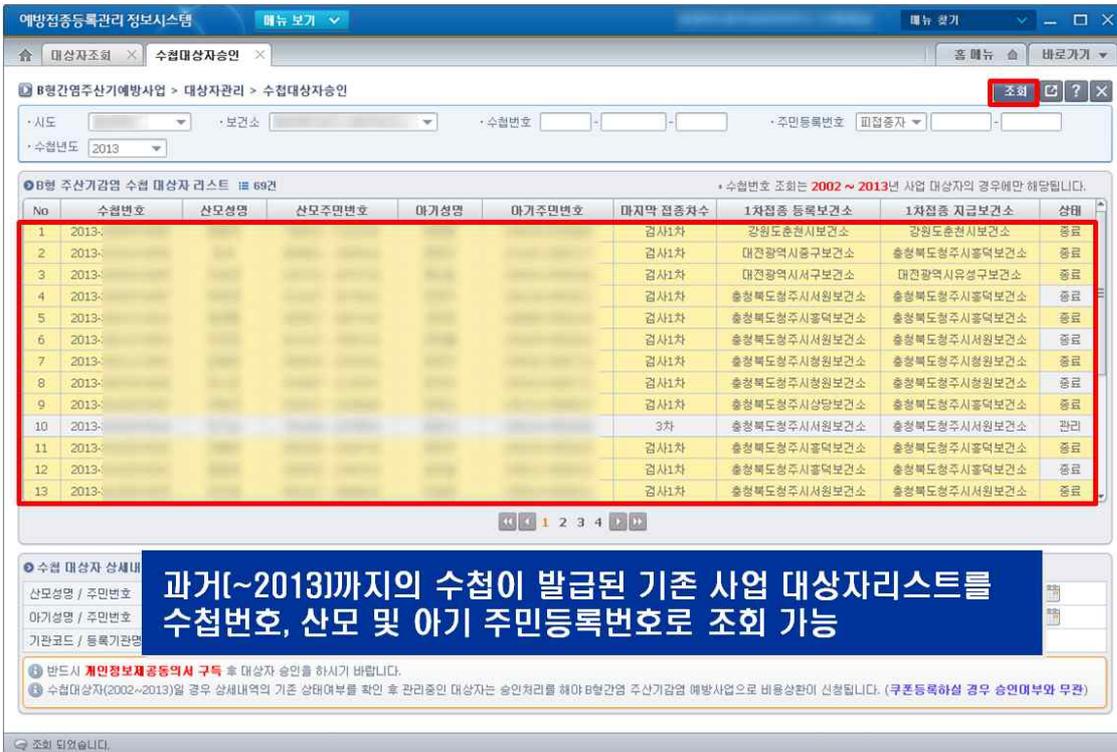


<그림 17. 대상자 조회(3)>

3. 수첩대상자 승인

① 해당 메뉴에서는 수첩을 발급 받은 기존 사업 대상자(2000.7.~2013.12.)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검색 조건을 설정한 후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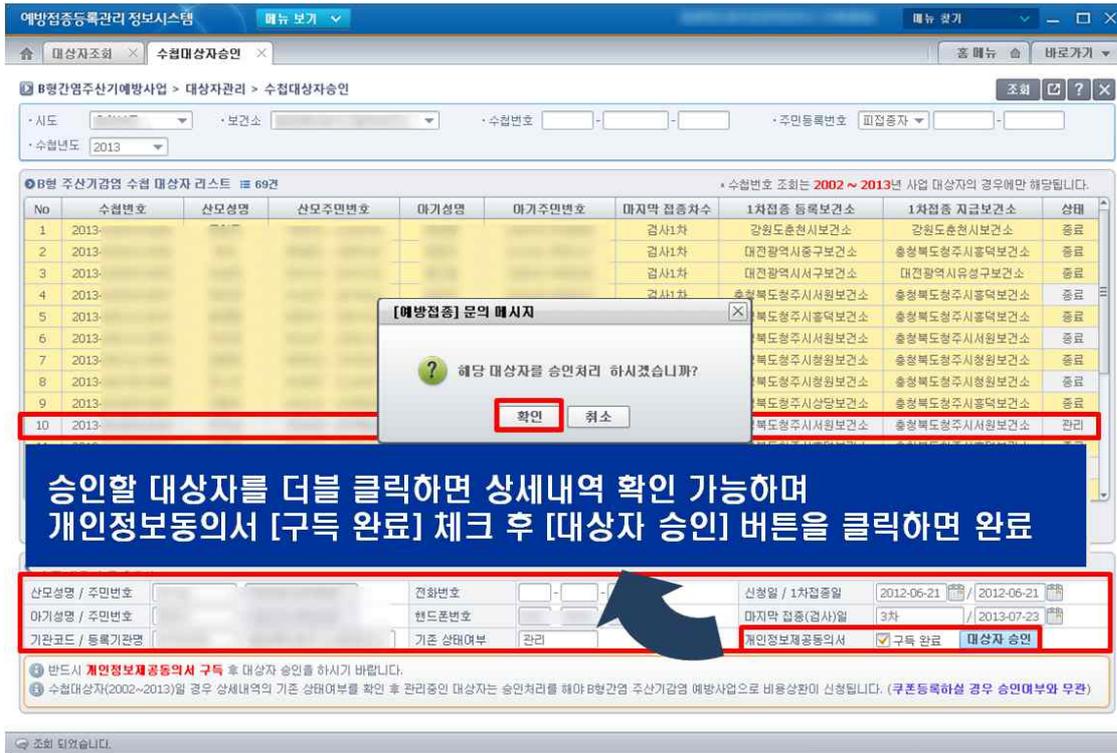
- 검색된 리스트에서는 산모 및 대상자의 정보와 상태(관리, 누락, 종료, 사망)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엑셀] 버튼을 클릭하면 검색된 리스트를 엑셀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림 18. 수첩 대상자 승인(1)>

② 기존 사업 대상자 중 승인할 대상자를 클릭한 후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구독 완료를 체크하고 [대상자 승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대상자 승인을 완료해야 예방접종 등록료가 B형간염 예방사업 스케줄로 변경되며, 비용청구 접수 및 비용지급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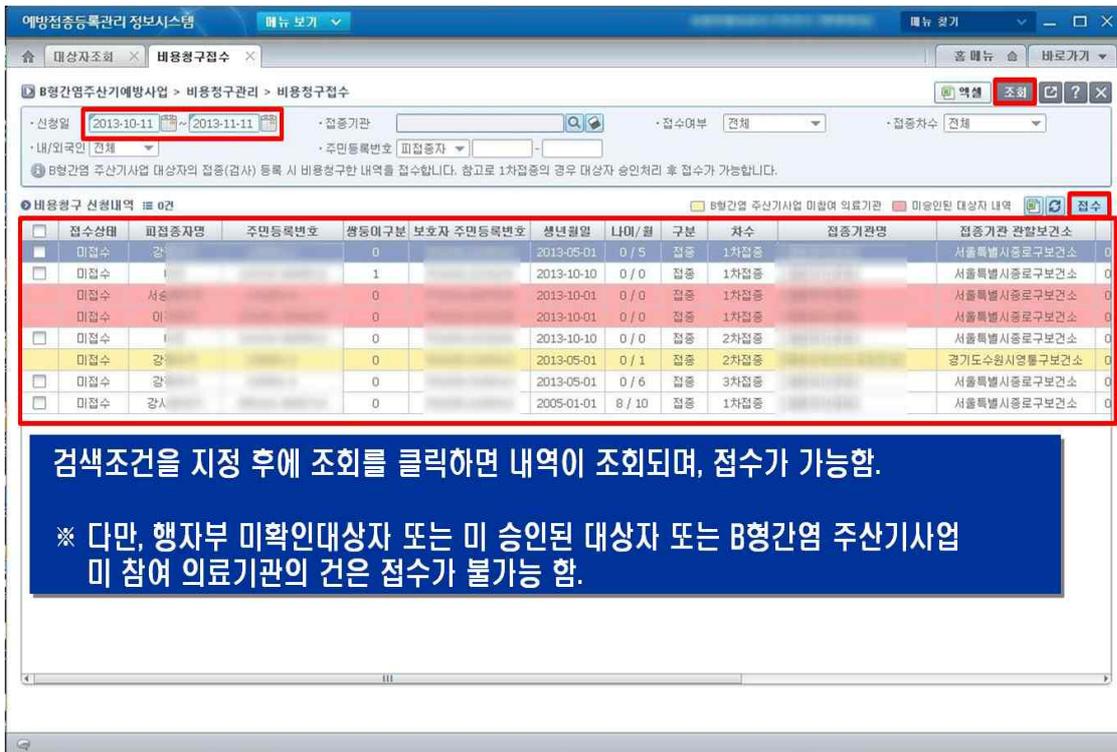


<그림 19. 수첩 대상자 승인(2)>

2.2 비용청구관리

1. 비용청구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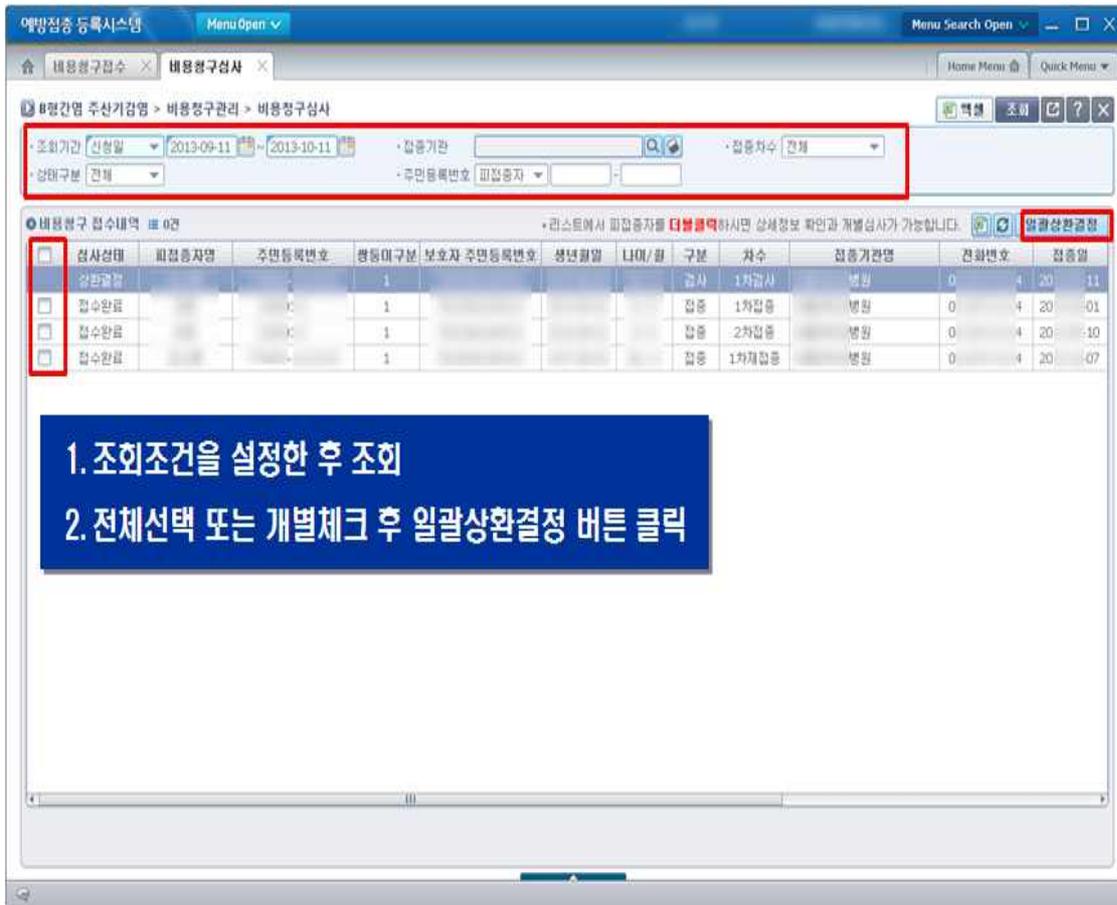
- ① 검색 조건을 설정한 후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메뉴의 리스트 확인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해당보건소 대상자만 나타냅니다.
- ② 검색된 리스트에서 행정자치부 정상확인, 대상자 승인,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 참여 의료기관만 청구건만 접수가 가능하며, 해당 대상자 체크 후 [접수] 버튼을 클릭하면 접수 처리가 완료됩니다.
- ③ 비용청구 접수 시 분홍색으로 표시된 내역은 보건소에서 대상자 승인 처리를 하지 않은 내역이며, 노란색으로 표시된 내역은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 내역입니다.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의료기관 참여 신청 또는 대상자 승인 후 비용 청구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림 20. 비용청구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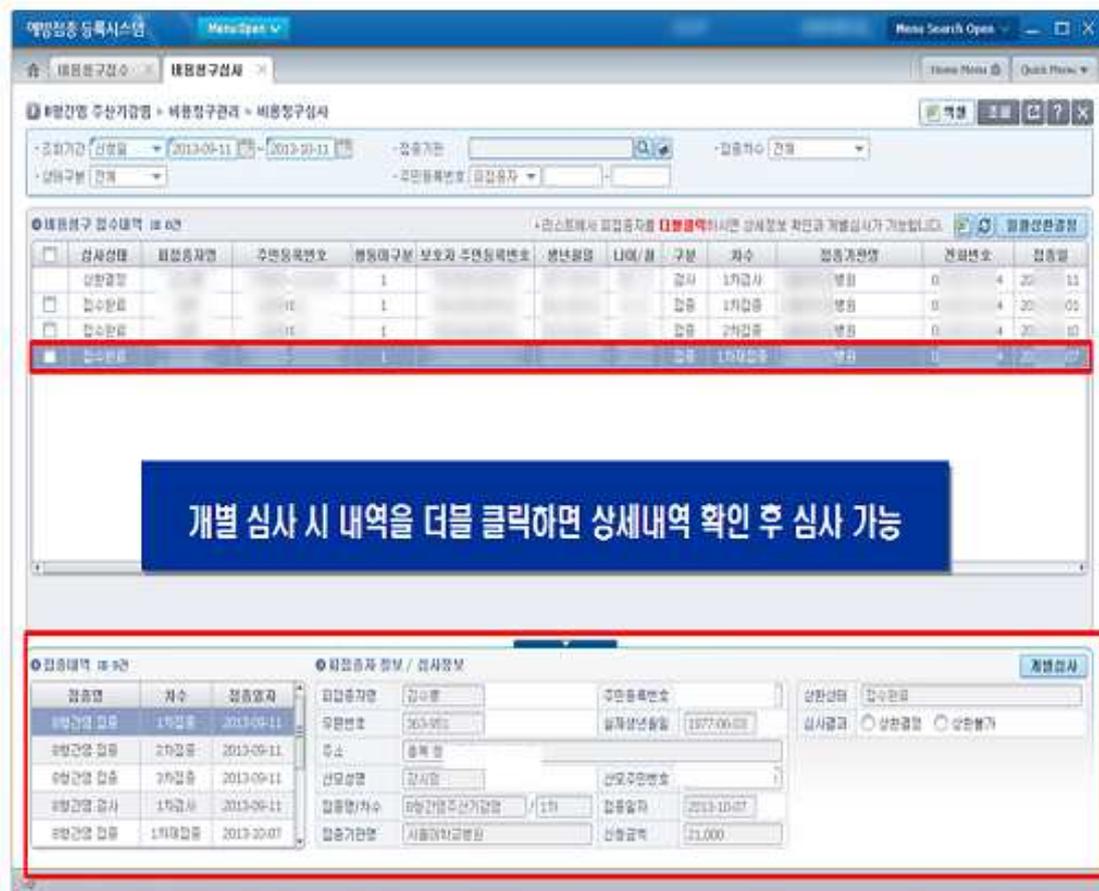
2. 비용청구심사

- ① 검색 조건을 설정한 후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메뉴의 리스트 확인이 가능하며, [비용청구접수]에서 접수를 완료한 내역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 ② 심사하려는 대상자를 개별선택 또는 일괄선택을 체크한 후 [일괄상환결정]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림 21. 비용청구심사(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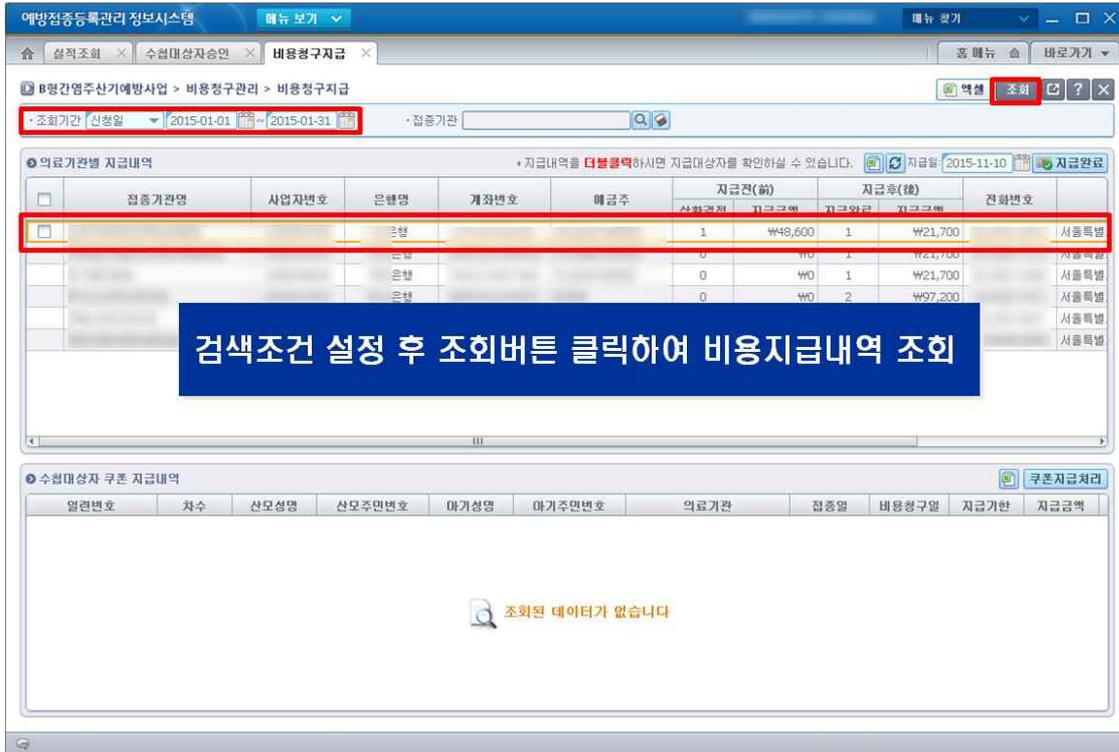
- ③ 검색된 리스트에서 해당 집중내역을 더블클릭하면 상세내역을 볼 수 있으며, 상세내역에는 피집중자의 예방정보 내역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별심사가 가능하며, 개별심사는 상환결정, 상환불가, 또는 접수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림 22. 비용청구심사(2)>

3. 비용청구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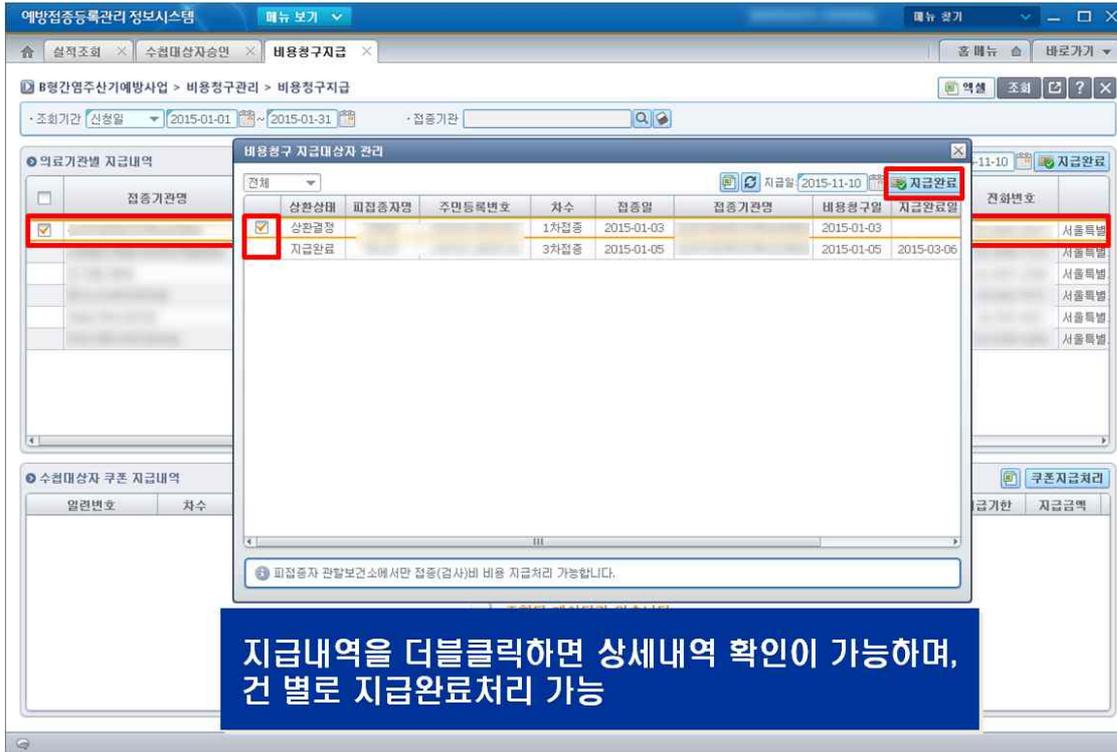
- ① 검색 조건을 설정한 후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보건소에서 심사한 리스트를 의료기관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림 23. 비용청구지급(1)>

② 행정시스템을 통해 비용지급이 완료된 후에는 전체선택 또는 개별 선택한 후 [지급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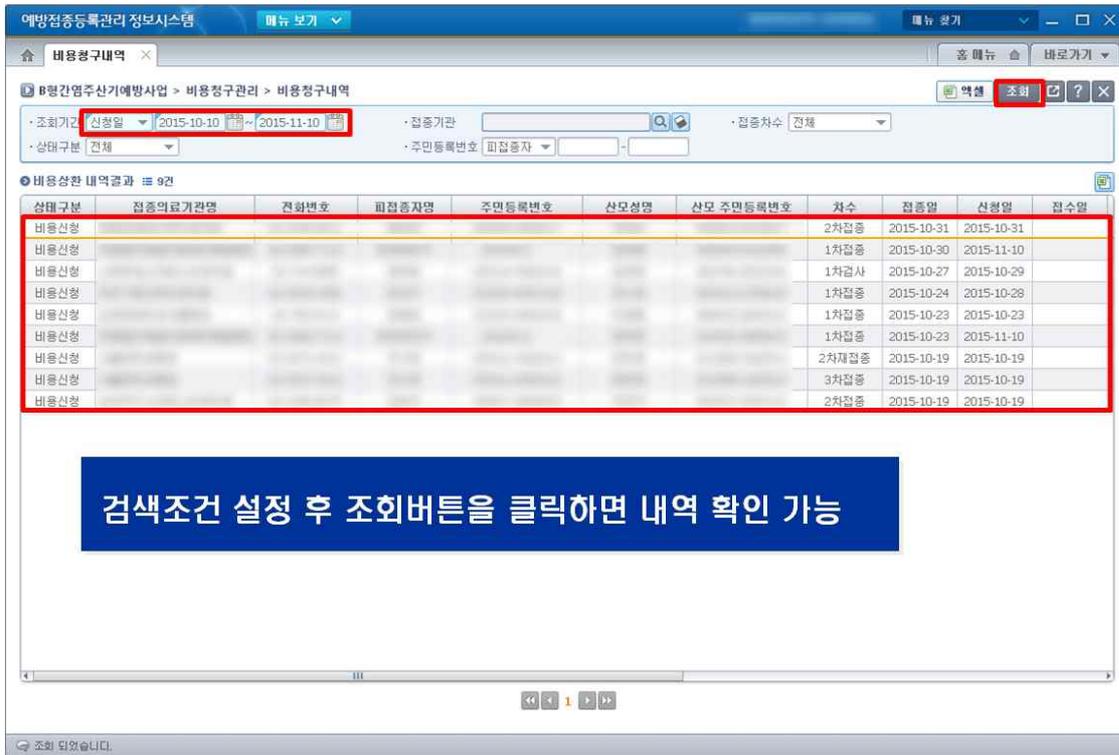
- 검색된 내역을 엑셀 저장하기 위해서는 [엑셀]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림 24. 비용청구지급(2)>

4. 비용청구내역 조회

- ① 검색조건을 설정한 후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메뉴의 리스트 확인이 가능합니다.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에 신청된 전체 리스트 확인이 가능합니다.
- ② [엑셀] 버튼을 클릭하면 검색된 리스트를 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림 25. 비용청구내역[조회]>

2.3 실적

실적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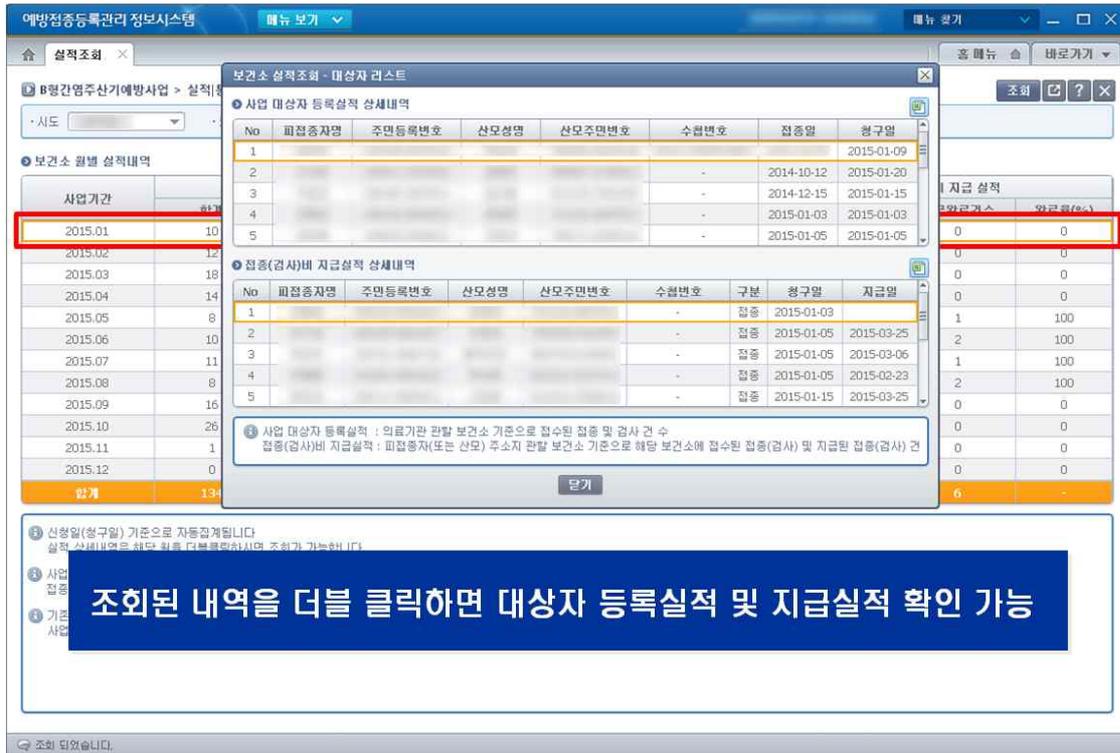
① 사업연도를 선택하여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보건소의 해당연도 실적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 [엑셀] 버튼을 클릭하면 등록된 실적을 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사업기간	사업 대상자 등록실적			접종비 지급 실적			검사비 지급 실적		
	한계	내구인	외구인	접수건수	지급완료건수	완료율(%)	접수건수	지급완료건수	완료율(%)
2015.01	10	8	2	8	7	87.5	0	0	0
2015.02	12	12	0	5	4	80	0	0	0
2015.03	18	18	0	9	7	77.77	0	0	0
2015.04	14	13	1	7	1	14.28	2	0	0
2015.05	8	8	0	6	6	100	1	1	100
2015.06	10	10	0	6	6	100	2	2	100
2015.07	11	11	0	7	5	71.42	1	1	100
2015.08	8	8	0	7	5	71.42	2	2	100
2015.09	16	16	0	4	4	100	0	0	0
2015.10	26	26	0	9	0	0	1	0	0
2015.11	1	1	0	0	0	0	0	0	0
2015.12	0	0	0	0	0	0	0	0	0
합계	134	131	3	68	45	-	9	6	-

<그림 26-1. 실적관리(1)>

② 비용청구 신청일 기준으로 자동 집계되며 조회된 내역을 더블 클릭하면 상세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림 26-2. 실적관리(2)>

2.4 신생아번호 전환

신생아번호 전환

- ① 질병보건 통합관리 사이트(<http://is.cdc.go.kr>)에서 ‘인증서로그인’ 후 좌측 메뉴 중 예방접종관리 > 행정지원 > 품질관리 > ‘신생아번호관리’를 통하여 전환
- ② ‘관할지역 내 신생아’와 ‘전환가능 대상자’ 중 일치하는 인적정보가 있을 경우 우측하단 ‘전환’ 버튼을 클릭
- ③ 전환하고자하는 정보를 신중히 확인 후, 팝업 하단의 ‘전환’ 버튼을 클릭
- ④ 7자리 신생아번호 인적정보의 접종 내역이 13자리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됨

※ 단, ‘관할지역 내 신생아’와 ‘전환가능 대상자’의 예방접종내역 중 같은 차수의 접종력이 중복으로 등록되었을 경우 필히 ‘인터넷예방접종 등록’에서 한쪽(주산기아닌쪽) 삭제 후 합치기를 해야 합니다. 이때 삭제해야 할 접종력이 비용지급 완료된 건이라면 비용환수 및 삭제처리 후 전환 가능

03
PART

시·군·구 담당자 연락처



시도	관할 보건소	사업 담당자	팩스번호
서울	종로구	02-2148-3649	02-2148-5839
	중구	02-3396-6353	02-3396-8901
	용산구	02-2199-8073	02-2199-5820
	성동구	02-2286-7142	02-2286-7042
	광진구	02-450-1958	02-3425-1738
	동대문구	02-2127-4928	02-3299-2642
	중랑구	02-2094-0838	02-490-4522
	성북구	02-2241-6004	02-2241-6607
	강북구	02-901-7763	02-901-7769
	도봉구	02-2091-4556	02-2091-6364
	노원구	02-2116-4515	02-2116-4646
	은평구	02-351-8209	02-351-5682
	서대문구	02-330-1824	02-330-1840
	마포구	02-3153-9072	02-3153-9099
	양천구	02-2620-3879	02-2620-4453
	강서구	02-2600-5874	02-2620-0498
	구로구	02-860-2040	02-860-2654
	금천구	02-2627-2713	02-2251-1820
	영등포구	02-2670-4766	02-2670-4876
	동작구	02-820-9494	02-820-9497
관악구	02-879-7159	02-879-7851	
서초구	02-2155-8063	02-2155-8197	
강남구	02-3423-7103	02-3423-8902	
송파구	02-2147-3415	02-2147-3898	
강동구	02-3425-6684	02-3425-7269	

시도	관할 보건소	사업 담당자	팩스번호
부산	중구	051-600-4831	051-600-4750
	서구	051-240-4870	051-240-4877
	동구	051-440-6509	051-440-4996
	영도구	051-419-4939	051-419-4842
	동래구	051-550-6785	051-550-4799
	부산진구	051-605-6081	051-605-4799
	남구	051-607-6425	051-607-6449
	북구	051-309-7019	051-363-8008
	해운대구	051-749-7542	051-749-7529
	사하구	051-220-5738	051-220-5779
	금정구	051-519-5074	051-519-5096
	강서구	051-970-3421	051-970-4799
	연제구	051-665-4795	051-665-4799
	수영구	051-610-5653	051-610-5637
	사상구	051-310-4887	051-310-4849
	기장군	051-709-4834	051-709-4799
	대구	중구	053-661-3827
동구		053-662-3127	053-662-3298
서구		053-663-3126	053-663-3119
남구		053-664-3624	053-664-3619
북구		053-665-3273	053-665-3279
수성구		053-666-3146	053-666-3129
달서구		053-667-5645	053-667-5619
달성군		053-668-3085	053-282-7643
인천	중구	032-760-6067	032-760-6019
	동구	032-770-5746	032-770-5709
	남구	032-880-5417	032-880-5417
	연수구	032-749-8081	032-749-8159
	남동구	032-453-5111	032-453-5119
	부평구	032)509-8251	032-509-8658
	계양구	032-430-7879	032-551-5774
	서구	032)560-5053	032-562-0707

시도	관할 보건소	사업 담당자	팩스번호
	강화군	032-930-4068	032-930-3682
	옹진군	032-899-3144	032-899-3129
광주	동구	062-608-3332	062-226-8052
	서구	062350-4707	062-350-4698
	남구	062-607-4468	062-607-4306
	북구	062-410-8994	062-510-1391
	광산구	062-960-8749	062-960-8707
대전	동구	042-251-6147	042-625-4000
	중구	042-580-2718	042-580-2766
	서구	042-611-5366	042-611-8631
	유성구	042-611-5104	042-822-1048
	대덕구	042-608-5484	042-608-3852
울산	중구	052-290-4345	052-290-4349
	남구	052-226-2434	052-226-2467
	동구	052-209-4101	052-209-4079
	북구	052-241-8246	052-241-8245
	울주군	052-229-8475	052-229-8475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044-301-2042	044-301-2119
경기	수원시장안구	031-228-5735	031-228-5809
	수원시권선구	031-228-6735	031-228-6819
	수원시팔달구	031-228-7735	031-228-7620
	수원시영통구	031-228-8829	031-228-8794
	성남시수정구	031-729-3846	031-729-4847
	성남시중원구	031-729-3906	031-729-4728
	성남시분당구	031-729-3966	031-729-3798
	부천시원미구	032-625-4235	032-625-4189
	부천시소사구	032-625-4401	032-625-4419
	부천시오정구	032-625-4473	032-625-4499
경기	안양시만안구	031-8045-3039	031-8045-3433
	안양시동안구	031-8045-4861	031-8045-6528
	안산시단원구	031-481-3515	031-481-3485
	안산시상록수	031-481-5945	031-481-3785

시도	관할 보건소	사업 담당자	팩스번호
	용인시처인구	031-324-4669	031-324-2418
	용인시기흥구	031-324-6924	031-324-6915
	용인시수지구	031-324-8935	031-324-8936
	평택시송탄	031-8024-7242	031-8024-7249
	평택시 평택	031-8024-4354	031-8024-4359
	광명시	02-2680-5527	02-2680-6044
	시흥시	031-310-5851	031-310-5889
	군포시	031-390-8999	031-461-0874
	화성시	031-369-3559	031-369-3560
	이천시	031-644-4082	031-631-2740
	김포시	031-980-5484	031-980-5489
	광주시	031-760-2358	031-760-1427
	안성시	031-678-5914	031-676-2769
	하남시	031-790-5463	031-790-6580
	의왕시	031-345-3594	031-345-3579
	오산시	031-8036-6056	031-8036-8923
	여주시	031-887-3634	031-886-7896
	양평군	031-770-3515	031-770-3536
	과천시	02-2150-3825	02-2150-1540
	고양시덕양구	031-8075-4030	031-968-0219
	고양시일산동구	031-8075-4117	031-908-1292
	고양시일산서구	031-8075-4172	031-976-2042
	의정부시	031-828-4546	031-828-4546
	남양주시	031-590-4753	031-590-2559
	파주시	031-940-5598	031-940-4889
	구리시	031-550-8667	031-550-8380
	포천시	031-538-3643	031-538-3635
	양주시	031-8082-7171	031-8082-7109
	동두천시	031-860-3396	031-866-2301
	가평군	031-580-2814	031-580-2559
	연천군	031-839-4073	031-839-4192

시도	관할 보건소	사업 담당자	팩스번호	
강원	춘천시	033-250-3573	033-253-5716	
	원주시	033-737-4074	033-737-4991	
	강릉시	033-660-3130	033-640-4763	
	동해시	033-539-8473	033-530-2418	
	태백시	033-550-3122	033-550-2941	
	속초시	033-639-2921	033-639-2554	
	삼척시	033-570-4669	033-575-1139	
	홍천군	033-430-4026	033-435-1566	
	횡성군	033-340-5643	033-340-5608	
	영월군	033-370-2375	033-372-0001	
강원	평창군	033-330-4851	033-330-4829	
	정선군	033-560-2116	033-563-4000	
	철원군	033-450-5116	033-456-5031	
	화천군	033-440-2815	033-440-2899	
	양구군	033-480-2788	033-480-2546	
	인제군	033-460-2247	033-460-2429	
	고성군	033-680-3959	033-681-2183	
	양양군	033-670-2540	033-670-2493	
	충북	청주시상당	043-201-3145	043-201-3189
		청주시서원	043-201-3251	043-201-3249
청주시흥덕		043-201-3343	043-201-3399	
청주시청원		043-201-3445	043-201-3439	
충주시		043-850-3534	043-850-5239	
제천시		043-641-3236	043-641-3239	
괴산군		043-830-2315	043-830-2338	
단양군		043-420-3216	043-420-3209	
보은군		043-540-5615	043-544-2574	
영동군		043-740-5593	043-742-4090	
옥천군		043-730-2164	043-731-6311	
음성군		043-871-2055	043-871-1951	
증평군		043-835-4225	043-835-4209	
진천군		043-539-7328	043-537-0752	

시도	관할 보건소	사업 담당자	팩스번호
충남	천안시동남구	041-521-2654	041-521-2659
	천안시서북구	041-521-5934	041-521-2559
	공주시	041-840-8764	041-840-4101
	보령시	041-930-4133	041-930-3093
	아산시	041-537-3411	041-537-3429
	서산시	041-661-6524	041-660-2743
	논산시	041-746-8036	041-746-8019
	계룡시	042-840-3522	042-840-3569
	금산군	041-750-4387	041-751-6519
	부여군	041-834-4000	041-830-2489
	서천군	041-950-6717	041-950-6779
	청양군	041-940-4525	041-940-4508
	홍성군	041-630-9086	041-631-9051
	예산군	041-339-8033	041-339-8009
	태안군	041-671-5266	041-671-5218
	당진시	041-360-6013	041-360-6029
	전북	전주시	063-281-6351
군산시		063-460-3261	063-463-1470
익산시		036-859-4848	063-859-4239
정읍시		063-539-6118	063-539-6531
남원시		063-620-7947	063-636-5931
김제시		063-540-1368	063-540-1371
완주군		063-290-3042	063-290-3020
진안군		063-430-8552	063-430-2712
무주군		063-320-8241	063-320-8239
장수군		063-350-3112	063-351-5010
임실군		063-640-3124	063-640-3117
순창군		063-650-5262	063-650-5229
고창군		063-560-8758	063-560-8779
부안군	063-580-3811	063-580-4672	

시도	관할 보건소	사업 담당자	팩스번호
전남	목포시	061-270-8928	061-270-8080
	여수시	061-659-4265	061-659-5840
	순천시	061-749-6048	061-749-4766
	나주시	061-339-2157	061-339-2833
	광양시	061-797-4041	061-797-4056
	담양군	061-380-3983	061-380-3996
	곡성군	061-360-7563	061-360-8597
	구례군	061-780-2012	061-780-2770
	고흥군	061-830-5796	061-830-5593
	보성군	061-850-5683	061-850-8516
	화순군	061-379-5331	061-379-5392
	장흥군	061-860-0547	061-860-0597
	강진군	061-430-3556	061-430-3539
	해남군	061-531-3752	061-530-5597
	영암군	061-470-6536	061-470-6576
	무안군	061-450-5058	061-450-5134
	함평군	061-320-2438	061-320-3527
	영광군	061-350-5562	061-350-5124
	장성군	061-390-8332	061-390-7597
	완도군	061-550-6765	061-550-6787
진도군	061-540-6034	061-540-6081	
신안군	061-240-8816	061-240-8892	
경북	포항남구	054-270-4204	054-384-2817
	포항북구	054-270-4159	054-249-5034
	경주시	054-779-8601	054-760-7531
	김천시	054-421-2723	054-420-6664
경북	안동시	054-840-5968	054-840-5939
	구미시구미	054-480-4547	054-480-4019
	구미시선산	054-480-4155	054-480-4129
	영주시	054-639-6462	054-634-4884
	영천시	054-339-7780	054-330-6719

시도	관할 보건소	사업 담당자	팩스번호
	상주시	054-537-8716	054-532-4000
	문경시	054-550-8074	054-550-6479
	경산시	053-810-6318	053-811-3002
	군위군	054-380-7453	054-380-6479
	의성군	054-830-6678	054-833-0664
	청송군	054-870-7223	054-873-7103
	영양군	054-680-5194	054-680-5129
	영덕군	054-730-6826	054-730-6479
	청도군	054-370-2646	054-370-2679
	고령군	054)950-7954	054-955-3374
	성주군	054-930-8145	054-933-2441
	칠곡군	054-979-8255	054-979-8278
	예천군	054-650-6478	054-650-6479
	봉화군	054)679-6722	054-679-6719
	울진군	054-789-5032	054-789-3351
	울릉군	054-790-6832	054-790-6819
경남	창원시창원	055-225-5778	055-225-4767
	창원시마산	055-225-6004	055-225-4770
	창원시진해	055-225-6128	055-225-4771
	진주시	055-749-4918	055-749-2949
	통영시	055-650-6126	055-650-6199
	사천시	55-831-3623	055-831-6041
	김해시	055-330-4484	055-336-6793
	밀양시	055-359-7023	055-359-7095
	거제시	055-639-6153	055-639-6129
	양산시	055-392-5165	055-392-5168
	의령군	055-570-4047	055-570-4048
	합안군	055-580-3211	055-637-800
	창녕군	055-530-6277	055-530-6250
고성군	055-670-4090	055-670-4019	

시도	관할 보건소	사업 담당자	팩스번호
	남해군	055-860-8776	055-860-8799
	하동군	055-880-6634	055-880-6620
	산청군	055-970-7533	055-970-7519
	함양군	055-960-4624	055-964-9028
제주시	거창군	055-940-8355	055-940-8399
	합천군	055-930-3693	055-930-4537
	제주시제주	064-728-4096	064-728-4089
	제주시서부	064-728-4161	064-796-7422
	제주시동부	064-728-4207	064-783-7328
	서귀포시서귀포	064-760-6085	064-760-6019
	서귀포시동부	064-760-6182	064-764-3945
	서귀포시서부	064-760-6274	064-760-6219

2016년도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안내
: 시·도 및 보건소용

발 행 : 2016년 1월

발 행 처 : 질병관리본부

자문위원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자문위원회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보건의료행정타운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전 화 : 043-719-6848~52

F A X : 043-719-6859

편집·기획 : 홍애원(02-2261-1788)

ISBN 978-89-6838-203-1 (93510)
